

국내외 ESG 공시제도 현황 및 비교 분석

2024. 6.

국내외 ESG 공시제도 현황 및 비교 분석

2024. 6.

연구위원

임현일

hilim@cgs.or.kr

부연구위원

황지원

g1hwang@cgs.or.kr



한국ESG기준원

KCGS 정책연구

한국ESG기준원(KCGS)은 국내 상장기업의 기업지배구조 개선, 환경 및 사회적 책임 경영 강화, 나아가 한국 자본시장의 선진화를 위하여 주요 모범기준과 한국 스톡어십 코드 제·개정, ESG (Environment, Social responsibility and Governance) 평가 및 의결권행사 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하며, 기업의 ESG 및 지속가능성과 관련한 주요 현안에 대하여 높은 수준의 연구 및 자문 활동을 수행하는 공익 추구 목적의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KCGS 연구보고서는 매년 한국ESG기준원에 의해 생산되는 전문적인 연구 성과물을 보다 폭넓은 독자층에게 제공하기 위해 기획한 온라인 발간물입니다. KCGS 연구보고서를 통해 기업 관계자, 학계 전문가, 기관투자자 및 정책 입안자 등에게 ESG 이슈와 관련한 시의적절하고 전문적인 분석 결과를 제공함과 동시에 일반 투자자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를 계기로 ESG에 대한 기업, 투자자 및 기관의 관심과 논의가 활성화되고, 국내 상장기업의 ESG 수준과 자본시장 문화가 진일보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KCGS 정책연구 2024-01

국내외 ESG 공시제도 현황 및 비교 분석

발행일	2024년 6월 30일
저자	임현일 황지원
발행인	심인숙
발행처	한국ESG기준원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76, Market Square 4층
대표전화	02-3775-3339 (Fax. 02-3775-2630)
홈페이지	www.cgs.or.kr (E-mail. cgsweb@cgs.or.kr)

© 한국ESG기준원. 2024.

KCGS 정책연구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인용 및 복제를 하는 것은 법에 의해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보고서 전체 또는 일부 내용을 공익적 또는 상업적 목적을 위해 복제하거나 활용하고자 할 경우 cgsweb@cgs.or.kr을 통해 사전 승인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개인적 목적으로 단순 인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행기관, 보고서명, 저자 등에 관한 출처 정보를 명확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KCGS 정책연구는 www.cgs.or.kr/publish/paper_list.jsp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KCGS 정책연구에 포함된 내용은 저자 개인의 입장과 의견이며 한국ESG기준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목 차

I	서론	5
II	국내외 ESG 공시 현황	8
	1.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12
	2. EU ESRS	28
	3.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기후공시 규칙	101
	4. 캘리포니아 기후법안	116
	5. 한국지속가능성 공시기준	119
III	ESG 공시 비교 분석	131
	1. 기본 원칙	131
	2. 지속가능성	136
	3. 환경	141
	4. 사회	153
IV	결론 및 제언	156
	참고 문헌	165

표 목차

표 1. 기업 유형에 따른 SEC 기후공시 일정	103
표 2. SEC 기후공시에 따른 기후 관련 위험의 정의	107
표 3. 기본 원칙에 대한 국내외 ESG 공시기준 비교	133
표 4. 지속가능성에 대한 국내외 ESG 공시기준 비교	140
표 5. 환경 영역(기후변화)에 대한 국내외 ESG 공시기준 비교	151
표 6. 사회 영역에 대한 ESRS S1과 한국지속가능성 공시기준 비교	154

I 서론

- ESG 이슈가 확산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기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ESG 정보 공시 의무화에 대한 논의가 확대됨
 - ESG 정보 공시는 기업의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에 대한 활동 성과를 자본시장 참여자에게 투명하게 제공하는 것에 의미가 있음
 - 기업의 지속가능한 목표와 성과를 측정하고 그에 따른 리스크에 대응하고 해당 정보를 이해관계자에게 효과적으로 공유하도록 함
 - 그러나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ESG 공시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개별 기관의 기준에 따라 제각각의 형태로 공시가 이루어짐
 - 공시기준 불일치는 개별 기업의 ESG 성과에 대한 엇갈린 신호로 작용하여 평가의 불일치 및 비교가능성 저하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음
 - 기업은 ESG 정보 공시에 대한 실무적인 혼란과 업무 가중의 문제가 발생되고 비효율적인 공시 정보의 중복을 야기함

- 이에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공시기준의 필요성에 대한 요구가 제기되었으며 관련 국제기구들의 협의가 진행됨
 - 2020년 9월 GRI, SASB, IIRC, CDSB 등 각각의 ESG 공시기준을 제시해 왔던 기관들이 공동표준 제정 합의
 - 2021년 11월 IFRS(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는 국제지속가능성 기준위원회 설립을 공식화하고 2022년 ESG 공시기준 초안을 발표하기로 함
 - ISSB에는 CDSB, IASB, TCFD, WEF, VRF(SASB, IIRC) 등이 참여

- 2022년 3월 ISSB와 GRI가 지속가능성 보고 기준을 통합하기로 결정

- 유럽연합(EU)의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이 2023. 1. 6일 본격 발효됨에 따라 ESG 공시 의무를 부담하는 기업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유럽재무보고자문그룹(EFRAG)은 CSRD의 이행을 위한 유럽지속가능성공시표준(ESRS)을 제정하고 EU집행위원회 수정을 거친 ESRS 최종본 첫번째 세트(First Set)가 2023. 7. 31일 채택됨
 - 최종 채택된 ESRS 첫번째 세트는 환경, 사회, 거버넌스를 포함한 모든 지속가능성 주제에 걸쳐 산업 분야에 관계 없이 모든 기업에게 적용되는 공시 요구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향후 산업별 공시기준을 담은 두번째 세트(Second Set)가 2026년 도입될 예정

- 미국 증권위원회(SEC)는 투자자 관점에서 기업이 기후 관련 위험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4. 3월 재무제표 주석과 정기보고서 및 증권신고서에 특정 기후 관련 정보를 제시하도록 요구하는 최종 규칙을 발표함
 - 캘리포니아 주는 미국에서 처음으로 기업의 탄소배출량 공개를 의무화하는 기후공시법을 제정하고, 2023. 10. 6일 주지사의 승인으로 해당 법안이 통과됨

- 국내에서도 2024년 4월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가 「한국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 초안을 발표함
 -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및 국제 정합성과 국내 수용가능성을 고려하여 KSSB 자문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제정
 - 한국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은 정책 목을 고려한 추가 공시사항을 통해 다양한 위치에 산발적으로 공개되고 있는 정보를 지속가능성 재무정보 공시에 포함하여 정보 유용성을 향상시키고자 함

- 본 보고서는 국내외 ESG 공시제도의 현황을 파악하고 세부 공시제도 및 내용에 대해 비교 분석하고자 함
 - 전 세계적으로 ESG 공시 의무화 및 공시기준 표준화라는 합의된 공동의 목표를 요구하고 있음

- 과거 기준서 제정기관 간의 경쟁에서 이제는 협업을 통해 공시기준을 일치시키고 각각의 공시기준들 간의 공통점과 장점을 통합하고 상호호환성을 높이고자 함
 - 국내의 경우 「한국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의견조회기간을 거쳐 연내 최종기준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음
 - 따라서 현시점에서 국내외 ESG 공시제도 현황을 파악하고 세부 공시항목과 공시내용을 비교 관찰하는 것은 시의성이 있음
- 이하 본 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음
- 2장에서 국내외 ESG 공시 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함
 - 3장에서 ESG 공시 내용에 대해 비교하고 차이점을 분석함
 - 마지막으로 4장에서 분석 내용을 요약·정리하고 결론을 제시함

II 국내외 ESG 공시 현황

- 기업의 ESG 이슈가 확산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ESG 정보 공시 의무화에 대한 논의가 확대됨
 - 기업의 ESG 정보는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에 대한 비재무적 성과를 투자자들에게 제공하는 데 의미가 있음
 - 그러나 최근까지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ESG 공시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SASB(Sustainability Accounting Standards Board), TCFD(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등 개별 기관의 기준에 따라 공시가 이루어짐
 - GRI는 'GRI Standards' 공시기준을 통해 작성 지침, 공통 작성 항목, 조직에 관한 일반 사항 등으로 이루어진 공통 표준과 경제, 환경, 사회 성과에 대해 총 34개의 항목으로 구성된 표준을 제시함
 - SASB는 SEC의 요구에 맞춰 투자자 관점의 중요한 정보 제공을 위해 산업별로 비교 가능한 비재무적 이슈를 공개하는 공시 표준을 제시함
 - TCFD는 금융안정위원회(FSB)의 기후변화 관련 권고안에 따라 기후 관련 공시 권고안을 제시함
 - 이에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공시기준의 필요성에 대한 기업의 요구가 제기되었으며 이를 위해 관련 국제기구들의 협력이 진행됨
 - 2020년 9월 GRI, SASB, IIRC(International Integrated Reporting Council), CDSB(Climate Disclosure Standards Board) 등 각각의 ESG 공시기준을 제시해 왔던 기관들이 공동표준 제정에 합의함

- 2021년 11월 IFRS는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6)에서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 이하 ISSB) 설립을 공식화하고 2022년 6월까지 ESG 공시기준 초안을 발표하기로 함
 - ISSB는 자본시장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에 대한 포괄적인 글로벌 기준선을 설정하는 것을 목표로하며,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와 함께 운영되며 IFRS 이사회의 감독을 받도록 함
 - ISSB에는 CDSB, IASB, TCFD, WEF, VRF(SASB, IIRC) 등이 참여함
 - 2022년 3월에는 ISSB와 GRI가 지속가능성 보고 기준을 통합하기로 결정함
- EU는 2017년부터 전 세계 최초로 기업의 비재무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지침인 NFRD(Non-Financial Reporting Directive)를 시행하였으며, 2019. 12월 EU 그린딜을 발표하며 모든 경제 및 산업 부문에서 2050년 기후중립 달성을 위한 정책을 제시하였고, 2020. 3월 기후법(안)(European Climate Law)을 통해 이를 법제화 함
- NFRD는 직원 500명 이상의 대규모 상장기업과 금융권 등에 환경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인 비재무적 정보를 공시하도록 요구하는 지침임
 - 그린딜은 2050년 기후중립 목표에 맞추어, 온실가스, 에너지, 산업, 건물, 교통, 식품, 생태계, 오염 등 사회 전 분야를 전환하기 위한 로드맵을 의미함
- NFRD에 따른 공시정보로는 2050년 기후중립 달성을 위한 기업의 지속가능성 판단이 불충분하다는 지적에 따라 EU집행위원회는 NFRD의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보고 정보를 강화하여 개정된 CSRD를 2022. 11. 28일 최종 승인하였으며, 2023. 1. 6일부터 본격 발효되어 기업 규모에 따라 적용 예정
- CSRD는 EU 회원국에 대한 직접적인 구속력은 없는 지침에 해당하며, 각 회원국은 18개월 이내에 자국 법률을 제정할 의무를 가짐
 - CSRD는 2024 회계연도부터 NFRD 공시 의무가 있는 기업에게 적용되며, 2025년 회계연도부터는 총자산 2000만유로, 총매출 4000만유로, 연 평균 직원 수 250명 중 두 가지 이상 조건에 해당하는 기업에게 적용됨

- EFRAG는 CSRD의 이행을 위해 2022. 8월 ESRS의 초안을 마련하였으며, 여론수렴과 EU 집행위원회의 수정을 거친 수정안이 2023. 7. 31일 최종 채택됨
 - 최종 채택된 ESRS 첫번째 세트는 산업 분야에 관계 없이 모든 기업에게 적용되는 표준으로 2개의 공통 표준과 환경, 사회, 거버넌스에 대한 10개의 주제별 표준으로 구성되며, 거버넌스, 전략, 위험 및 기회 관리, 지표 및 목표에 대한 보고 요구사항을 규정함
 - ① 석유·가스 ② 석탄 등 광업 ③ 도로·운송 ④ 농어업 ⑤ 자동차 ⑥ 에너지·유틸리티 ⑦ 식품 ⑧ 패션 부문의 8개 산업에 대한 산업별 공시기준(Sector-Specific Standard)을 담은 ESRS 두번째 세트는 채택 기한이 당초 2024. 6. 20일에서 2년 연기되어 2026. 6월 도입될 예정
 - 또한, EFRAG는 2024. 1. 22일 중소기업에 대한 보고기준 공개초안을 발표함
 - 상장 중소기업(ESRS LSME)과 비상장 중소기업(ESRS VSME)에 대한 자발적인 표준 포함
 - 공익 및 상장 중소기업(LSME)에 대한 공시법안은 2026. 1. 1일에 발효되며, 비상장 중소기업(VSME)은 자발적으로 표준을 활용하여 공시 가능
- 한편, 미국의 경우 주 정부 차원에서의 ESG 관련 정책들이 논의되고 있으며, 특히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2023. 10월 일정 수준의 대기업을 대상으로 Scope 3를 포함한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기후 기업 데이터 책임법(Climate Corporate Data Accountability Act)과 기업의 기후 관련 재무 위험을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기후 관련 금융위험법(Climate-Related Financial Risk)이 통과됨
 -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2006년 지구온난화 해결법(Global Warming Solutions Act)을 제정하고 캘리포니아주 환경 규제당국인 대기자원위원회(California Air Resources Board; CARB)에게 주 전역의 GHG 배출에 대한 보고 및 검증을 요구하고 해당 법 준수를 모니터링 및 집행하도록 하는 정책을 실행함
 - 기후 기업 데이터 책임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사업을 하며, 연간 총수익이 10억달러를 넘는 모든 기업들에게 2026년부터 Scope 1, 2 온실가스 배출량을 CARB에 제출하고 제3자 검증을 받도록 요구함(2026년부터는 Scope 3 배출량도 공시 대상에 포함)
 - 기후 관련 금융위험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사업을 하며, 연간 총수익이 5억달러를 넘는 모든 기업들에게 기후 관련 재무적 위험과 대응 계획을 재무 위험 보고서를 통해 공개하도록

요구함

- 미국 SEC는 2024. 3. 6일 미국 상장기업(미국 내 기업 및 미국에 상장된 해외 기업 모두 포함)을 대상으로 재무제표 주석에 기후 관련 특정 재무지표 관련 정보를 포함하고, 기업공개(IPO)를 포함한 정기보고서 및 증권신고서에 특정 기후 관련 정보를 제시하도록 요구하는 최종 규칙을 발표함
 - 재무제표 주석으로 제시해야 하는 주요 정보에는 심각한 기상 이변 및 기타 자연 현상의 재무적 영향과 탄소 상쇄 및 재생에너지 인증 관련 정보가 포함됨
 - 정기보고서 및 증권신고서에 공시해야 하는 주요 정보에는 기후 관련 위험이 기업의 전략·사업모형·전망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과 해당 위험을 관리하는 기업의 거버넌스 및 위험관리 절차, Scope 1 및 2 온실가스 배출량이 포함되며, Scope 3 온실가스 배출량은 공시 의무에서 제외됨
 - 그러나, 현재 미국 25개주와 에너지기업, 환경단체 등이 SEC를 상대로 총 9건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며, 이에 SEC는 제8연방항소법원에 병합된 소송에 대한 사법심사가 종료될 때까지 기후공시 시행을 보류하기로 결정함
- 국내에서는 2024년 4월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가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에 대한 이슈를 식별하고 국제 동향에 대한 분석과 국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개초안을 발표함
 - KSSB 자문위원회를 중심으로 한국회계기준원 내 전문위원회, 투자자 전문위원회와 지속가능성 기준제정원칙 및 공시 요구사항에 대해 논의
 - 코스피 상장기업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진행하고 유관기관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의견 청취
 - ISSB의 공시기준을 바탕으로 정보 유용성, 국제 정합성, 기업의 수용가능성을 고려하여 공시기준 제정
 - 정보이용자인 투자자에게 양질의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 제공
 - 글로벌 공시기준과 상호 운용 가능한 공시기준을 제정함으로써 글로벌 공급망에 속한 기업들의 이중 공시 부담 최소화

- 지속가능성 관련 공시기준 적용이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함

1.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 2023년 6월 ISSB는 지속가능성 공시를 위한 최초의 기준서인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발표함
 - ISSB는 2022년 3월 'IFRS S1'과 'IFRS S2' 공개초안을 발표하고 1,400건 이상의 의견서 및 설문 응답을 접수하고 2022년 7월부터 2023년 4월까지 10차례의 공개회의, IASB 및 ISSB의 자문그룹과 20회 이상의 회의를 진행함
 - ISSB는 글로벌 기준선으로써 국가별 공시 요구사항 및 다른 국제 이니셔티브들과의 상호운용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동시에 관련 재무제표에 적용한 회계기준과 무관하게 적용 가능하도록 구성함
 - 지속가능성 공시 관련 체계 및 기준의 다양성으로 인한 복잡성을 줄이기 위해 주요 관할권 및 GRI, EFRAG 등과 협력하여 상호운용가능성을 높임
 -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기준(IFRS, GAAP)과 무관하게 ISSB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이와 같은 절차를 통해 2023년 6월 'IFRS S1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 공시를 위한 일반 요구사항' 과 'IFRS S2 기후 관련 공시' 기준서를 제정함
 - (IFRS S1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 공시를 위한 일반 요구사항) 일반목적재무보고의 이용자(투자자)가 기업에의 자원 제공 의사결정을 수행할 때 유용한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정보를 기업이 공시하도록 일반적인 요구사항을 규정
 - (IFRS S2 기후 관련 공시) IFRS S1에 기술된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공시 요구사항을 제시함
 - IFRS S2에는 TCFD의 권고안이 통합되었으며 산업전반 및 산업기반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요구함
 - IFRS S1 과 IFRS S2는 2024년 1월을 기준으로 적용하며, 적용 첫해 기업의 수용가능성을 고려하여 완화된 주요 경과 규정은 다음과 같음
 - 비교 정보의 미공시 허용

- 기후 외 지속가능성 관련 사안에 대한 정보는 미공시 허용
- 관련 재무제표와 동시가 아닌, 차년도 반기 재무제표 발표 시점에 공시 허용
- Scope 3 GHG(Greenhouse Gas) 배출량 정보에 대한 미공시 허용
- 아울러 기업의 과도한 비용 투입을 방지하기 위해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 개념을 포함하고, 결론 도출 근거와 적용 및 부속 지침을 제공함
 - 적용지침
 - (S1)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 식별, 중요한 정보, 연계된 정보 관련 등
 - (S2) 기후 회복력 평가를 위한 시나리오 분석,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 산업 전반 지표 공시, 기후 관련 목표 공시 관련 등¹⁾
 - 부속지침
 - (S1)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 식별을 위한 원천의 적용 관련, SASB 기준 요구사항을 적용 고려하는 방법의 예시 등
 - (S2) 산업전반 지표 공시, 온실가스 배출량 정보의 세분화 통합 예시, 특정 사업모형 및 활동과 관련된 기후공시를 위한 산업기반 지침 등

1) IFRS S1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 공시를 위한 일반 요구사항

- IFRS S1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 공시를 위한 일반 요구사항(이하 일반 요구사항)은 일반 목적재무보고의 이용자가 기업에 자원을 제공하기 위한 의사결정을 할 때 유용한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정보를 제공토록 요구하는데 목적이 있음
 - 단기, 중기 또는 장기적으로 기업 전망(현금흐름, 자금조달, 자본비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모든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해 적용함
 - 기업 전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없는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과 기회는 적용 범위에 포함하지 않음

1) 교토의정서에서 열거한 7개 온실가스로서 이산화탄소(CO₂), 메탄(CH₄), 아산화질소(N₂O), 수소불화탄소(HFCs), 삼불화질소(NF₃),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₆)

- 관련 재무제표가 IFRS 회계기준이 아닌 GAAP(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에 따라 작성된 경우에도 ISSB 기준 적용이 가능함

- IFRS S1이 제시하는 근본 개념은 IFRS 회계기준 및 IASB의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를 기반으로 함
 - 공정한 표시(Fair presentation)
 - 공정한 표시를 위해 기업 전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목적적합한 정보의 공시를 충실하게 표현해야하며, 표현충실성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업은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를 완전하고, 독립적이며, 정확하게 서술해야 함
 - 예를 들어, 기업의 사업모형이 천연자원에 의존하는 경우 자원의 품질, 가용성 및 가격적 정성에 영향을 받음
 - 자원의 악화나 고갈은 기업의 사업모형이나 전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기업의 재무성과와 재무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반면 자원의 재생과 보존은 기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기업 전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를 식별하고, 각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와 관련하여 가치사슬의 범위를 결정해야 함
 - 중요성(Materiality)
 - 누락, 오기 또는 불분명하여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정보를 의미하며, IFRS 회계기준의 정의와 일관됨
 - 공시기준의 요구사항을 준수하는 것만으로 기업의 단기, 중기 및 장기에 걸친 현금흐름, 자금조달 및 자본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 기업은 추가 정보를 공시해야 함
 - 기업은 중요한 정보를 불분명하게 해서는 안되며, 중요한 정보가 불분명해질 수 있는 상황은 다음과 같음
 - 중요한 정보가 중요하지 않은 추가 정보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경우
 - 중요한 정보가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에 공시되지만, 사용한 언어가 모호하거나

불명확한 경우

-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또는 기회에 대한 중요한 정보가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 전반에 흩어져 있는 경우
- 상이한 정보 항목들이 부적절하게 통합된 경우
- 비슷한 정보 항목들이 부적절하게 통합된 경우
- 투자자가 판단할 수 없을 정도로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의 이해가능성이 낮아지는 경우

○ 보고 기업(Reporting entity)

- 관련 재무제표의 보고기업과 동일
- IFRS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연결재무제표는 단일 보고기업으로서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

○ 연계된 정보(Connected information)

-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 간,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 내,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와 재무제표 간 연계된 정보 요구
- 다양한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공시 간의 연계
 - 예를 들어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기업의 감독이 통합되는 경우, 각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의 거버넌스에 대해 별도의 공시를 제공하는 대신 거버넌스에 대한 공시를 통합
- 연계된 정보를 제공하는데 있어 기업은 공시 간의 연계를 명확하고 간결한 방식으로 설명하도록 함
 -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에서 공통적인 항목의 정보를 공시하도록 요구할 경우 불필요한 중복을 피해야 함

□ 일반 요구사항

○ 지침의 원천(Sources of guidance)

-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의 식별, 적용가능한 공시 요구사항을 식별할 때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적용

-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외에도 SASB 기준의 공시 주제, CDSB 프레임워크 적용지침, 투자자의 정보수요를 충족하도록 고안된 요구사항을 가진 다른 기준제정기준의 발표 등을 고려하도록 함

○ 공시의 위치(Location of disclosures)

- 재무제표를 포함한 일반목적재무보고의 일부로서 제공
- 지속가능 관련 재무공시가 일반목적재무보고서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 경영진 보고서, 경영진 논의 및 분석(MD&A), 운영 및 재무 검토, 통합 보고서, 전략 보고서 등 유사한 보고서에 포함될 수 있음
- 또한 기업이 발행한 다른 보고서를 상호참조하는 방식으로 관련 재무공시에 포함될 수 있음
 - 상호참조로 포함되는 경우 해당 정보가 포함된 보고서를 명확하게 식별하고 보고서에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 설명해야 하며, 정확하게 지정된 부분을 상호참조 하도록 함

○ 보고시기(Timing of reporting)

- 재무보고기간과 동일한 보고기간에 대하여 재무제표와 동시에 보고
- 일반적으로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는 12개월(52주) 내에 작성하되, 보고기간 종료일을 변경하여 12개월을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다음을 공시함
 -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에 적용된 보고기간
 - 보고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거나 미달하게 된 이유
 -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에 공시된 값이 완전하게 비교가능하지 않다는 사실
- 보고기간 말과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 발행승인일 사이에 존재했던 상황에 대한 정보가 발생할 경우 새로운 정보를 고려하여 공시를 갱신함
- 기업이 중간 일반목적재무보고서를 발표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 새로운 정보, 사건 및 상황에 중점을 두며 이미 보고된 정보를 반복하지 않음

○ 비교정보(Comparative information)

- 보고기간에 공시하는 모든 값에 대해 비교정보를 공시
- 지표 및 목표 또는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의 현재 재무적 영향 및 예상 재무적

영향

- 새로운 정보를 식별하고 새로운 정보가 상황에 대한 증거를 제공하는 경우 수정된 비교값을 공시하고, 수정하는 이유를 설명하도록 함
- 마찬가지로 보고기간에 지표를 재정의하거나 대체하는 경우 수정된 비교값을 공시하고 재정의되거나 대체된 지표가 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이유를 공시함

○ 준수 문구(Statement of compliance)

- IFRS 공시기준의 모든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경우 준수 사실을 제한없이 기재할 수 있음
- 현지 법률이나 규제가 금지하는 경우 또는 지속가능성 관련 기회에 대한 정보가 상업적으로 민감한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공시를 면제할 수 있음

□ 판단, 불확실성 및 오류

○ 판단(Judgements)

- 기업은 투자자가 기업이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 내의 정보에 가장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판단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공시
- 기업 전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의 식별
-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에 포함할 중요한 정보의 식별
- 사건이나 상황의 변화가 유의적인지, 기업의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 영향을 받는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의 범위를 재평가해야 하는지에 대한 평가

○ 측정 불확실성(Measurement uncertainty)

- 재무공시에 보고된 값에 영향을 미치는 불확실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시해야 함
- 기업은 측정불확실성이 높은 보고된 값을 식별하고 측정불확실성의 원천(미래 사건의 결과, 측정 기법, 데이터의 가용성 등)에 대한 정보를 공시해야 하며 해당 정보 유형의 예는 다음과 같음
 - 가정 또는 기타 측정불확실성 원천의 성격
 - 계산의 방법, 가정 및 추정값에 따른 공시된 값의 민감도

- 공시된 값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불확실성의 해소 및 합리적으로 가능한 결과의 범위
-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채로 남은 경우 공시된 값과 관련한 과거 가정의 변경에 대한 설명

○ 오류(Errors)

- 기업은 공시된 과거기간들의 전기오류들을 재작성하여 중요한 오류들을 수정해야 함
- 전기오류는 산술적 계산오류, 지표 또는 목표의 정의 적용오류, 사실의 간과 또는 해석의 오류 및 부정행위 등의 영향을 포함
- 전기오류를 식별한 경우 기업은 다음을 공시함
 - 전기오류의 성격
 -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범위까지 비교공시된 각 과거기간의 수정사항
 - 실무적으로 오류를 수정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 및 오류수정의 적용방법과 적용한 시기에 관한 내용

-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와 관련하여 네 가지 핵심요소인 거버넌스, 전략, 위험관리, 지표 및 목표에 대한 정보 공시

○ 거버넌스(Governance)

- 지속가능성 위험 및 기회를 모니터링, 관리 및 감독하는 데 사용되는 기업의 프로세스, 통제 및 절차를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
-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를 감독할 책임이 있는 의사결정기구(이사회, 위원회 또는 이에 상응하는 거버넌스 담당기구) 또는 개인을 식별하고 다음의 정보를 공시함
 - 지속가능성 관련 책임이 해당 의사결정기구 또는 개인에게 적용되는 기업의 운영규정, 위임권한, 직무기술서 및 기타 관련 정책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설명된 정보
 - 의사결정기구 또는 개인이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응하기 위해 고안된 전략을 감독할 수 있는 적절한 기량과 역량을 갖추었는지 또는 향후 개발될 것인지 설명된 정보
 - 의사결정기구 또는 개인이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안내받는지, 얼마나 자주 안내받는지 설명된 정보

- 의사결정기구 또는 개인이 기업의 전략, 주요 거래에 대한 의사결정, 위험관리 프로세스 및 관련 정책을 감독할 때 지속가능성을 고려하는지 설명된 정보
- 의사결정기구 또는 개인이 지속가능성 관련 목표의 설정을 어떻게 감독하고 진척도를 어떻게 모니터링하는지 설명된 정보
-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사용하는 거버넌스 프로세스, 통제 및 절차상의 경영진의 역할은 다음 정보를 포함
 - 특정 경영진 수준의 직책이나 위원회에 위임되고 어떻게 감독되는지 설명된 정보
 -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 감독을 지원하기 위해 경영진이 통제 및 절차를 거치고 다른 내부 기능과 통합하는지 설명된 정보

○ 전략(Strategy)

-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를 관리하기 위한 기업의 전략을 이해하기 위한 정보
-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
 - 기업 전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정보
 - 각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의 영향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합리적 기간범위(단기, 중기 또는 장기)에 대한 정보 명시
 - 기업이 설정한 기간범위의 정의 및 전략적 의사결정을 위해 사용되는 계획기간과 연계성에 대한 정보
- 사업모형과 가치사슬
 -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가 기업의 사업모형과 가치사슬에 미치는 현재 영향 및 예상 영향에 대한 정보
 - 기업의 사업모형과 가치사슬에서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가 집중된 부분에 대한 정보
- 전략 및 의사결정
 - 기업의 전략 및 의사결정에서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대응 방법 및 계획
 - 과거 보고기간에 공시한 계획의 진척도

- 기업이 고려한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 간의 절충
-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
 -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가 보고기간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보
 - 기업은 보고일에 과도한 비용이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모든 정보를 사용함
 - 양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기량, 역량 및 자원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음
- 회복탄력성(Resilience)
 -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에서 발생하는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능력 관련 정보
 - 기업 전략과 사업모형의 회복탄력성에 대한 질적 평가와 양적 평가에 대한 정보 공시
- 위험관리(Risk management)
 -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를 식별, 평가하고 우선순위 설정 및 모니터링하기 위한 기업의 프로세스를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를 공시하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기업이 사용하는 투입변수 및 매개변수
 -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의 식별을 위한 시나리오 분석 관련 정보
 -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의 성격, 발생가능성 및 영향의 크기에 대한 평가 방식
 -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에 대한 우선순위 적용 여부와 방식
 -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에 대한 모니터링 방식
 - 관련 프로세스의 변경 및 변경 내용에 대한 정보
- 지표 및 목표(Metrics and targets)
 -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와 관련된 기업의 성과를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기업이 설정한 목표, 법률이나 규제에 따라 충족해야 하는 목표에 대한 진척도 포함)
 - 적용가능한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에서 요구하는 지표
 -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또는 기회와 관련한 기업의 성과를 측정하고 모니터링하는데

사용하는 지표

- 기업이 지표를 개발하는 경우 다음의 정보를 공시함
 - 지표의 정의 및 원천에 대한 설명
 - 지표의 절댓값, 상대값 및 질적 측정치
 - 제3자 검증 여부 및 검증기관에 대한 정보
 - 지표 계산을 위한 방법론과 계산에 사용된 가정 및 투입변수
- 설정된 목표 및 법률이나 규제를 충족시키기 위한 목표에 대해 정보를 공시
 - 목표 설정 및 달성을 위한 진척도를 모니터링하는 데 사용되는 지표
 - 기업이 충족해야 하는 구체적인 양적 또는 질적 목표
 - 목표가 적용되는 기간
 - 진척도 측정의 기준기간
 - 주요 단계 및 중간 목표
 - 성과의 추세나 변동에 대한 분석
 - 목표의 수정사항과 그에 따른 설명

2) IFRS S2 기후 관련 공시

- IFRS S2 기후 관련 공시는 일반목적재무보고의 이용자에게 유용한 기업의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를 식별하고 중요한 정보를 제공토록 요구하는데 목적이 있음
 - 단기, 중기 또는 장기에 걸쳐 기업의 현금흐름, 자금조달, 자본비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해 적용함
 - 기업이 노출된 기후 관련 물리적 위안협, 전환 위험 및 기업이 이용할 수 있는 기후 관련 기회 등
 - 기업 전망에 예상할 수 없는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는 공시 적용 범위에서 제외함
-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와 관련하여 네 가지 핵심요소인 거버넌스, 전략, 위험관리, 지표

및 목표에 대한 정보 공시

○ 거버넌스

- 기업이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를 모니터링하고 관리 감독하는 데 사용되는 기업의 프로세스, 통제 및 절차에 대한 정보를 공시할 것을 요구
-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를 감독할 책임이 있는 의사결정기구(이사회, 위원회 또는 이에 상응하는 거버넌스 담당기구) 또는 개인을 식별하고 다음의 정보를 공시함
 - 지속가능성 관련 책임이 해당 의사결정기구 또는 개인에게 적용되는 기업의 운영규정, 위임권한, 직무기술서 및 기타 관련 정책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설명된 정보
 - 의사결정기구 또는 개인이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응하기 위해 고안된 전략을 감독할 수 있는 적절한 기량과 역량을 갖추었는지 또는 향후 개발될 것인지 설명된 정보
 - 의사결정기구 또는 개인이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안내받는지, 얼마나 자주 안내받는지 설명된 정보
 - 의사결정기구 또는 개인이 기업의 전략, 주요 거래에 대한 의사결정, 위험관리 프로세스 및 관련 정책을 감독할 때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를 고려하는지 설명된 정보
 - 의사결정기구 또는 개인이 기후 관련 목표의 설정을 어떻게 감독하고 진척도를 어떻게 모니터링하는지 설명된 정보
-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사용하는 거버넌스 프로세스, 통제 및 절차상의 경영진의 역할은 다음 정보를 포함
 - 특정 경영진 수준의 직책이나 위원회에 위임되고 어떻게 감독되는지 설명된 정보
 - 경영진이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의 감독을 지원하기 위해 통제 및 절차를 거치고 다른 내부 기능과 통합하는지 설명된 정보
- 위의 요구사항에 대한 공시작성 시 기업은 IFRS S1 일반 요구사항에 따라 불필요한 중복을 피하도록 함
 -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와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가 통합적으로 관리되는 경우 통합된 거버넌스 공시를 통해 중복을 피할 수 있음

○ 전략

-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를 관리하기 위한 기업의 전략을 이해하기 위한 구체적 정보를 공시함
-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
 - 기업 전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해 기술
 -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의 영향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합리적 기간범위에 대한 정보 명시
 - 기업이 설정한 기간범위의 정의 및 전략적 의사결정을 위해 사용되는 계획기간과 연계성에 대한 정보
- 사업모형과 가치사슬
 -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가 기업의 사업모형과 가치사슬에 미치는 현재 및 예상 영향에 대한 정보²⁾
 - 기업의 사업모형과 가치사슬에서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가 집중된 부분(지리적 영역, 시설 및 자산의 유형)에 대한 정보
- 전략 및 의사결정
 - 기업의 전략 및 의사결정에서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대응 방법 및 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음의 정보를 공시함
 - ① 기업의 사업모형에 대한 현재 및 예상 변화
 - ② 직접적인 완화 및 적응을 위한 현재 및 예상되는 노력(생산 공정이나 설비의 변경, 시설 재배치, 인력 조정 및 제품 사양 변경 등)
 - ③ 간접적인 완화 및 적응을 위한 현재 및 예상되는 노력(고객 및 공급망과의 협력)
 - ④ 기후 관련 전환 계획
 - ⑤ 기후 관련 목표에 대한 달성 계획
 - 공시된 활동들을 위한 자원의 조달 방법에 대한 정보

2) 가치사슬은 기업이 기획에서 배송, 소비 및 수명종료에 이르기까지 기업의 제품 또는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 사용하고 의존하는 상호작용, 자원 및 관계를 망라하며, 여기에는 기업운영에서의 상호작용, 자원 및 관계(예: 인적자원), 공급, 마케팅 및 유통 채널에서의 상호작용, 자원 및 관계(예: 자재 및 서비스의 조달, 제품과 서비스 판매 및 배송), 기업의 자금조달, 지리적·지정학적 규제 환경을 포함.

- 공시된 활동들을 위해 과거 보고기간에 공시한 계획의 진척도
-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
 -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가 보고기간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보
 - 기업은 보고일에 과도한 비용이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모든 정보를 사용함
 - 양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기량, 역량 및 자원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음
- 기후회복력(Climature Resilience)
 - 기후 관련 위험에서 발생하는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능력 관련 정보
 - 기업 전략과 사업모형의 회복탄력성에 대한 질적 평가와 양적 평가에 대한 정보 공시
 - 기후 관련 시나리오 분석에 사용한 투입변수에 대한 정보
 - ① 분석에 사용한 기후 관련 시나리오 및 해당 시나리오의 원천
 - ② 다양한 기후 관련 시나리오가 분석에 포함되었는지
 - ③ 분석에 사용한 기후 관련 시나리오가 기후 관련 전환 위험 또는 물리적 위험과 연관이 있는지
 - ④ 기후변화에 관한 최신 국제 협약에 부합하는 시나리오 적용 여부
 - ⑤ 기후 관련 변화, 전개 상황 또는 불확실성에 대한 기업의 회복탄력성 평가와 관련성이 있다고 결정한 이유
 - ⑥ 분석에 사용한 기간범위
 - ⑦ 분석에 사용한 사업의 범위(분석에 사용된 사업장의 위치 및 사업 단위)
 - 분석에 사용된 기업의 주요 가정은 다음을 포함
 - ① 기업이 운영되는 관할권의 기후 관련 정책
 - ② 거시경제 동향
 - ③ 국가 또는 지역 수준의 변수(지역 날씨 패턴, 인구 특성, 토지 이용, 기반시설 및 천연자원의 가용성)

④ 에너지 사용 및 믹스

⑤ 기술 개발

○ 위험관리

-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를 식별, 평가하고 우선순위 설정 및 모니터링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를 공시하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기업이 사용하는 투입변수 및 매개변수
 - 기후 관련 위험의 식별을 위한 시나리오 분석 관련 정보
 - 기후 관련 위험의 성격, 발생가능성 및 영향의 크기에 대한 평가 방식
 - 기후 관련 위험에 대한 우선순위 적용 여부와 방식
 - 기후 관련 위험에 대한 모니터링 방식
 - 기후 관련 프로세스의 변경 및 변경 내용에 대한 정보

○ 지표 및 목표

-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와 관련된 기업의 성과를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기업이 설정한 목표, 법률이나 규제에 따라 충족해야 하는 목표에 대한 진척도 포함)를 공시
- 기후 관련 지표
 - 온실가스
 - ① 보고기간 동안 발생한 온실가스 절대 총 배출량을 이산화탄소환산톤(CO₂e)으로 표시하고³⁾, Scope 1, Scope 2, Scope 3 으로 분류하고 공시
 - ㉠ Scope 1 : 기업이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배출원에서 발생하는 직접 온실가스 배출량
 - ㉡ Scope 2 : 기업이 구매하거나 획득하여 사용한 전기, 증기, 난방 또는 냉각에서 발생하는 간접 온실가스 배출량
 - ㉢ Scope 3 : 기업 가치사슬 내에서 발생하지만 Scope 2 온실가스 배출량에 포함되지 않는 간접 온실가스 배출량

3) 각 온실가스의 지구온난화지수를 나타내는 보편적 측정 단위로, 이산화탄소 한 단위의 지구온난화지수로 표시됨. 이 단위는 서로 다른 온실가스의 배출(또는 배출 회피)을 공통 근거로 평가하는 데 사용됨.

- ②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온실가스 프로토콜 기업 회계 및 보고 기준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함⁴⁾
 - ③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한 접근법(측정방법, 투입변수, 가정 등)을 공시함
 - ④ Scope 1, 2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해 회계상 지배기업과 종속기업, 관계기업, 공동기업, 비연결대상 종속기업 등을 세분화하여 공시함
 - ⑤ Scope 3 온실가스 배출량의 경우 온실가스 프로토콜 기업 가치사슬 회계 및 보고 기준에서 제시하는 Scope 3 카테고리를 이용하고, 기업의 활동에 금융활동이 포함된 경우 카테고리 15 온실가스 배출량 또는 금융배출량에 대한 추가 정보를 공시함⁵⁾⁶⁾⁷⁾
- 기후 관련 전환 위험 : 기후 관련 전환 위험에 취약한 자산 또는 사업활동의 금액 및 백분율
 - 기후 관련 물리적 위험 : 기후 관련 물리적 위험에 취약한 자산 또는 사업활동의 금액 및 백분율
 - 기후 관련 기회 : 기후 관련 기회에 부합하는 자산 또는 사업활동의 금액 및 백분율
 - 자본 배치 :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비하여 배치된 자본적 지출, 자금조달 또는 투자 금액
 - 내부 탄소 가격
 - ① 기업이 탄소 가격을 의사결정에 적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
 - ② 기업이 온실가스 배출량의 원가를 평가하기 위해 사용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톤당 가격
 - 보상

4) Greenhouse Gas Protocol: A corporate Accounting and Reporting Standard, 2004.

5) Greenhouse Gas Protocol Corporate Value Chain Scope 3 Accounting and Reporting Standard, 2011.

6) 금융배출량은 피투자자 또는 거래상대방의 온실가스 총배출량 중 피투자자 또는 거래상대방에 대한 기업의 대여 및 투자에 기인하는 부분을 의미함.

7) Scope 3 온실가스 배출량의 15가지 카테고리는 다음과 같음.

①구매한 상품 및 서비스 ②자본재 ③Scope 1 온실가스 배출량 또는 Scope 2 온실가스 배출량에 포함되지 않는 연료 및 에너지 관련 활동 ④업스트림 운송 및 유통 ⑤영업에서 발생된 폐기물 ⑥출장 ⑦종업원의 통근 ⑧업스트림 리스자산 ⑨다운스트림 운송 및 유통 ⑩판매된 제품의 가공 ⑪판매된 제품의 사용 ⑫판매된 제품의 수명종료 시 처리 ⑬다운스트림 리스자산 ⑭프랜차이즈 ⑮투자

- ① 기후 관련 사항이 경영진 보상에 고려되는지에 대한 기술
 - ② 당기의 경영진 보상에서 기후 관련 고려사항과 연계된 보상의 백분율
- 기후 관련 목표
- 설정된 목표 및 범률이나 규제를 충족시키기 위한 목표에 대해 정보를 공시
 - ① 목표 설정에 사용되는 지표
 - ② 목표의 목적(완화, 적응, 과학 기반 이니셔티브에 부합)
 - ③ 목표가 적용되는 기업의 부분(기업 전반에 적용되는지 또는 특정 사업 단위 또는 특정 지리적 위치에만 적용되는지)
 - ④ 목표가 적용되는 기간
 - ⑤ 진척도 측정의 기준기간
 - ⑥ 주요 단계 및 중간 목표
 - ⑦ 양적 목표의 경우 절대량 목표인지 또는 집약도 목표인지 구분
 - ⑧ 기후변화에 관한 최신 국제 협약과 그 협약에 따른 관할권의 약속이 목표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기술
 - 목표를 설정하고 검토하는 기업의 접근법에 대한 정보와 진척도에 대한 모니터링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시함
 - ① 목표 및 목표 설정 방법에 대한 제삼자의 검증 여부
 - ② 목표를 검토하기 위한 기업의 프로세스
 - ③ 목표 달성 진척도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사용된 지표
 - ④ 목표의 수정과 그에 대한 설명
 -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에 대해 다음 사항을 공시함
 - ① 해당 목표가 다루는 온실가스의 종류
 - ② 해당 목표가 Scope 1, 2, 3 온실가스 배출량을 다루는지 여부
 - ③ 목표가 온실가스 총배출량인지 순배출량인지 여부(순배출량을 공시하는 경우 연관된 총배출량 목표를 별도로 공시해야 함)
 - ④ 해당 목표가 부문별 탈탄소화 접근법(sectoral decarbonisation approach)을

사용하여 도출된 것인지 여부

- ⑤ 온실가스 순배출량 목표 달성을 위해 배출량을 상쇄하는 탄소 크레딧(carbon credits)의 사용과 그에 대한 정보 공시⁸⁾
- ㉠ 온실가스 순배출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탄소 크레딧의 사용 정도와 이에 어떻게 의존하는지
- ㉡ 탄소 크레딧에 대한 제3자 검증 또는 인증제도
- ㉢ 탄소 크레딧의 유형
- ㉣ 탄소 크레딧의 신뢰성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모든 기타 요인

2. EU ESRS

- EFRAG은 CSRD의 시행을 위한 지속가능성 보고 표준안으로 2022년 4월 ESRS의 초안을 발표하고, 11월 최종안을 EU집행위원회에 제출하였으며, 다시 여론수렴과 EU집행위원회의 수정을 거쳐 2023년 6월 15일 수정안이 공개됨
- EU집행위원회는 2023. 7. 31일 모든 지속가능성 주제에 걸쳐 모든 기업에게 적용되는 공시 요구사항을 규정한 ESRS 최종본 첫번째 세트를 채택
- ESRS는 2개의 공통 표준(General; Cross-cutting Standards)과 환경, 사회, 거버넌스에 대한 11개의 주제별 표준(Topical Standards)으로 구성
- 공통 표준은 일반 원칙(General requirements)에 관한 ESRS1과 지속가능성 문제에 대한 일반 공시 요구사항(General disclosure)을 규정한 ESRS2로 구성
 - ESRS1는 CSRD에 따른 지속가능성 보고서 작성 시 적용해야 할 개념 및 원칙을 규정
 - ESRS의 목적 및 범위, 이중 중대성 평가, 지속가능성 실사, 가치사슬, 시간규모, 지속가능성 정보의 준비 및 공시방법, 지속가능성 정보의 구조, 유예 기간 등을 포괄적으로 설명

8) 탄소 크레딧 프로그램에 의해 발행되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또는 제거를 나타내는 배출량 단위로 기업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상쇄하기 위해 생성하거나 구매하는 상품을 의미함

- ERS2는 기업이 주제별 표준 공시 시, 필수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① 거버넌스, ② 전략, ③ 영향, 위험 및 기회 관리, ④ 지표 및 목표의 4가지 공통공시 항목에 대한 기준을 제시
- 주제별 표준은 산업 분야에 관계 없이(sector-agnostic) 모든 기업에게 적용되는 환경(E), 사회(S) 및 거버넌스(G)에 대한 요구사항을 제시
 - 환경(Environment) : ① 기후변화, ② 오염, ③ 수자원 및 해양 자원, ④ 생물 다양성 및 생태계, ⑤ 자원 사용 및 순환 경제의 5가지 환경 영역에 대한 공시표준 제시
 - 사회(Social): ① 기업 자체 인력, ② 가치사슬 근로자, ③ 기업활동에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 ④ 소비자 및 최종 사용자의 4가지 사회 영역에 대한 공시 표준 제시
 - 지배구조(Governance): ① 비즈니스 행위에 대한 공시 표준 제시

2.1. ERS1 일반 원칙

□ ERS에 따른 표준 및 공시의 범주

- ERS1 일반요구사항 및 ERS2 일반 공시 요구사항은 모든 지속가능성 문제에 적용
 - ERS2는 모든 지속가능성 주제에 대해 일반적인 수준에서 기업이 의무적으로 제공할 정보를 설정
 - 주제별 ERS는 ERS2의 특정 공시 요구사항을 준수하는 데 필요한 주제에 대해 추가적인 특정 요구사항을 포함
- 주제별 ERS2 공시 요구 사항의 보고 영역
 - 거버넌스(GOV): 영향, 위험 및 기회를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는 데 사용되는 거버넌스 프로세스, 통제 및 절차
 - 전략(SBM): 기업의 전략 및 사업모형이 중요한 영향, 위험 및 기회와 상호 작용하는 방식 및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
 - 영향, 위험 및 기회 관리(IRO): 기업의 정책 및 조치를 통한 영향, 위험 및 기회의 식별 · 평가 · 관리 과정
 - 지표 및 목표(MT): 기업이 설정한 목표에 대한 진행 상황을 포함하여 기업의 성과를

측정하는 방법

□ 이중 중대성(Double materiality)

- 기업이 보고할 중요한 영향, 위험 및 기회 식별을 위해 중대성 평가 수행이 필요
- 이중 중대성은 “영향 중대성(Impact materiality)”과 “재무 중대성(Financial materiality)”의 두 가지 측면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지속가능성 문제가 영향 중대성 또는 재무 중대성에 정의된 기준을 충족할 때 기업에 중요하다고 판단
- 영향 중대성
 - 기업이 단기 · 중기 · 장기적 시간 규모에서 실제적 또는 잠재적,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사람이나 환경에 영향을 미칠 때, 영향 관점에서 중요하다고 판단
 - 영향에는 기업으로 인해 발생하거나 기업이 기여한 영향과 비즈니스 관계(업스트림 및 다운스트림 가치 사슬이 포함되며 직접적인 계약 관계에만 한정되지 않음)를 통해 기업 활동, 제품 또는 서비스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영향이 포함
 - 사람이나 환경에 대한 영향에는 환경 · 사회 · 거버넌스 문제와 관련된 영향이 포함
 -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중대성 평가는 UN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UNGP)⁹⁾과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¹⁰⁾의 국제 문서에서 정의된 지속가능성 실사 프로세스에 따라 결정됨
 - 중대성은 영향의 심각도(규모, 범위, 비가역성)를 기반으로 하며, 잠재적 부정적 영향의 경우 영향의 심각도 및 발생가능성에 기반함
 - 긍정적 영향에 대한 중대성 평가는 ① 실제적 영향의 규모 및 범위와 ② 잠재적 영향의 규모, 범위 및 발생가능성에 기반함
- 재무 중대성
 - 기업의 재무제표에 어떤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는지 결정하는 과정에서 적용되는 중대성의 범위를 확장한 개념으로, 지속가능성 문제가 기업에 중대한 재정적 영향을 유발할

9) 2011년 6월 UN 인권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국가와 기업이 기업 활동에서 자행되는 인권 침해를 예방, 해결 및 구제하는 것을 돕기 위해 마련된 일련의 지침으로, ① (보호) 인권 침해를 보호해야 할 국가의 책임, ② (존중) 인권 존중에 대한 기업의 책임, ③ (구제) 기업 관련 인권침해 피해자의 구제 수단 마련의 세가지 축으로 구성

10) 다국적기업이 미치는 사회·환경적 영향을 고려하여 제정된 모범적 행동규범으로 ① 개념과 원칙, ② 일반정책, ③ 정보공개, ④ 인권, ⑤ 고용 및 노사관계, ⑥ 환경, ⑦ 뇌물공여, 뇌물청탁 및 강요 방지, ⑧ 소비자보호, ⑨ 과학 및 기술, ⑩ 경쟁, ⑪ 조세의 11가지 장으로 구성

수 있는 경우 재무적 관점에서 중요하다고 판단

- 단기 · 중기 · 장기적 시간 범위에서 기업의 현금 흐름, 개발, 성과, 지위, 자본 비용 또는 금융 접근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위험 또는 기회를 유발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
- 과거 또는 미래의 사건으로부터 유발된 위험 및 기회는 다음 사항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① 이미 재무보고에서 인식되었거나 미래 사건의 결과로 인식될 수 있는 자산 및 부채
 - ② 자산과 부채의 재무회계 정의 또는 관련 인식 기준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현금 흐름의 생성 및 일반적인 기업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 창출 요소
- 지속가능성 문제에 대한 재무 중대성은 기업의 통제 범위 내에 있는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재무보고서 작성시 적용된 연결 범위를 넘어 다른 기업 또는 이해관계자와의 비즈니스 관계에 대한 중요한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정보를 포함함
- 기업의 중대성 평가 과정은 지속가능성 문제를 다루기 위한 조치로부터 발생하는 중요한 영향 또는 위험을 포함해야 함
 - 예를 들어, 특정 제품의 폐기와 관계된 탈탄소화 생산의 실행 방안은 기업 자체 인력에 중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해고 수당으로 인한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
 - 또한, 전기 자동차 공급에 포커스를 맞추려는 자동차 공급업체의 실행 방안은 기존 자동차의 공급 부품 생산을 위한 자산의 좌초로 이어질 수 있음
 - 중대한 부정적 영향 또는 중대한 위험의 존재 여부와 이를 발생시키는 조치를 언급하고, 중대한 부정적 영향이나 중대한 위험을 다루는 방식에 대해 설명
- 중대성 평가 결과에 관계없이, 기업은 항상 다음 정보를 공시
 - ERS2 일반 공시(즉, ERS2에 명시된 모든 공시 요구사항 및 데이터 포인트)
 - 공시 요구사항 IRO-1(중요한 영향, 위험 및 기회를 식별하고 평가하는 절차)와 관련된 주제별 ERS의 공시 사항에서 요구하는 정보
- 중대성 평가 결과, 지속가능성 문제가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수행
 - ERS의 특정 지속 가능성 문제와 관련된 공시 요구 사항에 따른 보고

- 중요한 지속가능성 문제가 ESRs에서 다루어지지 않거나 세부성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추가적인 적절한 기업별 공시 개발 및 보고

- 기업에서 지속가능성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주제별 ESRs의 모든 공시 요구 사항을 생략한 경우, 해당 주제에 대한 중대성 평가의 결론을 간략히 설명

□ 지속가능성 실사

- 지속가능성 실사 프로세스는 UNGP와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의 국제 문서에 서술됨
- 지속가능성 실사 프로세스의 결과는 기업의 중대한 영향, 위험 및 기회에 대한 평가에 대한 정보를 제공
- ESRs는 지속가능성 실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행동 요구 사항도 강요하지 않으며, 거버넌스 기구의 역할을 확장하거나 수정하지 않음
- 지속가능성 실사의 핵심 요소는 ESRs2 및 주제별 ESRs에 명시된 공시 요구 사항을 직접 반영함

□ 시간 규모

- 지속가능성 보고서의 보고 기간은 재무제표의 보고 기간과 일치하도록 함
- 관련 공시 요구사항에서 진행 상황의 보고 방법을 정의하지 않은 한, 목표에 대한 발전 및 진행 상황 보고 시 현재 보고된 정보를 기준 연도와 비교하여 제시해야 함
- 단기, 중기, 장기 시간 규모의 정의
 - 단기: 기업이 재무제표에서 보고 기간으로 채택한 기간
 - 중기: 단기 보고 기간 종료일부터 최대 5년까지
 - 장기: 5년 이상(영향 또는 조치가 5년보다 긴 기간에 대해 예상되며, 지속가능성 보고서의 사용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추가적인 시간 분류가 필요한 경우 장기 기간에 대한 추가 분류 적용 가능)

□ 지속가능성 정보 준비 및 공시

○ 비교 정보의 제시

- 현 기간에 공시된 모든 정량적 측정 항목 및 금액을 이전 기간과 비교하여 정보 공개
- 지속가능성 보고서에 과거에 보고된 정보와 다른 비교 정보를 보고하는 경우, 이전 기간에 보고된 정보와 수정된 비교 정보의 차이 및 수정 이유를 설명

○ 추정 및 결과 불확실성의 근원

- 가치 사슬 정보를 포함하여 지표를 직접 측정할 수 없고 추정만 할 수 있는 경우, 측정 불확실성이 발생할 수 있음
- 시나리오 또는 민감도 분석을 포함한 합리적인 가정 및 추정의 사용은 지속가능성 관련 지표를 준비하는 데 필수적인 부분이며, 가정 및 추정이 정확하게 기술되고 설명된다면 정보의 유용성을 훼손하지 않음
- 지속가능성 보고서가 재무 데이터 및 가정을 포함하거나 이와 관련되어 있는 경우, 그러한 데이터 및 가정은 기업의 재무제표에 사용된 해당 재무 데이터 및 가정과 최대한 일치해야 함
- 일부 ESRS 요구사항은 결과가 불확실한 미래의 사건에 대한 설명 등에 대한 정보 공개를 요구하며, 이에 대한 중요성 판단 시 다음 사항을 고려
 - 해당 사건이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의 미래 현금 흐름, 개발, 성과 및 지위의 가치 등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 또는 예상가능한 결과
 - 심각도의 결정 요인과 사람이나 환경에 대한 중대한 영향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사건의 잠재적 영향
 - 가능한 결과의 범위와 해당 범위 내에서의 발생가능성

○ 과거 기간에 대한 오류 보고

- 실행 불가능하지 않는 한, 이전 기간에 대해 공시된 비교 양을 재작성하여 중요한 과거 기간의 오류를 수정
- 오류에는 수학적 오류의 영향, 지표 및 목표에 대한 정의 적용의 오류, 사실에 대한 감독 또는 잘못된 해석 등이 포함

○ 연결(통합) 보고 및 자회사 면제

- 연결 수준에서 보고하는 경우, 기업은 그룹의 법적 구조에 관계없이 전체 연결 그룹에

대한 중요한 영향, 위험 및 기회에 대한 평가를 수행

- 그룹 차원의 중대한 영향, 위험 또는 기회와 하나 이상의 자회사의 중대한 영향, 위험 또는 기회 사이의 중요한 차이를 식별하는 경우, 해당 자회사 또는 관련 자회사들의 영향, 위험 및 기회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을 적절히 제시

○ 지적 재산, 노하우 또는 혁신의 결과에 대한 정보

- 전략, 계획 및 조치에 관한 정보 공개 시, 지적 재산, 노하우 또는 혁신의 결과에 해당하는 특정 정보가 공시 요구 사항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관련되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특정 정보 생략 가능
 - 비밀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특정 정보가 일반적으로 문제의 정보 종류를 다루는 집단 내의 사람들 사이에 잘 알려져 있지 않거나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경우)
 - 비밀 정보로서의 상업적 가치가 있는 경우
 - 해당 기업이 이를 비밀로 유지하기 위해 합당한 조치를 취한 경우

2.2. ESRS2 지속가능성 문제에 대한 일반공시

- 기업 활동 부문에 관계없이(sector-agnostic) 모든 지속가능성 주제에 걸쳐 (cross-cutting) 모든 기업에게 적용되는 공시 요구사항을 규정
- ESRS2 일반 공시와 함께 주제별 ESRS에 규정된 공시 요구사항 적용
 - IRO-1(중요한 영향, 위험 및 기회를 식별하고 평가하는 절차)와 관련된 주제별 표준의 모든 요구사항
 - 다른 요구사항의 경우, 기업의 중대성 평가에 기반하여 지속가능성 주제가 중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적용

1) 작성원칙

- 지속가능성 보고서 작성을 위한 일반 원칙(BP-1)

○ 지속가능성 보고서 작성의 기본 원칙

- 연결 범위(scope of consolidation)

- 지속가능성 보고서가 통합(consolidated) 또는 개별(individual) 기준으로 작성되었는지 여부
- 통합 지속가능성 보고서의 경우, 연결범위가 재무제표와 동일함을 확인

- 가치사슬 정보

- 지속가능성 보고서가 기업의 업스트림 및 다운스트림 가치 사슬을 어느 정도까지 포함하는지

- 특정 정보의 생략

- 기업이 지적 재산, 노하우 또는 혁신의 결과에 해당하는 특정 정보의 생략을 선택했는지 여부
- 협상 중인 사안 또는 임박한 개발 사항에 대한 공시 면제를 허용하는 EU 회원국에 기반한 기업¹¹⁾의 경우, 해당하는 특정 정보의 생략을 선택했는지 여부

□ 특정 상황 관련 공시(BP-2)

○ 시간 규모(Time horizons)

- 정의된 단 · 중 · 장기 시간 범위를 벗어난 경우, 기업은 적용한 시간 규모의 정의와 해당 정의를 적용한 이유를 설명

○ 가치 사슬 추정

- 측정 지표에 섹터 평균 데이터 또는 기타 프록시와 같은 간접적인 소스를 사용하여 추정한 가치사슬 데이터가 포함된 경우, 측정 지표 식별, 작성 근거, 정확도 결과 수준 또는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계획된 조치 설명

○ 추정 및 결과의 불확실성의 근원

- 추정의 불확실성 또는 결과의 불확실성이 유의미한 경우, 다음을 수행:
 - 측정 불확실성이 높은 정량적 지표와 금액 식별

11) EU Directive 2013/34/EU 제19a(3) 및 29a(3)조

- 식별된 각 정략적 지표 및 금액에 대해, ① 측정 불확실성의 원천에 대한 정보(예: 금액이 미래 사건의 결과, 측정 기법, 또는 기업의 업스트림 및 다운스트림 가치 사슬에서 얻은 데이터의 가용성과 품질에 의존하는 경우) 및 ② 이를 측정하는 데 있어 기업이 내린 가정, 추정 및 판단을 설명
 - 미래예측 정보를 공개할 경우, 해당 정보가 불확실하다고 명시할 수 있음
- 지속가능성 정보의 변경
- 이전 보고 기간과 비교하여 지표나 목표의 재정의 또는 대체와 같은 지속가능성 정보의 작성 및 제시에 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 다음을 수행
 - 변경 사항 설명
 - 교체된 지표가 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이유를 포함한 변경의 이유 설명
 - 실행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작성된 비교 수치를 제공하고 이전 기간에 대한 비교 정보를 조정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실을 공개
- 이전 기간에 대한 보고 오류
- 이전 기간에 대해 중대한 오류가 존재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공개:
 - 이전 기간에서의 중대한 오류의 특성
 - 수정된 사항(오류 수정이 불가능한 경우, 오류가 발생하게 된 상황과 오류가 수정된 방법 및 시기에 대한 설명)
- 현지 법률 또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지속가능성 보고 선언에 따른 공시
- 기업이 ESRS에 규정된 정보 외에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지속가능성 보고 선언 또는 현지 법률에 기반한 정보를 지속가능성 보고서에 포함하는 경우 그 사실을 공개
 - 다른 보고 선언을 부분적으로 적용하는 경우, 적용되는 표준 문단에 대한 정확한 참조를 제공
- 참조를 통한 포함(Incorporation by reference)
- 기업이 참조를 통해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참조를 통해 포함된 ESRS 공시 요구사항(또는 공시 요구사항에 의해 규정된 특정 데이터 포인트) 목록을 공개
- 경과 조항의 적용
- 대차대조표 기준으로 회계연도 평균 750명 이하의 직원을 보유한 기업이 ESRS E4,

S1~4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생략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도, 해당 기업의 중요성 평가 결과 ESRS E4, S1~4에서 다루는 각 지속가능성 주제의 중요성 여부를 공시해야 하며, 이러한 주제 중 하나 이상이 중요하다고 평가된 경우 각 중요 주제에 대해 다음을 수행

- 중요하다고 판단된 주제의 목록을 공개하고, 해당 사항과 관련된 기업의 사업모형 및 전략이 해당 영향을 고려하는 방법을 간략히 설명
- 논의중인 문제과 관련된 기한이 있는(time-bound) 목표를 간략히 설명하고, 해당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진행 상황과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와 관련된 목표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는지를 공시
- 논의중인 문제와 관련된 정책을 간략하게 설명
- 논의중인 문제와 관련된 실제 또는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을 식별, 모니터링, 예방, 완화, 교정 또는 해결하기 위해 취한 조치와 그러한 조치의 결과를 간략히 설명
- 논의중인 문제와 관련된 지표를 공개

2) 거버넌스

□ 행정, 관리, 및 감독 기구의 역할(GOV-1)

- 기업의 행정, 관리 및 감독 기구 구성원의 구성과 다양성에 관한 다음의 정보를 공개
 - 임원과 비상임임원간 구성원의 분류
 - 직원 및 기타 근로자의 대표
 - 사업의 부문, 제품 및 지리적 위치와 관련된 경험
 - 기업이 고려하는 성별 및 다른 다양성 측면에 대한 비율(이사회의 성별 다양성은 여성 대 남성 이사회 구성원의 평균 비율로 계산)
 - 독립 이사회 구성원의 비율
- 기업의 행정, 관리 및 감독 기구의 역할과 책임에 관한 다음의 정보를 공개
 - 행정, 관리 및 감독 기구(예: 이사회 내 위원회 등) 또는 영향, 위험 및 기회를 감독할 책임이 있는 감독 기구 내 개인의 신원
 - 영향, 위험 및 기회에 대한 각 기구의 책임이 기업의 위임 사항, 이사회 권한 및 기타

관련 정책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영향, 위험 및 기회를 평가하고 관리하는 데 사용되는 거버넌스 프로세스, 통제 및 절차에 있어 경영진의 역할에 대한 설명
 - 해당 역할이 특정 경영진 직위 또는 위원회에 위임되었는지 여부와 해당 직위 또는 위원회에 대한 감독이 어떻게 수행되는지
 - 행정, 관리 및 감독 기구에 대한 보고 라인
 - 영향, 위험 및 기회 관리에 전용 통제 및 절차가 적용되는지 여부(적용되는 경우 다른 내부 기능과 어떻게 통합되는지)
- 행정, 관리, 감독 기구와 고위 경영진이 중대한 영향, 위험 및 기회와 관련된 목표 설정을 감독하는 방법과 목표 달성 과정을 모니터링하는 방법
- 행정, 관리 및 감독 기구가 다음을 포함하여 지속 가능성 문제를 감독하기 위한 적절한 기술 및 전문 지식의 가용성을 보장하는 방법
 - 전문가에 대한 접근이나 교육 등을 통해 직접 보유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지속가능성 관련 전문 지식
 - 기업의 중대한 영향, 위험 및 기회와의 관련성

□ 기업의 행정, 관리 및 감독 기구에서 다루는 지속가능성 문제 및 정보의 제공(GOV-2)

- 행정, 관리 및 감독 기관이 지속가능성 문제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얻었는지, 그리고 이러한 문제가 보고 기간 동안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공시
 - 행정, 관리 및 감독 기구가 중요한 영향, 위험 및 기회, 지속가능성 실사 실행, 이를 해결하기 위해 채택된 정책, 조치, 지표 및 목표의 결과와 효율성에 대한 정보를 누구로부터, 얼마나 자주 받았는지
 - 행정, 관리 및 감독 기구가 기업의 전략, 주요 거래에 대한 결정, 위험 관리 정책 감독에 있어 영향, 위험 및 기회를 어떻게 고려하였는지
 - 상충(trade-offs) 평가 및 불확실성에 대한 민감도 분석 포함
 - 보고 기간 동안 행정, 관리, 감독 기구 또는 관련 위원회가 다룬 중요한 영향, 위험 및 기회 목록

□ 보수 제도에 지속가능성 관련 성과 통합(GOV-3)

- 기업의 행정, 관리 및 감독 기구 구성원을 위한 지속가능성 문제와 관련된 보상 계획 및 정책에 관하여 다음의 정보를 공개
 - 보상 제도의 주요 특징
 - 특정 지속가능성 관련 목표 및 영향에 대해 성과를 평가하고 있는지 여부와 해당 평가 항목
 - 지속가능성 관련 성과 지표가 성과 벤치마크로 고려되거나 보상 정책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그 방법
 - 지속가능성 관련 목표 및 영향에 따른 변동 보상(variable remuneration) 비율
 - 보수 제도의 조건을 승인하고 개선하는 기업의 책임 수준

□ 지속가능성 실사 보고(GOV-4)

- 지속가능성 문제와 관련된 기업의 실사 과정에 대한 이해를 촉진하기 위해 지속가능성 보고서 내 지속가능성 실사 과정에 관한 정보의 맵핑(mapping)을 공개
 - 기업은 지속가능성 보고서에 지속가능성 실사 과정의 주요 측면 및 단계의 적용이 어떻게, 그리고 어디에 반영되는지 설명하는 맵핑을 제공하여 지속가능성 실사와 관련된 기업의 실제 실천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해야 함
 - 해당 공시 요구사항은 지속가능성 실사 조치와 관련된 특정 행동을 요구하지 않으며, 다른 법률 또는 규정에서 요구하는 행정, 관리 및 감독 기구의 역할을 확장하거나 수정하지 않음

□ 지속가능성 보고에 대한 위험 관리 및 내부 통제(GOV-5)

- 지속가능성 보고 프로세스와 관련하여 위험 관리 및 내부 통제 시스템의 주요 특징을 공개
 - 지속가능성 보고와 관련된 위험 관리, 내부 통제 프로세스 및 시스템의 범위, 주요 특징 및 구성요소

- 위험 우선순위 지정 방법을 포함한 후속 위험 평가 방식
- 확인된 주요 위험, 실제 및 잠재적 위험, 관련 통제를 포함한 완화 전략
- 지속가능성 보고 프로세스에 관한 위험 평가 및 내부 통제 결과를 관련 내부 기능 및 프로세스에 어떻게 통합하는지
- 행정, 관리 및 감독 기구에서의 정기적 보고

3) 전략

□ 전략, 사업모형 및 가치 사슬(SBM-1)

○ 지속가능성 문제에 관련되거나 영향을 미치는 기업의 전략 요소

-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다음의 사항 포함
 - 보고 기간에 대해 제공되는 제품 및/또는 서비스의 주요 그룹
 - 보고 기간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요 시장 및/또는 고객 그룹
 - 지역별 직원 수
 - 해당되는 경우, 특정 시장에서 금지된 제품 및 서비스
- 재무제표에 포함된 주요 ESRS 부문별 총수익 내역
 - 기업이 재무제표에서 IFRS 8 *영업부문*에 따라 부문별 보고(segment reporting)를 제시하는 경우, 이 수익 정보는 가능한 IFRS 8의 정보와 함께 조정
- 주요 ESRS 섹터 이외에 중요한 활동을 개발하거나 중대한 영향과 연관될 수 있는 추가적인 ESRS 섹터 목록(추가 ESRS 섹터의 식별은 중대성 평가 수행 방식과 일관되어야 함)
- 해당하는 경우, 관련 수익을 포함하여 기업이 다음의 분야에 해당함을 기술
 - 화석 연료(석탄, 석유 및 가스) 부문, 화석 연료의 탐사, 채굴, 추출, 생산, 가공, 저장, 정제 또는 유통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활동
 - 화학물질 생산¹²⁾에 해당하는 활동

12) Division 20.2 of Annex I to Regulation (EC) No 1893/2006

- 대인 지뢰, 집속탄, 화학 무기, 생물학적 무기 등 논란이 많은 무기
- 담배 재배 및 생산
- 제품 및 서비스 그룹, 고객 카테고리, 지리적 영역 및 이해관계자와의 관계 측면에서의 지속가능성 관련 목표
- 지속가능성 목표와 관련된 현재의 중요한 제품 및 서비스, 중요한 시장 및 고객 그룹에 대한 평가
- 지속가능성 문제에 관련되거나 영향을 미치는 기업의 전략 요소(향후 주요 과제, 실행될 핵심 솔루션 또는 프로젝트 포함)

○ 사업모형 및 가치 사슬에 대한 정보

- 투입 요소 및 이를 수집 · 개발 · 확보하기 위한 방법
- 고객, 투자자 및 기타 이해관계자를 위한 현재와 예상 이익 측면에서의 산출 및 결과
- 주요 사업 행위자(주요 공급업체, 고객 유통 채널, 최종 사용자 등)에 대한 설명, 업스트림 및 다운스트림 가치 사슬의 주요 특징과 해당 가치 사슬에서의 기업의 지위

□ 이해관계자의 이익 및 견해(SBM-2)

- 기업의 전략과 사업모형이 이해관계자의 이익과 견해를 어떻게 고려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 공시
 - 다음 사항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 주요 이해관계자
 - 이해관계자의 참여 여부 및 범위
 - 조직 방식
 - 이해관계자의 목적
 - 기업이 이해관계자의 참여 결과를 어떻게 고려하는지
 - 지속가능성 실사 과정 또는 중대성 평가 과정에서 분석된 범위 내에서 기업의 전략 및 사업모형과 관련한 이해관계자의 이익과 관점에 대한 이해 정도
 - 다음을 포함한 기업의 전략 또는 사업모형의 수정

- 이해관계자의 이익과 관점을 다루기 위해 기업의 전략 또는 사업모형이 어떻게 수정되었거나 어떻게 수정될 것으로 예상하는지
- 계획 중인 추가 단계와 일정
- 이러한 단계가 이해관계자와의 관계 및 관점에 따라 수정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기업의 지속가능성 관련 영향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의 견해와 관심 사항에 대한 정보가 기업의 행정, 관리 및 감독 기구에 제공되는지 여부 및 그 방법

□ 주요 영향, 위험 및 기회와 기업의 전략 및 사업모형과의 상호작용(SBM-3)

- 기업의 중대성 평가에 따른 중요한 영향, 위험 및 기회가 기업의 전략 및 사업모형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이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음의 정보를 공개
 - 중대성 평가에 따른 중요한 영향, 위험 및 기회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이러한 중요한 영향, 위험 및 기회가 기업의 사업모형, 운영, 업스트림 및 다운스트림 가치 사슬의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지
 - 사업모형, 가치 사슬, 전략 및 의사 결정에 중대한 영향, 위험 및 기회가 미치는 현재 및 예상 영향과 기업이 이러한 영향에 어떻게 대응했는지(또는 대응할 계획인지)
 - 중요한 영향이나 위험을 해결하거나 특정 중요한 기회를 추구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변경한(또는 변경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략 또는 사업모형
 - 중대한 영향과 관련하여 다음을 설명
 - 중대한 부정적 또는 긍정적 영향이 사람이나 환경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또는 어떻게 잠재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지)
 - 해당 영향이 기업의 전략 및 사업모형과 어떻게 연관되는지
 -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영향의 시간 규모
 - 기업 활동 또는 비즈니스 관계를 통해 중대한 영향을 받는지 여부 및 해당 활동 또는 비즈니스 관계의 성격
 - 중요한 위험 및 기회의 현재 재무적 영향(재무 상태, 재무 성과 및 현금 흐름에 미치는 영향)과 다음 회계연도 내에 관련 재무제표에 보고된 자산 및 부채의 장부금액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는 중요한 위험 및 기회

- 기업의 중대한 위험 및 기회의 단기 · 중기 · 장기적 예상 재무 영향
 - 투자 및 처분 계획(예: 자본 지출, 주요 인수 및 매각, 합작 투자, 사업 전환, 혁신, 새로운 사업 영역 및 자산 폐기)
 - 전략 이행을 위해 계획된 자금의 출처
- 기업의 전략 및 사업 모형의 회복탄력성
 - 적용된 시간 규모를 포함하여 회복탄력성에 대한 정성적 · 정량적 분석 및 수행 방법
- 이전 보고 기간 대비 중대한 영향, 위험 및 기회의 변화

4) 영향, 위험 및 기회관리

4-1) 중대성 평가 절차

- 주요 영향, 위험 및 기회의 식별 · 평가 프로세스에 대한 설명(IRO-1)
 - 영향, 위험 및 기회를 식별하고 중대성을 평가하는 과정에 대한 다음의 정보를 공개
 - 서술된 과정에 적용된 방법론 및 가정에 대한 설명
 - 기업의 지속가능성 실사 프로세스를 통해 사람과 환경에 대한 기업의 잠재적 · 실제적 영향을 식별하고, 평가하며,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전반적인 과정 설명
 - 부정적인 영향으로 인한 위험이 강화되는 특정 영역에 포커스
 - 기업 활동 또는 비즈니스 관계로 인해 연관된 영향 검토
 - 기업에 의해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 및 외부 전문가와의 협의 포함
 - 상대적인 심각도와 발생가능성에 기반한 부정적인 영향과 (해당되는 경우) 상대적 규모, 범위 및 발생가능성에 기반한 긍정적인 영향의 우선순위 결정
 - 재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의 식별 · 평가 · 우선순위 결정에 적용되는 전반적인 과정
 - 기업의 영향 및 의존성과 그러한 영향 및 의존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및 기회의 연관성을 어떻게 고려했는지

- 식별된 위험 및 기회의 발생가능성, 규모 및 영향의 성격을 평가하는 방법
- 다른 유형의 위험과 비교하여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방법(위험 평가 툴 사용 포함)
- 기업이 중요한 영향, 위험 및 기회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어떻게 결정하는지
 - 기준치 사용 또는 ESRS1 *중요한 문제 및 정보의 중대성*에 따른 기준 설정 방법
 - 사용된 입력 변수(예: 데이터 출처, 포함되는 운영 범위 및 세부 가정)
- 의사결정 과정 및 관련 내부 통제 절차에 대한 설명
- 영향과 위험의 식별·평가·관리 프로세스가 기업의 전체 위험 관리 프로세스에 어떻게 통합되고 전체 위험요소 프로파일 및 위험 관리 프로세스 평가에 어떻게 사용되는지
- 기회의 식별·평가·관리 프로세스가 기업의 전체 관리 프로세스에 어떻게 통합되는지
- 사용된 입력 변수(예: 데이터 출처, 포함되는 운영 범위 및 세부 가정)
- 이전 보고 기간과 비교하여 프로세스 변경 여부 및 방법, 프로세스가 마지막으로 수정된 시기 및 향후 중대성 평가 개정 날짜

□ 기업의 지속가능성 보고서에서 다루는 ESRS의 공시 요구사항(IRO-2)

- 지속가능성 보고서가 준수하는 공시 요구 사항을 보고
 - 중대성 평가 결과에 따라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준수한 공시 요구사항 목록을 포함
 - 관련 공시 내용이 지속가능성 보고서의 어디에(페이지 또는 단락) 위치하는지 표시(콘텐츠 인덱스로 제시 가능)
 - 다른 EU 법률에서 파생된 모든 데이터 포인트의 표를 포함 하며, 해당 데이터가 지속가능성 보고서 내 어디에 위치하는지 표시
 - 기업이 중요하지 않다고 평가한 데이터 포인트의 경우, 해당 표에 "중요하지 않음"을 명시
- 기업이 기후변화가 중요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리고 ESRS E1의 모든 공시 요건을 생략하는 경우, 기후변화와 관련된 중대성 평가의 결론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제시해야 하며, 미래에 기후변화가 중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한 전망 분석이 포함되어야 함

- 기후변화 이외의 주제가 중요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리고 해당 주제 ESRs의 모든 공시 요구 사항을 생략하는 경우 해당 주제에 대한 중대성 평가 결론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제공할 수 있음
- 중요하다고 평가된 영향, 위험 및 기회와 관련하여 공개할 중요한 정보를 어떻게 결정했는지 설명
 - 기준값(임계값)의 사용, 중대한 문제 및 정보의 중대성 기준 구현 방법 포함

4-2) 정책 및 조치

- 주요 지속가능성 문제 관리를 위해 채택한 정책(MDR-P)
 - 중요한 지속가능성 문제를 관리하기 위해 채택한 정책에 대해 다음 정보를 포함하여 공시
 - 정책의 주요 내용(일반적인 목표, 정책과 관련된 중요한 영향, 위험 또는 기회를 포함)
 - 정책의 범위(활동, 가치 사슬, 지역 및 관련된 경우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 그룹 측면에서의 정책 범위)
 - 정책의 이행을 담당하는 기업 조직의 최상위 레벨
 - (관련된 경우) 기업이 정책 이행을 통해 준수하기로 약속한 제3자 표준 또는 이니셔티브
 - (관련된 경우) 정책 마련 시 고려된 주요 이해관계자의 이익
 - (관련된 경우) 잠재적으로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와 정책 이행을 지원해야 하는 이해관계자가 이용 가능한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방법
- 주요 지속가능성 문제에 대한 조치 및 자원(MDR-A)
 - 특정 정책 없이 조치가 이행되거나, 기업의 목표 달성을 위해 정책이 요구하는 조치 또는 포괄적인 실행 계획을 이행하는 경우, 다음의 정보를 공개
 - 보고 연도에 취해졌고 향후 계획된 주요 조치 목록, 예상 결과, (관련된 경우) 해당 이행이 정책 목적 및 목표 달성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 주요 조치의 범위(즉, 기업 활동 범위, 가치 사슬 지역 및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 그룹)
 - 기업이 각 주요 조치를 완료하기 위한 기간

- (해당되는 경우) 실제 중대한 영향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제공하거나 협력하거나 또는 지원한 주요 조치 및 해당 결과
- (해당되는 경우) 이전 기간에 공시된 조치 또는 실행 계획의 진행 상황에 관한 정량적·정성적 정보
- 실행 계획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운영지출(Opex) 또는 자본지출(Capex)
 - 실행 계획에 할당된 현재 및 미래의 금융 및 기타 자원의 유형 설명
 - (해당되는 경우) 녹색채권, 사회채권, 녹색 대출과 같은 지속가능 금융수단의 관련 조건, 환경 또는 사회적 목표, 조치 및 실행 계획의 이행 능력이 특정 선결 조건에 의존하는지 여부(예: 금융 지원이나 공공 정책 및 시장 동향에 대한 특정 전제 조건에 따라 조치나 실행 계획을 이행할 수 있는지 여부)
 - 현재 재정 자원의 금액 및 재무제표에 제시된 가장 관련성이 높은 금액과 어떻게 관련되는지 설명
 - 미래의 재정 자원의 금액

5) 지표 및 목표

□ 주요 지속가능성 문제에 대한 지표(MDR-M)

- 중요한 영향, 위험 또는 기회와 관련하여 성과 및 효과를 평가하는 데 사용하는 모든 측정 기준을 공시
- 지표에는 주제별 ESRS에서 정의된 지표뿐만 아니라 다른 출처를 통해 가져왔거나 기업 자체에서 개발했거나 관계없이 기업별 기준에 대해 식별된 지표를 포함
- 각 지표에 대해 다음을 수행
 - 측정 기준에 대한 방법론과 중요한 가정(사용된 방법론의 한계 포함)
 - 지표의 측정이 보증 제공자(assurance provider) 이외의 외부 기관에 의해 검증되었는지 여부(해당되는 경우, 어느 기관에서 검증되었는지)
 - 의미 있고 명확하며 정확한 이름과 설명을 사용하여 지표 분류
 - 측정단위로 통화(currency)가 지정된 경우 재무제표에 제시된 통화를 사용

□ 목표에 대한 정책 및 조치의 효과 추적(MDT-T)

- 중요한 지속 가능성 문제와 관련하여 수립한 목표에 대한 정보는 다음 사항에 대한 이해를 목적으로 함
 - 기업이 중대한 영향, 위험 및 기회를 다루기 위한 조치의 효과를 추적하는지 여부 및 그 방법(적용된 측정 기준 포함)
 - 중요한 영향, 위험 및 기회와 관련하여 사람, 환경 또는 기업에 대한 예상 결과 측면에서 정의된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업이 설정한 측정 가능하며 기한이 있는 결과 지향 목표
 - 채택된 목표를 향한 시간에 따른 전반적인 진행 상황
- 다음 사항이 포함된 측정 가능하며 결과 지향적인 목표(measurable outcome-oriented target)에 대한 설명
 - 목표(target)과 정책 목적(policy objectives)의 관계에 대한 설명
 - 달성할 목표 수준 정의
 - (해당되는 경우) 목표가 절대적인지 상대적인지 여부 및 측정 단위 포함
 - 기업의 활동 또는 가치사슬과 지리적 경계를 포함한 목표의 범위
 - 진행 과정을 측정하는 기준값 및 기준 연도
 - 목표 적용 기간 및 (해당되는 경우) 마일스톤 또는 중간 목표
 - 목표 정의에 사용된 방법론 및 중요한 가정
 - 선택된 시나리오, 데이터 출처, 국가, EU 또는 국제 정책 목표와의 부합성, 지속가능 발전의 보다 더 넓은 범위, 기업에 의한 영향이 발생하는 지역의 상황이 목표 설정시 어떻게 고려되는지
 - 환경 문제와 관련된 기업의 목표가 확실한 과학적 증거에 기반하고 있는지 여부
 - 각 중요한 지속가능성 문제에 대한 목표 설정에의 이해관계자의 참여 여부 및 그 방법
 - 목표 및 해당 지표 또는 기본 측정 방법론의 변경 사항, 중요한 가정, 제한 사항, 정의된 시간 규모내에서 데이터 수집을 위한 출처 및 프로세스의 변경 사항(변경 사항에 대한 합리적 근거와 비교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 포함)

- 공시된 목표에 대한 성과 또는 전반적인 진행 과정
 - 어떻게 목표가 감시되고 검토되는지, 진행 과정이 초기 계획과 일치하는지, 동향 분석 또는 기업의 목표달성을 향한 성과에 있어 중요한 변화에 대한 정보
- 측정 가능한 결과 지향 목표가 없는 경우, 중요한 영향, 위험 및 기회를 다루기 위한 조치의 효과를 추적하고 정책 목표 달성의 진행 상황을 측정하는지 여부와 그 방법을 설명
 - 해당 목표의 채택 여부와 채택 기간 또는 기업이 해당 목표를 채택할 계획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이유
 - 중요한 지속 가능성 관련 영향, 위험 및 기회와 관련된 정책 및 조치의 효과 추적 여부와 이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설명
 - 이를 수행하는 모든 프로세스
 -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의 정의된 수준과 진행 과정을 평가하는 데 사용하는 질적 또는 양적 지표(진행 과정이 측정되는 기본 기간 포함)

2.3. ESRS2 환경

1) E1 - 기후변화(Climate Change)

□ 목적

- 다음 사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공시 요구 사항을 명시
 - 긍정적 및 부정적 측면에서 기업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실제적 및 잠재적 주요 영향
 - 파리 협정(또는 기후변화와 관련한 최신 국제 협정)에 부합하며 지구 온난화를 1.5°C로 제한하도록 하는 과거, 현재, 미래의 완화 노력
 - 지속 가능한 경제로의 전환 및 지구온난화 1.5°C 제한에 부합하는 기업의 전략 및 사업 모형을 도입하기 위한 기업의 계획과 역량
 - 실제 또는 잠재적인 부정적인 영향을 예방, 완화 또는 교정하고 위험 및 기회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이 취한 기타 조치와 그러한 조치의 결과
 - 기후변화에 대한 기업의 영향 및 의존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주요 위험 및 기회의 성격,

유형, 범위 및 관리 방법

- 기후변화에 대한 기업의 영향과 의존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 및 기회의 단기 · 중기 · 장기적 재무 영향

□ 거버넌스

○ 보상 제도에 지속가능성 관련 성과 통합(ESRS2 GOV-3)

- GHG 배출량 감축 목표에 대한 성과를 포함한 기후 관련 고려 사항이 행정, 관리 및 감독 기구 구성원의 보상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 현재 기간에 대해 기후 관련 고려 사항과 관련된 보상 비율
- 해당하는 기후 관련 고려 사항이 무엇인지

□ 전략

○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전환계획(E1-1)

-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전환계획과 관련된 아래의 사항을 설명하고, 전환 계획이 준비되지 않은 경우, 전환 계획의 도입 여부 및 도입 시기 제시
 - 기업의 온실가스(GHG) 배출 감축 목표가 파리 협정의 지구 온난화 1.5°C 제한 목표에 어떻게 부합하는지
 - GHG 배출 감축 목표 및 기후변화 완화 조치에 대하여 확인된 탈탄소화 수단과 기업이 계획한 핵심 조치(제품 및 서비스 포트폴리오의 변경, 업스트림 및 다운스트림 가치 사슬에서 신기술 도입 등)에 대한 설명
 - 기후변화 완화 조치와 관련하여, 전환 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기업의 투자 및 자금 조달에 대한 설명 및 이를 정량화(택소노미 적합(taxonomy-aligned) 자본지출의 핵심 성과 지표 및 Commission Delegated Regulation (EU) 2021/2178에 따라 공시된 자본 지출 계획 참조)
 - 기업의 주요 자산 및 제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고정 GHG 배출에 대한 정성적 평가와 이러한 배출이 기업의 GHG 배출량 감축 목표 달성을 얼마나 위협롭게 하고 전환 리스크를 어떻게 발생시킬 수 있는지(해당되는 경우, GHG 집약적 또는 에너지

집약적 자산 및 제품을 관리하기 위한 계획에 대한 설명)

- 해당되는 경우,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과 관련된 위임 규정을 포함하여 EU 택소노미 규정 2020/852에 대응하는 경제 활동을 위한 기업의 목표와 계획(매출, 자본지출 및 자본지출계획)
 - 석탄, 석유 및 가스 관련 경제 활동과 관련하여 투자된 중요한 자본지출 금액
 - EU Paris-aligned Benchmarks¹³⁾에서 해당 기업의 제외 여부
 - 전환계획이 기업의 전체 사업 전략 및 재무 계획에 어떻게 포함되어 있으며, 어떻게 부합하는지
 - 행정, 관리 및 감독 기구의 전환계획 승인 여부
 - 전환계획의 이행 진척도
- 중대한 영향, 위험 및 기회와 기업의 전략 및 사업모형과의 상호작용(ESRS 2 SBM-3)
- 식별된 각 주요 기후 관련 위험이 물리적 위험 또는 전환 위험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 기후변화와 관련된 기업의 전략 및 사업모형의 회복탄력성에 대해 다음 사항을 설명
 - 회복탄력성 분석의 범위
 - 기후 시나리오 분석을 포함한 회복탄력성 분석 수행 방법
 - 시나리오 분석 결과를 포함한 회복탄력성 분석 결과

□ 영향, 위험 및 기회 관리

- 중대한 기후 관련 영향, 위험 및 기회의 식별 · 평가 과정(ESRS 2 IRO-1)
- 기후 관련 영향, 위험 및 기회를 식별하고 평가하는 과정에 대한 다음의 사항과 기후 관련 시나리오 분석 수행 방법을 설명
 - 기후변화에 대한 영향, 특히 기업의 GHG 배출이 미치는 영향
 - 기후 관련 물리적 위험, 특히 ① 고탄소 기후 시나리오에서 기후 관련 재해의 식별과 ② 중대한 물리적 위험을 초래하는 기후 관련 재해에 대한 기업의 자산 및 영업 활동의

13) 해당 공시 요구사항은 EBA Pillar 3 ITS- template 1 기후변화 전환 위험의 요구사항과 일관되도록 포함되었으며, Commission Delegated Regulation (EU) 2020/1818 (Climate Benchmark Regulation), Articles 12.1 (d) - (g) 및 12.2에 부합함

노출도 및 민감도 평가 포함

- 기후 관련 전환 위험, 특히 ① 적어도 지구 온난화를 1.5℃로 제한하기 위한 기후 시나리오하에서 기후 관련 전환 사건의 식별과 ② 중대한 전환 리스크를 초래하거나 사업 기회를 창출하는 기후 관련 전환 사건에 대한 기업의 자산 및 영업 활동의 노출도 평가 포함

○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관련 정책(E1-2)

- 중대한 영향, 위험 및 기회를 관리하기 위해 기업이 시행하는 정책에 대한 요약된 설명과 해당 정책이 ① 기후변화 완화, ② 기후변화 적응, ③ 에너지 효율성, ④ 재생 에너지 사용 및 ⑤ 기타 분야를 다루는지 여부와 그 방법을 명시

○ 기후변화 정책과 관련된 조치 및 자원(E1-3)

- 기후변화 정책 관련 조치 및 자원에 대한 설명은 ESRS 2 MDR-A *주요 지속가능성 문제와 관련된 조치 및 자원*에 명시된 원칙을 따르며, 추가적으로 아래의 사항에 대해 설명
 - 보고 연도에 수행되거나 미래에 계획된 핵심 조치 작성 시, 탈탄소화 수단(자연 기반 솔루션 포함)에 의한 기후변화 완화 조치
 -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조치의 결과를 설명할 때, 달성되었거나 예상되는 GHG 배출 감축량
 - 조치 이행에 필요한 주요 자본지출 및 운영지출을 ① 재무제표의 관련 항목 또는 주석에 포함하거나 ② EU 택소노미 규정 2020/852 제8조에 따라 요구되는 핵심 성과 지표 및 ③ (해당되는 경우) EU 위원회 위임 규정 2021/2178에 따른 자본지출계획과 연관시켜야 함

□ 지표 및 목표

○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관련 목표(E1-4)

- ESRS 2 MDR-T *목표에 대한 정책 및 조치의 효과 추적*에 따른 정보를 포함함
- 주요 기후 관련 영향, 위험 및 기회를 관리하기 위한 GHG 배출량 감축 목표 설정 여부와 그 방법
- GHG 배출량 감축 목표를 설정한 경우, ESRS 2 MDR-T 및 아래의 요건을 적용

- GHG 배출량 감축 목표는 절댓값(CO₂e 또는 기준 연도 배출량에 대한 백분율) 또는 집약도 값(intensity value)으로 공시
 - Scope 1, 2, 3에 대한 GHG 배출량 감축 목표를 각각 또는 통합하여 공개하고, 해당 목표와 GHG 인벤토리 경계와의 일관성이 어떻게 보장되는지 설명
 - ① 통합 GHG 배출량 감축 목표의 경우, 해당 목표가 포함하는 GHG 배출량 카테고리 (Scope 1, 2, 3), 각 GHG 배출량 카테고리 관련 비율 및 이에 포함된 GHG 종류 명시
 - ② GHG 배출량 감축 목표는 총 목표(gross targets)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에는 온실가스 제거, 탄소 배출권 또는 회피된 배출량은 포함될 수 없음
 - 현재의 기준 연도와 기준치를 공개하고, 2030년 이후부터는 5년마다 GHG 배출 감축 목표의 기준 연도를 갱신
 - GHG 배출 감축 목표는 적어도 2030년에 대한 목표치를 포함해야 하며(가능하다면 2050년에 대한 목표치를 포함), 2030년 이후부터는 5년마다 목표치를 설정
 - ① GHG 배출량 감축 목표가 과학에 기반을 두고 있는지, 지구 온난화 1.5°C 제한 목표와 양립할 수 있는지를 기술하고, ② 목표를 결정하는 데 활용된 지침 또는 프레임 워크와 방법론, 그리고 이러한 목표가 부문별 탈탄소화 경로를 사용하여 도출되었는지, 기본이 되는 기후 및 정책 시나리오가 무엇인지, 목표가 외부에서 보증되었는지 여부를 명시하며, ③ GHG 배출량 감축 목표를 설정하기 위한 중요한 가정으로 미래의 발전 (예: 판매량 변화, 고객 선호도 및 수요 변화, 규제 요소 및 신기술)이 기업의 GHG 배출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어떻게 고려했는지 간략히 설명
 - GHG 배출량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예상되는 탈탄소화 수단 및 이들의 정량적 기여 설명(예: 에너지 또는 재료의 효율성, 소비 감소, 연료 전환, 재생 에너지 사용, 제품 및 프로세스의 단계적 폐지 또는 대체)
- 에너지 소비 및 조성(E1-5)
- 기업의 총 에너지 소비량, 에너지 효율 개선, 석탄, 석유 및 가스 관련 기업 활동, 전반적 에너지 조성에서 재생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 이해를 목적으로 함
 - 다음의 영업 활동과 관련된 기업의 총 에너지 소비량(단위: MWh) 공개
 - 화석 에너지원의 총 에너지 소비량

- 원자력 발전소의 총 에너지 소비량
- 재생 에너지원의 총 에너지 소비는 다음과 같이 구분
 - ① 바이오매스(생물학적 산업 및 도시 폐기물 포함), 바이오 연료, 바이오가스, 재생 에너지 기반 수소 등을 포함한 재생 가능한 자원에 대한 연료 소비
 - ② 구입 또는 획득한 전기, 열, 증기 및 냉각에 의한 소비
 - ③ 자가 발전 비연료 재생 에너지에 의한 소비
- 기후 영향이 높은 섹터¹⁴⁾에 대한 화석 에너지원의 총 에너지 소비량을 다음과 같이 세분화
 - 석탄 및 석탄 제품에 의한 연료 소비
 - 원유 및 석유 제품에 의한 연료 소비
 - 천연 가스에 의한 연료 소비
 - 다른 화석 에너지원으로부터의 연료 소비
 - 구매하거나 취득한 전기, 열, 증기 또는 냉각 화석 에너지원으로부터의 소비
- 기후 영향이 높은 섹터에서의 기업 활동과 관련된 에너지 집약도(순 매출액당 총 에너지 소비) 정보 제공
 - 기후 영향이 높은 부문의 활동으로 인한 총 에너지 소비 및 순 매출액에 대해서만 도출
 - 에너지 집약도 도출에 적용되는 기후 영향이 높은 섹터 명시
- Scope 1, 2, 3 및 총 온실가스 배출량(E1-6)
 - GHG 배출량¹⁵⁾ 공시
 - Scope 1 GHG 배출량: 기업이 기후변화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과 배출권 거래 제도에 의해 조절되는 총 GHG 배출량의 비중을 이해하기 위해, ① Scope 1 GHG 배출량과 ② 배출권 거래 제도에 의해 조절된 Scope 1 GHG 배출량의 비율을 공개
 - Scope 2 GHG 배출량: 기업이 외부로부터 구매하거나 획득한 에너지 소비가 기후변화에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을 이해하기 위해, ① 위치 기반(location-based) Scope

14) 기후 영향이 높은 섹터 목록은 유럽 표준산업분류(NACE) 섹션 A-H, L에 명시됨

15) 메트릭 톤(Metric ton) 단위의 이산화탄소환산량(CO₂e)으로 공시

2 GHG 배출량과 ② 시장 기반(market-based) Scope 2 GHG 배출량 공개

- Scope 3 GHG 배출량: 기업의 가치 사슬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이해하기 위해 기업의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주요 Scope 3 카테고리에 대한 GHG 배출량 공개
 - 총 GHG 배출량: Scope 1, 2, 3 GHG 배출량의 합계를 의미하며, 총 GHG 배출량은 위치 기반 방법 및 시장 기반 방법을 통해 측정된 Scope 2 GHG 배출량에서 도출된 총 GHG 배출량으로 구분하여 공개
 - GHG 집약도: 순 매출액당 총 GHG 배출량 공개
 - Scope 1, 2 GHG 배출량의 경우, ① 그룹 재무제표에 통합된 연결 회계 그룹 기업(재무적 지배력이 있는 모회사 및 자회사)과 ② 관계회사(associates), 합작회사(joint ventures), 비연결 자회사, 공동 통제되는 운영 및 자산(그룹 재무제표에 완전히 통합되지는 않았으나, 운영 통제권을 가짐)으로 구분하여 공개
 - 보고 기업 및 가치사슬: 관계기업, 합작회사, 비연결 자회사(투자기업), 공동의 계약 약정에서의 GHG 배출량 회계처리
 - 기업이 관계회사, (지분법에 따라 회계처리되거나 기업의 그룹 재무제표에 비례적으로 연결된) 합작회사 및 비연결 자회사(투자기업)에 대한 운영 통제력(개별 기업의 영업 활동 및 관계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경우, GHG 배출량 보고에 이들 개별 기업들의 Scope 1, 2 GHG 배출량을 포함해야 하며(비금융법인인 경우 Scope 1, 2, 금융법인인 경우 금융투자 범주의 Scope 3 GHG 배출량 포함), GHG 배출량 보고에 포함된 개별 기업들의 GHG 배출량 비율을 제한하기 위해 이들 기업이 보유한 지분을 적용하지 않음
 - 기업이 기업으로 구성되지 않은 공동의 계약 약정 즉, 공동으로 관리되는 운영 및 자산에 대한 운영 통제권을 가진 경우(예를 들어 지역 당국으로부터 환경 자격 또는 허가 보유), GHG 배출량 보고에 그들의 Scope 1, 2 GHG 배출량을 포함
 - 기업이 ① 개별기업(관계회사, 합작회사, 비연결 자회사) 및 공동의 계약 약정에 대해 운영 통제권이 없는 경우, Scope 1, 2 GHG 배출량 보고에 이들 기업 및 약정의 Scope 1, 2 GHG 배출량을 포함하지 않으며, ② 이러한 기업 및 계약 약정이 기업의 가치 사슬의 일부일 경우, 그들의 Scope 1, 2 및 3 GHG 배출량은 기업의 Scope 3 GHG 배출량으로 회계처리
- 탄소배출권(또는 탄소크레딧)을 통해 조달되는 GHG 제거 및 감축 프로젝트(E1-7)

- 기업의 영업 활동, 업스트림 및 다운스트림 가치사슬에서의 GHG 제거 및 저장량 공개
 - 총 GHG 제거 및 저장량은 기업의 영업 활동 및 가치 사슬에 따라 구분하여 별도로 공개하며 GHG 제거 활동에 따라 세분화
 - 계산시 적용되는 가정, 방법론 및 프레임워크 설명
 - 가치 사슬 외부의 탄소배출권 구매(또는 이를 통해 조달된 자금으로 지원한 기후변화 완화 프로젝트)에 의한 GHG 배출 감축 또는 제거량 공개
 - 보고 기간에 공인된 국내 또는 국제 품질 표준에 따라 인정되고 상쇄된 기업 가치 사슬의 외부의 탄소배출권의 총량
 - 기존 계약상 협정에 따라 향후 상쇄될 예정인 기업 가치 사슬 외부의 탄소배출권의 총량
 - 넷제로 목표를 공시하는 경우(E1-4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 외), 적용된 범위, 방법론 및 프레임워크와 잔여 GHG 배출(약 90-95% GHG 배출 감축 이후의 배출량)이 영업 활동 및 가치 사슬에서의 GHG 제거에 의해 어떻게 중립에 도달하는지 설명
- 내부 탄소가격(E1-8)
- 내부 탄소가격 제도의 적용 여부 및 적용되는 경우, 내부 탄소가격 제도가 기후 관련 정책 및 목표의 실행을 어떻게 지원하고 장려하는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개
 - 내부 탄소가격 제도의 유형(예: 자본지출 또는 연구 개발 투자에 대한 의사 결정에 적용되는 잠재 비용(shadow prices), 내부 탄소 수수료 또는 내부 탄소 기금)
 - 탄소 가격 제도의 특정 적용 범위(활동, 지역, 기업 등)
 - 가격 결정을 위한 제도 및 주요 가정의 유형에 따른 탄소 가격(적용된 탄소 가격의 출처 및 선택 이유 포함): 과학적 지침에 기반한 탄소 가격 책정 방법, 탄소 가격 계산 방법론
 - 탄소가격 제도에 포함되는 당해 연도 Scope 1, 2, 3 GHG 배출량 및 총 GHG 배출량에 대해 각 Scope 1, 2, 3 배출량이 차지하는 비중
- 주요 물리적 위험, 전환 위험 및 잠재적 기후 관련 기회에 의한 재정적 영향(E1-9)
- 주요 물리적 위험으로 인한 잠재적인 재정적 영향
 - 단기 · 중기 · 장기적 시간 관점에서 중요한 물리적 위험에 노출된 자산 금액의 비중을

- 급성 및 만성 물리적 위험으로 구분¹⁶⁾하여 공개
- 기후변화 적응 조치가 다루는 주요 물리적 위험에 노출된 자산의 비중
 - 중요한 물리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주요 자산의 위치
 - 단기 · 중기 · 장기적 시간 관점에서 실질적인 물리적 리스크를 감수하고 기업 활동을 수행한 순 매출 금액 및 비중
- 주요 전환 리스크로 인한 잠재적인 재정적 영향
- 단기 · 중기 · 장기적 시간 관점에서 주요 전환 리스크에 노출된 자산 금액 및 비중(백분율)
 - 기후변화 완화 조치가 다루는 주요 전환 리스크에 노출된 자산의 비중
 - 에너지 효율 등급¹⁷⁾별 부동산 자산의 장부가액 내역
 - 단기 · 중기 · 장기에 걸쳐 재무제표에 인식되어야 할 부채
 - (해당하는 경우) 석탄, 석유 및 가스 관련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의 고객의 순매출을 포함하여 단기 · 중기 · 장기적 시간 관점에서 중대한 전환 위험이 있는 영업 활동에 의한 순매출 금액 및 비중
- 주요 기후 관련 기회 창출 가능성
-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조치로 인해 예상되는 비용 절감
 - 기업이 접근가능한 저탄소 제품 및 서비스, 기후변화 적응에 의한 잠재적 시장 규모, 예상되는 순매출의 변화
- 기후관련 위험에 의한 재무적 영향은 ESRS2 SBM-3에 따라 재무제표에 반영된 당기 또는 과거 재무적 영향과는 다른 부가적인 정보에 해당하며, 재무제표의 관련 개별 항목 또는 주석에 ① 중요한 물리적 위험의 자산 및 순매출에 해당하는 금액과 ② 중요한 전환 위험의 자산, 부채 및 순매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정

2) E2 - 오염(Pollution)

16) 해당 공시 요구사항은 EBA Pillar 3 ITS - Template 5: Banking book - 기후변화 물리적 위험: 물리적 위험에 따른 노출에 포함된 요구사항과 일치함

17) 해당 공시 요구사항은 EBA Pillar 3 ITS - Template 2: Banking book - 기후변화 전환 리스크: 부동산 담보 대출 - 담보물의 에너지 효율성에 포함된 요구사항과 일치함

□ 영향, 위험 및 기회 관리

○ 중대한 오염 관련 영향, 위험, 기회의 식별·평가 프로세스에 대한 설명(ESRS2 IRO-1)

- 중대한 오염 관련 영향, 위험 및 기회를 식별하는 과정 및 다음 사항을 설명
 - 영업 활동과 가치 사슬에서의 오염 관련 실제 및 잠재적, 물리적 및 전환 위험을 식별하기 위한 사업장 위치, 기업 활동 선별에 사용되는 방법론, 가정 및 도구
 - 영향과 종속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과 기회 간의 상호 연관성
 - 특히 피해를 입은 지역사회와의 협의 수행 과정

○ 오염 관련 정책(E2-1)

- 기업이 보유한 오염 관련 정책(중대한 오염 관련 영향, 위험 및 기회의 식별·평가·관리·복원을 다루는 정책)에 대한 요약 설명
 - ESRS 2 MDR-P *중대한 지속 가능성 문제를 관리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에 따른 정보 포함*
- 오염 관련 정책이 기업의 영업 활동과 가치 사슬 전반에 걸쳐 다음의 사항을 다루는지 여부와 그 방법을 제시
 - 대기, 수질 및 토양 오염과 관련된 부정적인 영향의 완화(예방 및 통제 포함)
 - 특히 비필수적인 사회적 사용 및 소비자 제품에서의 우려 물질(substances of concern)의 최소화 및 대체, 고위험성우려물질(Substances of Very High Concern; SVHC)의 단계적 제거
 - 사고 및 긴급 상황의 방지, 해당 상황 발생 시, 환경 및 시민 사회에 미치는 영향 통제 및 제한

○ 오염 관련 조치 및 자원(E2-2)

- ESRS 2 MDR-A *중대한 지속 가능성 문제와 관련된 조치 및 자원에 정의된 원칙을 따름*
- 다음의 완화 체계의 어떤 부분에 조치 및 자원 할당이 가능한지 명시
 - 원천 오염 방지 - 중요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물질이나 화합물의 단계적 폐지를 포함한 오염 방지
 - 오염 최소화 - 물질 또는 화합물의 단계적 폐지, (EU 텍소노미 규정 및 위임법에 따른)

오염 방지 및 통제를 위한 최적가용기술(Best Available Technology; BAT) 요구 사항 또는 집행 요구 사항 (중대한 피해를 주지 않는 것(Do No Significant Harm; DNSH)에 대한 기준)을 충족시키는 오염 감축

- 정규 활동 및 사고에 의한 영향 통제 - 오염이 발생한 생태계의 복원, 재생 및 변화

□ 지표 및 목표

○ 오염 관련 목표(E2-3)

- ESRS2 MDR-T 목표에 대한 정책 및 조치의 효과 추적에 따라 오염 관련 정책을 지원하고 중대한 오염 관련 영향, 위험 및 기회를 다루기 위해 도입한 목표 설명
- 오염 관련 목표와 다음 사항과의 관련 여부 및 방법 명시
 - 대기오염 및 각각에 대한 특정 부하량
 - 수질오염 및 각각에 대한 특정 부하량
 - 토양오염 및 각각에 대한 특정 부하량
 - 우려 물질 및 고위험성우려물질의 예방 및 통제
- 오염 관련 목표 설정 시 생태학적 한계점(예: 생물권 온전성, 성층권 오존층 파괴, 대기 에어로졸 부하, 토양 고갈, 해양 산성화) 및 기업별 할당을 고려하며, 해당 사항이 고려된 경우 다음 사항에 대해 명시
 - 식별된 생태학적 한계점 및 그러한 한계를 식별하는 데 사용되는 방법론
 - 기업별 고유 기준 적용 여부 및 기준 결정 방법
 - 식별된 생태학적 한계점에 대한 책임이 기업에 할당되는 방식

○ 대기, 수질 및 토양 오염(E2-4)

- 기업의 영업 활동에서 발생하는(생산되었거나, 생산 과정에서 사용되었거나, 조달되었거나, 또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일부에 해당하는) 오염물질에 대해 다음 사항을 적용
 - ① 대기 오염 물질, ② 수질 오염 물질, ③ 무기 오염물질, ④ 오존층 파괴 물질, ⑤ 미세플라스틱의 배출량으로 구분
 - 오염물질의 ① 시간에 따른 변화, ② 측정 방법론 및 ③ 데이터 수집 과정 공개

○ 우려 물질 및 고위험성우려물질(E2-5)

- 기업이 생산, 사용, 유통, 상업화 및 수입·수출하는 우려 물질 및 고위험성우려물질의 총량을 공개하고, 고위험성우려물질과 관련된 정보는 별도로 제시

○ 오염 관련 영향, 위험 및 기회로 인한 잠재적 재무 영향(E2-6)

- 오염 관련 영향 및 의존성에 의한 중요한 위험으로 인해 예상되는 재정 영향과 해당 위험이 기업의 재무 상태, 재무 성과 및 현금 흐름에 단기·중기·장기적으로 미치는 중요한 영향
 - 우려 물질 및 고위험성우려물질 또는 이를 포함하는 제품 및 서비스로 발생한 순수익의 비율
 - 주요 사건 및 예치금(deposits)과 관련하여 보고 기간동안 발생한 운영지출 및 자본지출
 - 환경 보호 및 개선 비용(예: 오염된 부지 재활, 매립지 재경작, 기존 생산 또는 저장 부지의 환경 오염 제거 및 유사한 조치)
- 오염 예방 및 통제와 관련된 중요한 기회로 인해 예상되는 재정적 영향
- 고려된 오염 관련 영향 및 실현 가능성이 있는 기간에 대한 설명
- 영향 추정에 적용된 중요한 가정과 그러한 가정에 대한 불확실성의 근원 및 수준

3) E3 - 수자원 및 해양자원(Water and Marine Resources)

□ 영향, 위험 및 기회 관리

○ 수자원 및 해양자원 관련 중요한 영향, 위험 및 기회의 식별 및 평가 과정에 대한 설명(ESRS 2 IRO-1)

- 중대한 수자원 및 해양자원 관련 영향, 위험 및 기회를 식별하는 과정과 다음 사항을 설명
 - 영업 활동과 가치 사슬에서의 수자원 및 해양자원 관련 실제 및 잠재적, 물리적 및 전환 위험을 식별하기 위하여 자산 및 기업 활동 선별에 사용되는 방법론, 가정 및 도구

- 영향과 종속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과 기회 간의 상호 연관성
- 특히 피해를 입은 지역사회와의 협의 수행 과정

○ 수자원 및 해양자원 관련 정책(E3-1)

- ESRS2 MDR-P *중대한 지속 가능성 문제를 관리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에 따른 정보를 포함하여* 기업이 보유한 수자원 및 해양자원 관련 정책에 대한 요약 설명
- 수자원 및 해양자원 관련 정책이 다음의 사항을 다루는지 여부와 방법을 명시
 - 영업 활동에서 수자원 및 해양 자원의 사용 및 조달을 포함한 물 관리
 - 물 관련 문제 해결 및 해양 자원 보존을 고려한 제품 및 서비스 설계
 - 영업 활동과 가치 사슬에서 물 위험이 있는 지역의 물 소비를 감소시키겠다는 약속
- 기업 현장 중 하나 이상이 물 스트레스가 높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정책이 이를 다루고 있지 않은 경우, 이를 명시하고 정책을 도입하지 않은 이유를 제시해야 하며, 정책을 도입하기 위한 기간 공개 가능
- 지속가능한 해양 및 바다와 관련된 정책이나 관행 도입 여부를 명시

○ 수자원 및 해양자원 관련 조치 및 자원(E3-2)

- ESRS2 MDR-A *중대한 지속 가능성 문제와 관련된 조치 및 자원에* 정의된 원칙을 따름
- 다음의 완화 체계의 어떤 부분에 조치 및 자원 할당이 가능한지 명시
 - 수자원 및 해양자원의 사용 방지
 - 수자원 및 해양자원의 사용 감소
 - 해양 생태계와 유역의 복원, 재생 및 변화
- 물 스트레스가 있는 지역에 대한 조치와 자원 명시

□ 지표 및 목표

○ 수자원 및 해양자원 관련 목표(E3-3)

- ESRS2 MDR-T *목표에 대한 정책 및 조치의 효과 추적에 따라* 수자원 및 해양 자원 관련 정책과 조치가 중대한 수자원 및 해양 자원 관련 위험, 위협 및 기회를 다루기 위해 도입한 목표 설명

- 목표가 다음의 사항과 관련되는지 여부 및 방법 명시
 - 물 위험(수질 개선 포함)에 처한 지역과 관련된 중대한 영향, 위험 및 기회의 관리
 - 해양 자원 영향, 위험 및 기회의 책임있는 관리: 기업이 사용하는 해양 자원 관련 제품 (예: 자갈, 심해 광물, 해산물)의 특성 및 수량 포함
 - 물 소비 감소 목표와 물 위험(물 부족 포함) 지역과의 관련성 설명
- 목표 설정시 생태학적 한계점 및 기업별 할당이 고려되었는지를 명시하며, 해당 사항이 고려된 경우 다음 사항을 설명
 - 식별된 생태학적 한계점 및 그러한 한계를 식별하는 데 사용되는 방법론
 - 기업별 고유 기준 적용 여부 및 기준 결정 방법
 - 식별된 생태학적 한계점에 대한 책임이 기업에 할당되는 방법
- ① 제시한 목표가 의무적(법률에 근거)인지 자발적인지 여부와 ② 생태학적 한계점을 고려할 때 법적 요구 사항의 고려 여부 및 방법을 명시

○ 물 소비(E3-4)

- 기업의 영업 활동과 관련하여 아래의 정보 공개
 - 총 물 소비량[m³]
 - 중대한 물 위험이 있는 지역(물 스트레스가 심한 지역 포함)의 총 물 소비량
 - 필요한 상황 정보: 지역 유역의 수질 및 수량, 데이터 수집 방법(적용된 표준, 방법론 및 가정)
- ① 재활용 및 재사용된 총 물의 양 및 ② 저장된 총 물의 양 및 저장량 변화와 이에 관련된 상황 정보
- 물 집약도(즉, 영업 활동의 순수익당 총 물 소비량)

○ 수자원 및 해양자원 관련 영향, 위험 및 기회에 의한 잠재적 재무 영향(E3-5)

- 잠재적 재무 영향의 정량적 또는 정성적(실행 불가능한 경우) 정보 제시
 - 공시가 정보의 질적 특성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기회로부터 발생하는 재무적 영향의 정량화는 요구되지 않음

- 관련 영향 및 실현 가능성이 있는 기간에 대한 설명
- 추정에 적용된 중요한 가정과 그러한 가정에 대한 불확실성의 근원 및 수준

4) E4 -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Biodiversity and Ecosystem)

□ 전략

○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에 대한 전환 계획(E4-1)

- TNFD(Taskforce on Natur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의 우선순위 섹터 목록을 바탕으로, 농업 및 임업, 건설 및 엔지니어링, 석유 및 가스(미드스트림 및 다운스트림), 에너지 생산 및 유틸리티, 물 및 폐기물 서비스, 식품 및 음료, 종이 및 목재 제품, 건축 자재, 화학 제품, 석탄 채굴, 광업, 석유 및 가스(업스트림 및 서비스), 제약 및 생명공학, 섬유, 액세서리, 신발 및 보석류, 담배 및 운송 분야의 사업 분야에 의무적으로 공시 요구 사항 적용
- 전환 계획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설명하고, 전환 계획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관련 목표, 전환 계획 채택 여부 및 시기에 대한 설명 제공
 - ① 생물 보전(biosphere integrity) 및 토지 시스템 변화의 지구위험한계선(planetary boundaries) 존중, ② Post-2020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의 “No net loss by 2030, net gain from 2030 and fully recovery by 2050”에 명시된 목표, ③ 2030년 EU 생물다양성 전략(EU Nature Restoration Plan 및 Enabling Transformative Change)에 포함된 목표에 부합하는 기업의 전략 및 사업모형
 - 영업활동을 포함한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 ESRS2 IRO-1의 중대성 평가를 통해 식별된 중대한 영향에 대한 대응
 - 전환 계획의 달성가능성과 사업 개발 전략과의 상호 작용
 -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변화와 관련된 영향 동인, 완화 체계에 따른 가능한 완화 조치, 주요 경로 의존성, 고정 자산 및 자원(예: 식물, 원자재)에 대한 기여 강조
 - 전환 계획에 생물다양성 상쇄(biodiversity offsets)의 포함 여부를 설명하고, 해당되는 경우, 전체 전환 계획에서 어디에 적용되는지, 적용 범위 및 완화 체계 고려 여부 설명

- 행정, 관리 및 감독 기구의 전환 계획 승인 여부
- 전환 계획의 시행 및 개선 절차 관리 방법
- 지표 및 진행 과정 측정에 사용된 관련 툴(측정 방법에 통합)
-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영역 및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이 취하고 있는 조치와 관련한 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현재의 과제 및 제한 사항

○ 중대한 영향, 위험 및 기회와 기업의 전략 및 사업 모형과의 상호관계(ESRS2 SBM-3)

-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와 관련된 전략 및 사업모형의 회복탄력성과 관련하여 다음을 설명
 -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관련 물리적, 전환적, 체계적 위험 및 기회에 대한 현재 사업 모형 및 전략의 회복탄력성 평가
 - 회복탄력성 분석 범위: 영업 활동 및 업스트림 및 다운스트림 관련 가치 사슬, 중대한 전환, 물리적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관련 위험 포함
 - 주요 가정
 - 분석 기간
 - 회복탄력성 분석 결과
 - 적절한 경우, 토착종 및 지역에 관한 지식을 보유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 영향, 위험 및 기회 관리

○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관련 중요한 영향, 위험 및 기회의 식별 및 평가 과정에 대한 설명 (ESRS2 IRO-1)

- 중대한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관련 영향, 위험 및 기회를 식별하는 과정 설명
 - 기업이 위치한 지역 및 가치 사슬에서 생물 다양성 및 생태계에 대한 실제 및 잠재적 영향 식별 및 평가(적용된 평가 기준 포함)
 - 기업이 위치한 지역 및 가치 사슬에서 생물 다양성 및 생태계 서비스에 대한 의존성 식별 및 평가 여부(적용된 평가 기준 포함), 중단되었거나 중단될 가능성이 있는 생태계 서비스가 평가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와 관련된 전환 및 물리적 위험과 기회의 식별 및 평가(영향 및 의존성에 기반하여 적용된 평가 기준 포함)

- ① 자체 사업 모형과 ②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관련 위험 평가에 포함된 사회 전체에 대한 시스템적 위험 고려
- 공유 생물자원 및 생태계의 지속가능성 평가와 관련하여 지역사회와의 협의 수행 여부
 - ① 지역 사회에 부정적이거나 잠재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정 사업장, 원자재 생산 또는 조달 식별
 - ② 지역사회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러한 지역사회가 중대성 평가에 어떻게 참여했는지 공개
 - ③ 기업의 영업 활동이 지역사회 관련 중점 생태계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명시하고, 이러한 영향을 피할 수 없는 경우, 이를 최소화하고 중점 생태계 서비스의 가치와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완화 수단 시행 계획 제시
-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관련 시나리오 분석을 통한 사업 모형 검증 여부와 시나리오 관련 정보 공개
 - 평가 과정에 시나리오 분석 사용 여부, 분석 방법, 및 분석에 적용된 기간의 정의
 - 해당 시나리오를 고려한 이유
 - 고려된 시나리오가 전개 조건 및 새로운 트렌드에 따라 어떻게 개선되는지
 - 시나리오에 권위 있는 정부간 문서(생물다양성협약 등)의 예측 및 관련된 과학적 합의(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서비스의 경우, 생물다양성과과학기구(IPBES))에 따른 정보 포함 여부
- 생물다양성에 민감한 지역이나 근처에 위치한 기업 현장과, 해당 지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업 활동
 -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업 활동이란, 자연 서식지 및 종의 서식지를 악화시키고, 보호 지역으로 지정된 종의 교란을 초래하거나 다음의 평가 중 하나에 따라 필요한 완화 조치가 실행되지 않았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 해당
 - ① 야생 조류 보존에 관한 유럽 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09/147/EC
 - ② 자연 서식지 및 야생 동식물의 보존에 관한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이사회 지침 92/43/EEC
 - ③ 특정 공공 및 민간 프로젝트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 평가에 관한 유럽 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11/92/EU 제1조 (2)항, (g)에 정의된 환경 영향 평가(EIA)

- ④ 제3국에서의 활동의 경우, 국제 표준 또는 동등한 국가 규정(예: 국제금융공사(IFC) 성과표준 6: 생물다양성 보전 및 살아있는 천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 주요 현장 위치

- ① 식별된 영향 및 의존성과 해당 지역의 생태학적 상태에 따른 현장 내역 제시
 ② 위치와 담당 관할 당국을 결정할 수 있도록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기업 활동과 관련하여 영향을 받는 생물다양성 민감 지역 지정

- 토지 황폐화, 사막화 또는 토양 밀봉과 관련하여 중대한 부정적 영향이 확인되었는지, 멸종위기종에 기업 활동이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관련 정책(E4-2)

- ESRS 2 MDR-P 중대한 지속 가능성 문제를 관리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에 따른 정보를 포함하여 기업이 보유한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관련 정책에 대한 요약 설명 및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관련 정책이 다음의 사항을 다루는지 여부와 방법을 설명

- Post-2020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 2030년 EU 생물다양성 전략, 기타 관련 EU와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관련 국가 정책 및 법률과의 연결성 및 부합성

- ESRS E4 AR4에 따른 중대성 평가 항목

- ① IPBES의 정의에 따른 생물 다양성 손실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 동인(기후변화; 토지 이용 변화, 담수 이용 변화 및 해양 이용 변화; 직접적 착취; 침입외래종; 오염; 기타)에 대한 기여

- ② 종의 상태에 대한 영향(예: 종의 개체수 규모, 종의 전 지구적 멸종 위험)

- ③ 생태계의 범위 및 상태에 대한 영향(세계자연보전연맹(IUCN) Global Ecosystem Typology의 분류 및 UN SEEA EA¹⁸⁾ 프레임워크 내 정의, 예: 토지 황폐화, 사막화 및 토양 밀봉)

- ④ 생태계 서비스에 대한 영향 및 의존성(UN SEEA EA 프레임워크 내 정의)

- 중요한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관련 영향

- 중요한 의존성, 물리적, 전환적 위험 및 기회

18) 환경경제통합회계-생태계회계(SEEA EA; System of Environmental-Economic Accounting - Ecosystem Accounting)

- 가치사슬에 걸쳐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에 실질적인 또는 잠재적 영향을 미치는 제품, 구성요소, 원자재의 추적가능성
- 생물다양성을 유지하거나 강화하기 위해 관리되는 생태계의 생산, 조달 또는 소비(생물 다양성 상태, 이익 또는 손실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 및 보고를 통해 입증)
-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관련 영향의 사회적 결과
- 다음 사항의 채택 여부
 - 생물다양성 가치가 높은 보호구역¹⁹⁾ 또는 생물다양성에 민감한 보호구역 외 지역에서 소유 · 임대 · 관리 되는 영업 현장을 다루는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보호 정책
 - 지속 가능한 토지/농업 관행 또는 정책
 - 지속 가능한 해양/바다 관행 또는 정책
 - 삼림 벌채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관련 조치 및 자원(E4-3)
 - ESRS 2 MDR-A *중대한 지속 가능성 문제와 관련된 조치 및 자원*에 정의된 원칙에 따라 주요 조치 및 자원에 대한 설명 제시
 - 주요 조치가 할당된 완화체계(회피, 감소 및 최소화, 복원 및 재활)내 위치
 - 실행 계획에 생물다양성 상쇄 사용 여부를 공개하고, 해당되는 경우 다음 사항을 포함
 - 상쇄의 목적 및 적용된 핵심성과지표
 - 생물다양성 상쇄의 재정적 효과(직접 및 간접 비용)
 - 상쇄에 대한 설명(면적, 유형, 적용된 품질 기준 및 생물다양성 상쇄가 충족하는 표준)
 - 지역 및 토착 지식, 자연 기반 솔루션과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관련 조치와의 통합 방법
 - 주요 조치에 대해 다음 사항을 설명
 - 관련된 주요 이해관계자 목록(예: 경쟁업체, 공급업체, 소매업체, 기타 사업 파트너,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 및 당국, 정부 기관)과 이해관계자의 참여 · 조치로 인해 부정적 또는 긍정적으로 영향을 받는 주요 이해관계자 및 그 영향(지역사회, 소규모 원주민 집단 또는 기타 취약 집단에 대해 발생한 영향 또는 혜택 포함)

19) 유럽 의회 및 이사회 지침 98/70/EC 제7b조 제3항 참조, "보호구역"은 유럽환경청의 CDDA(Common Database on Designated Area)에서 지정된 구역을 의미

- 해당되는 경우, 적절한 협의의 필요성과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의 결정을 존중할 필요성
- 주요 조치가 지속 가능성에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간략한 평가
- 주요 조치가 일회성 계획인지 또는 체계적인 실행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설명
- 주요 실행 계획이 기업의 자원을 사용하여 기업에 의해서만 수행되는지, 혹은 기업이 구성원으로 포함된 더 포괄적인 실행 계획의 일부인지에 대한 설명(해당되는 경우, 프로젝트, 후원자 및 기타 참가자에 대한 추가 정보 제공)

□ 지표 및 목표

○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관련 목표(E4-4)

- ESRS 2 MDR-T 목표에 대한 정책 및 조치의 효과 추적에 따른 목표 설명
- 기업이 도입한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관련 목표
 - ESRS E4 AR4에 명시된 중요한 측면과 관계된 목표 설정 여부
 - 목표에 설정된 날짜와 마일스톤의 포함 여부
 - 목표가 과학적 증거에 기반하고 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 목표 설정에 생태학적 한계점 및 기업별 할당의 적용 여부를 명시하고, 해당되는 경우 다음 사항을 명시
 - ① 식별된 생태학적 한계점과 그러한 한계점을 식별에 사용되는 방법론
 - ② 기업별 고유 기준 적용 여부 및 기준 결정 방법
 - ③ 식별된 생태학적 한계점에 대한 책임이 기업에 어떻게 할당되는지
 - Post-2020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 2030년 EU 생물다양성 전략, 기타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관련 국가 정책 및 법률, IPBES와 같은 권위 있는 정부간 문서에 따른 정보를 통한 목표 설정 여부
 - 목표 설정 시 생물다양성 상쇄 사용 여부
 - 목표가 할당될 수 있는 완화체계(회피, 감소 및 최소화, 복원 및 재할)

○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관련 영향 지표(E4-5)

-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생물다양성 민감지역 또는 근처에 위치한 기업 현장을 식별한

- 경우, 이러한 보호 지역 또는 주요 생물 다양성 지역 내 또는 근처에서 소유 · 임대 · 관리하는 부지의 수 및 면적
- 기업의 영업 활동이 공시 요구사항 E4-1이 적용되는 부문 중 하나에 해당하며, 토지 이용 변화 또는 생태계의 범위 및 상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전과정 평가에 기반한 토지 이용
 - 기업의 영업 활동이 토지 이용 변화, 담수 이용 변화 또는 해양 이용 변화의 영향 동인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관련 지표 보고
 - 시간에 따른(예: 1년 또는 5년) 토지 피복 전환(예: 삼림 벌채 또는 채굴)
 - 시간에 따른(예: 1년 또는 5년) 생태계 관리의 변화(예: 농업 관리 강화, 더 나은 관리 관행 적용, 또는 산림 생산)
 - 경관의 공간적 구성 변화(예: 서식지 단편화, 생태계 연결성 변화)
 - 생태계 구조적 연결성의 변화(예: 서식지 패치의 물리적 특징 및 배치에 기반한 서식지 투과성)
 - 기능적 연결성(예: 유전자, 생식체, 번식체 또는 개체가 육지, 담수 및 해양경관을 통해 얼마나 잘 이동하는지)
 - 기업의 영업 활동이 침입외래종의 우발적 또는 자발적 유입의 영향 동인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경우, 침입외래종의 유입 및 확산 경로와 침입외래종으로 인한 위험 관리 방법
 - 종의 상태에 대한 기업의 영업 활동의 중대한 영향을 식별한 경우, 관련 있는 측정 기준을 보고하고, 다음 사항을 수행
 - ESRS E1, E2, E3 및 E5 참조
 - 인구 규모, 특정 생태계 내 범위 및 멸종 위험 고려
 - 특정 지역 내 종의 개체 수 변화 측정 지표를 하나 이상 포함(예를 들어, 개체 수 또는 번식 쌍의 수는 해당 지역의 번식지 적합성 변화에 대한 정보 제공 가능)
 - 전 세계적으로 멸종 위기에 처한 종에 대한 정보 공개 시, ① 종의 위협 상태 및 기업 활동 · 압력이 위협 상태에 미치는 영향 또는 ② 지역의 멸종 위험에 대한 기업의 영향 측정의 대응물로서, 위협받는 종에 대한 관련 서식지의 변화를 지표로 포함
 - 생태계에 대한 기업의 영업 활동의 중대한 영향을 식별한 경우, 생태계 건강성을 이해하기 위해 기업은 생태계 카테고리(IUCN Global Ecosystem Typology 2.0)에 따른 생태

계 범위 및 생태계 상태를 고려

- 생태계 범위: 평가 대상 지역의 질에 대한 고려(서식지 면적 등)를 제외한 특정 생태계의 지역 범위를 측정하는 지표(예를 들어, 산림 면적은 생태계 상태에 대한 고려 없이 특정 생태계 유형의 범위만을 측정, 즉 산림 내의 종 다양성에 대한 설명 대신 면적만 제시)
- 생태계 상태
 - ① 사전에 결정된 기준 상태에 대한 생태계의 질을 측정하는 하나 이상의 지표
 - ② 생태계 내 여러 종을 측정하는 하나 이상의 지표(예를 들어, Post-2020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에 명시된 목표와 더불어 첫 보고 기간 초의 기준 상태 대비 생태계 내 (토착)종 구성의 발달을 측정하는 과학적으로 확립된 종 풍요도 지표 또는 종의 보존 상태 집계)
 - ③ 서식지 연결성(서식지가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과 같이 상태의 구조적 구성 요소를 반영할 수 있는 하나 이상의 지표
-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관련 영향, 위험 및 기회에 의한 잠재적 재무 영향(E4-6)
 - ※ [E3-5]와 내용 동일

5) E5 - 자원사용 및 순환경제(Resource Use and Circular Economy)

□ 영향, 위험 및 기회 관리

- 자원사용 및 순환경제 관련 중요한 영향, 위험 및 기회의 식별 및 평가 과정에 대한 설명 (ESRS 2 IRO-1)
 - 자원사용 및 순환경제와 관련된 중요한 영향, 위험 및 기회를 식별하는 프로세스를 설명하고 다음 사항에 대한 정보 제공
 - 영업 활동 및 가치 사슬에서 실제 및 잠재적 위험을 식별하기 위한 자산 및 활동을 선별하는 데 사용되는 방법론, 가정 및 도구
 - 영향 및 의존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과 기회 간의 상호 연관성
 - 특히 피해를 입은 지역사회와의 협의 수행 과정

○ 자원사용 및 순환경제 관련 정책(E5-1)

- 자원 사용 및 순환 경제와 관련된 중요한 영향, 위험 및 기회를 관리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
- 정책 요약에는 중요한 지속 가능성 문제를 관리하기 위해 채택된 ESRS2 MDR-P 정보를 포함하며, 다음 사항을 다루는지 여부 및 방법을 명시
 - 재생 불가능한 처녀 자원의 추출의 전환
 - 재생 가능한 자원의 재생 생산 및 자원이 속한 생태계의 재생 확보 및 기여
- 정책은 영업 활동과 업스트림 및 다운스트림 가치 사슬에 따른 중대한 영향, 위험 및 기회를 다루어야 함

○ 자원사용 및 순환경제 관련 조치 및 자원(E5-2)

- 자원사용 및 순환경제 조치 및 실행에 할당된 자원
- 자원사용 및 순환경제 관련 조치와 할당된 자원에 대한 설명은 ESRS2 MDR-A *중요한 지속 가능성 문제와 관련된 조치 및 자원에* 정의된 원칙을 따름
- 기업의 조치와 자원이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지 여부 및 방법을 명시
 - 다음 폐기물 체계의 모든 계층 구조
 - ① 예방
 - ② 재사용 준비
 - ③ 재활용
 - ④ 기타 회수(예: 에너지 회수)
 - ⑤ 폐기
 - 제품의 가치 사슬 전반에 걸친 보다 상세한 순환경제 전략: 폐기, 재고, 감소, 재사용, 수리, 재가공(재제조 및 용도 변경), 재활용
- 기업의 가치 사슬에서 폐기물 생성을 방지하고 생성된 폐기물로 인해 발생하는 중대한 영향을 관리하기 위해 취한 조치(순환 조치 포함)에 대한 설명

□ 지표 및 목표

○ 자원사용 및 순환경제 관련 목표(E5-3)

- 기업이 도입한 자원사용 및 순환경제 관련 목표를 공개하고 그 목표가 폐기물, 제품 및 자재를 포함(생산, 사용 단계 및 기능 수명 종료 포함)한 유입 및 유출과 관련되는지 여부 및 방법을 명시하며, 특히 다음 사항에 대해 설명
 - 순환 설계 증가(예: 일시적 제품 설계 포함)
 - 순환 자재 사용률의 증가
 - 재생 불가능한 처녀 자재의 최소화 및 재생 불가능한 처녀 자재 및 재생 가능한 처녀 자재에 대한 목표 포함
 - 재생 가능한 자원 고갈 전환
 - 적절한 처리 준비를 포함한 폐기물 관리
 - 기타 목표
- 목표에 대한 설명에는 ESRS 2 MDR-T 목표를 통한 정책 및 조치의 효율성 추적에 정의된 정보 요구 사항을 포함
- 목표와 관련된 폐기물 체계중 한 부분을 지정
- 목표 설정 시, 지역의 생태학적 한계점과 기업별 할당이 고려되었는지 여부를 명시해야 하며, 해당되는 경우 다음을 명시
 - 식별된 생태학적 임계값과 그러한 임계값을 식별하는 데 사용된 방법론
 - 기준이 기업별로 고유한지 여부와 그 기준이 어떻게 결정되었는지
 - 식별된 생태학적 한계점을 존중하기 위한 책임이 기업에 어떻게 할당되는지
- 기업이 도입하고 제시한 목표가 의무적(법률에 근거)인지 자발적인지 여부와 생태학적 한계점을 고려할 때 그러한 법적 요구 사항이 고려되었는지 여부와 방법을 명시

○ 자원 유입(E5-4)

- 중요한 자원 유입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기업의 영업 활동과 가치 사슬에서 사용되는 제품(포장 포함), 자재, 자산, 공장 및 장비 등 물질 유입에 대한 설명을 포함
- EU 순환경제 실행 계획의 정의에 따른 "핵심 제품 가치 사슬" 중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한 유입에 대해, 보고 기간에 대한 다음 사항을 포함(kg 또는 t 단위)
 - 보고 기간 동안 사용된 제품 및 재료의 전체 총 중량

- 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포장 포함)를 제조하는 데 사용되는 재생 자원에서 얻은 재생 가능한 투입 자재의 절댓값과 비율의 중량
- 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포장 포함)를 제조하는 데 사용되는 재사용 또는 재활용 제품 및 자재(비치너)의 절댓값과 비율의 중량
- 기업은 데이터 계산에 사용된 방법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데이터의 출처가 직접 측정인지 추정인지 여부를 명시하고 적용된 주요 가정을 공개

○ 자원 유출(E5-5)

- 다음 사항에 대한 이해를 목적으로 폐기물을 포함하여 중요한 자원 유출에 대한 정보를 공개
 - ① 순환 원칙에 따른 제품 및 재료 설계 및 ② 기업의 제품 · 자재 · 폐기물 처리의 재순환이 순환 경제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 기업의 폐기물 관리 전략 및 영업 활동에서의 폐기물 관리에 대한 기업의 인지 수준
- 기업의 생산 공정으로부터 유출되었으며, 내구성, 재사용성, 수리 가능성, 분해, 재제조, 개조, 재활용 또는 기타 사용 최적화를 포함한 순환 원칙에 따라 설계된 핵심 제품 및 자재에 대한 설명
- EU 순환경제 실행 계획의 정의에 따른 "핵심 제품 가치 사슬" 중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한 유출에 대해, 보고 기간에 대해 다음에 대한 정보를 제공
 - 순환 원칙에 따라 설계된 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 생산 공정에서 나온 자재의 총 중량 및 비율
 - ① 내구성
 - ② 재사용성
 - ③ 수리 가능성
 - ④ 분해
 - ⑤ 재제조 또는 개조
 - ⑥ 재활용
 - ⑦ 생물학적 주기에 의한 재순환
 - ⑧ 제품 및 재료 사용의 기타 잠재적 최적화

- 순환 원칙에 따른 제품 및 재료 설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향후 고객 및 가치 사슬을 위한 순환 경제를 활성화하도록 설계된 기업으로부터 나온 제품 및 자재의 중량 비율
- 기업 활동에 의한 폐기물의 총량
 - 발생한 폐기물의 총량(kg 또는 t)
 - 유해 및 비유해 폐기물의 각 유형에 대해, 다음의 회수 작업 유형별로 폐기로부터 전환된 중량 및 세 가지 유형을 모두 합한 총량(kg 또는 t)
 - ① 재사용을 위한 준비
 - ② 재활용
 - ③ 기타 복구 작업
 - 유해 및 비유해 폐기물의 각 유형에 대해, 다음의 폐기물 처리 유형별 폐기물로 처리된 중량 및 세 가지 유형을 모두 합한 총량
 - ① 소각
 - ② 매립
 - ③ 기타 처분 작업
 - 재활용되지 않은 폐기물의 총량 및 비율
- 폐기물 구성 정보 공개 시, 다음을 명시
 - 관련 섹터 또는 활동과 관련된 폐기물 흐름(예: 광업 부문 기업의 광석폐기물, 가전제품 부문 기업의 전자 폐기물, 농업 또는 숙박 부문 기업의 음식물 쓰레기)
 - 폐기물내 존재하는 물질(예: 바이오매스, 금속, 비금속 광물, 플라스틱, 식물)
- 기업으로부터 생성된 유해 폐기물 및 방사성 폐기물의 총량
 - 위원회 지침 2011/70/Euratom의 3(7)의 방사성 폐기물의 정의에 따름
- 데이터를 계산하는 데 사용되는 방법론, 특히 순환 원칙에 따라 설계된 제품을 결정하고 분류하는 데 사용되는 기준 및 가정에 대한 상황 정보를 제공하고, 데이터의 출처가 직접 측정인지 추정인지 여부를 명시하며, 사용된 주요 가정을 공개
- 자원사용 및 순환경제 관련 영향, 위험 및 기회에 의한 잠재적 재무 영향(E5-6)

※ [E3-5]와 내용 동일

2.4. ESRS2 사회

1) S1 - 기업 자체 인력(Own workforce)

□ 목적

- 다음과 같은 인권을 포함한 사회적 문제와 관련하여, 기업이 자사 근로자에게 미치는 실질적, 잠재적 중대한 영향을 식별하고 관리하기 위해 취하는 일반적인 접근 방식을 설명
 - 근로 조건: ① 고용 안정성, ② 근무 시간, ③ 적절 임금, ④ 사회적 대화, ⑤ 결사의 자유, 직장협회의 존재 및 정보, 근로자의 협의 및 참여권, ⑥ 단체 협약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 비율을 포함한 단체 교섭, ⑦ 일과 삶의 균형, ⑧ 건강과 안전
 - 모두에게 평등한 대우와 기회: ① 성 평등 및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 ② 교육 및 기술 개발, ③ 장애인 고용 및 통합, ④ 직장 내 폭력 및 괴롭힘에 대한 조치, ⑤ 다양성
 - 기타 업무 관련 권리: ① 아동 노동, ② 강제 노동, ③ 적절한 주거, ④ 개인정보
- 기업 자체 인력(자사 근로자 또는 직원)은 기업과 고용 관계에 있는 “고용 근로자(employees)”와 기업과 계약을 맺고 노동력을 제공하는 개인 근로자(self-employed workers) 또는 고용 활동(employment activities)과 관계된 기업이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비고용 근로자(non-employee workers)” 모두를 포함함
 - 기업의 업스트림 또는 다운스트림 가치 사슬에 있는 근로자는 해당되지 않음

□ 전략

- 이해관계자의 이익 및 견해(ESRS2 SBM-2)
 - 인권 존중을 포함하여 직원의 이익, 견해 및 권리가 전략 및 사업모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 중대한 영향, 위험 및 기회와 전략 및 사업모형과의 상호 작용(ESRS2 SBM-3)

- 기업의 전략 및 사업 모형으로부터 발생하거나 이와 관련된 기업 자체 인력에 대한 실제 및 잠재적 영향 설명
- 기업 자체 인력에 대한 영향 및 의존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중대한 위험 및 기회와 기업의 전략 및 사업모형 간의 관계 설명
- 기업에 의해 실질적인 영향(기업에 의해 유발되거나, 비즈니스 관계를 통한 영업, 제품 또는 서비스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기업 자체 인력에 대해 다음 사항을 포함한 정보 제시
 - 사업에 의해 중대한 영향을 받는 기업 자체 인력의 유형(근로자, 개인 근로자 또는 제3자 기업이 제공한 근로자 해당 여부 명시)
 - 기업 경영에 있어 중대한 부정적 영향이 광범위하거나 체계적인지 여부(예: 특정 국가나 지역의 아동 노동, 또는 강제 노동), 또는 해당 영향이 개별 사건(예: 산업재해, 기름유출 등)과 관련되어 있는지 여부
 - 중대한 긍정적 영향을 초래하는 기업 활동(지리적 위치 포함)과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근로자의 유형
 - 기업 자체 인력에 대한 영향과 의존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중대한 위험 및 기회
 - 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고 친환경적이고 기후 중립적인 기업 경영을 위한 전환 계획이 기업 자체 인력에 미칠 수 있는 모든 중대한 영향(국제 협약에 따른 탄소 감축을 위한 기업의 계획·조치가 자사 인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보, 구조 조정 및 고용 감소, 일자리 창출, 재교육 또는 기술 향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기회 포함)
 - 강제 노동 및 아동 노동 발생 위험이 높은 작업
 - ① 사업 유형(예: 제조 공장)
 - ② 기업 활동이 위험하다고 간주되는 국가 또는 지역

□ 영향, 위험 및 기회 관리

○ 기업 자체 인력에 대한 정책(S1-1)

- 자사 근로자에 대한 중대한 영향, 위험 및 기회 관리를 다루는 정책 요약
 - 해당 정책이 특정 그룹 또는 전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지 여부 명시
- 자사 근로자와 관련된 인권 정책의 추진 의지를 다음의 일반적 접근 방식 및 중대한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UN글로벌컴팩트(UN Global Compact; UNGC) 원칙과 OECD 다국적기업 지침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프로세스 및 메커니즘 포함)

- 노동권을 포함한 근로자의 인권 존중
-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의 참여
- 인권 영향에 대한 구제책을 제공 및/또는 가능하게 하는 조치
- 자사 근로자 관련 정책이 국제적으로 인정된 표준(UNGP) 포함)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그 방식을 공개
- 자사 근로자와 관련된 정책이 인신매매, 강제 노동 및 아동 노동을 명백히 다루고 있는지
- 사업장 사고 예방 정책 또는 관리 시스템 보유 여부 명시
- 기업 자체 인력에 대한 정책과 관련하여 다음의 정보를 공개
 - 괴롭힘을 포함한 차별 철폐, 기회균등 촉진, 다양성 및 포용성 증진을 위한 기타 방법에 대한 구체적 정책의 보유 여부
 - 정책이 인종 및 민족 출신, 피부색, 성별, 성적 취향, 성 정체성, 장애, 나이, 종교, 정치적 견해, 국적 또는 사회적 출신 등의 차별 및 다양성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는지 여부와 EU 규정 및 국내법에 의해 적용되는 다른 형태의 차별
 - 자사 근로자 중 취약성 위험이 있는 그룹의 사람들을 위한 포용 또는 적극적 조치와 관계된 특정 정책의 추진 의지 보유 여부
 - 일반적인 다양성 및 포용성의 향상 뿐만 아니라, 차별의 예방 및 완화, 인지된 차별에 대한 조치를 보장하는 특정 절차를 통해 정책이 이행되는지 여부와 그 방법

○ 자사 근로자 및 근로자 대표와 영향에 대해 소통하는 절차(S1-2)

- 기업 자체 인력에 대한 실제적, 잠재적 중대한 영향을 관리하기 위한 결정이나 활동에 자사 근로자의 입장이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와 그 방법을 (해당되는 경우) 다음 사항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여 공개
 - 자사 근로자 또는 근로자 대표와 직접적으로 협의가 이루어지는지 여부
 - 협의 단계, 유형 및 빈도
 - 해당 협의의 결과가 기업의 접근 방식에 반영되도록 보장하는 운영 책임을 지는 기업의 최상위 직책과 기능

- 해당되는 경우, 근로자의 인권 존중과 관련하여 기업이 근로자 대표와 체결한 글로벌 프레임워크 협정 또는 기타 협정
- 해당되는 경우, 기업이 자사 근로자의 참여 효과를 평가하는 방법
- 해당되는 경우, 영향에 특히 취약하거나 소외될 수 있는 근로자(예: 여성 근로자, 이주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의 입장을 이해하기 위해 취하는 단계
- 기업이 자사 근로자와 협력하기 위한 일반적인 절차를 도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정보를 공개할 수 없는 경우 이를 명시(해당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기간 공개 가능)
- 부정적인 영향을 해결하기 위한 절차와 직원이 고충을 제기할 수 있는 채널(S1-3)
 - 다음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사회적 요인 또는 문제, 인권(근로 조건, 평등한 대우와 기회, 업무 관련 권리)을 다루기 위해 마련된 절차 설명
 - 자사 근로자에게 중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 구제책을 제공하거나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반적인 접근 방식 및 절차(제공된 구제책의 효과를 평가하는 방법 포함)
 - 근로자가 기업에 직접 고충이나 요구 사항을 제기하고 이를 해결하도록 마련된 특정 채널(기업 자체적으로 또는 제3자 메커니즘을 통해 마련되었는지 여부 포함)
 - 고충 · 불만 처리 메커니즘의 취약점
 - 기업이 자사 근로자의 직장 내에서 이러한 채널의 가용성을 지원하거나 요구하는 절차
 - 제기된 문제를 추적 및 모니터링하는 방법과 채널의 효율성을 보장하는 방법
 - 자사 근로자가 고충 및 요구 사항을 제기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조나 절차를 인지 및 신뢰하고 있는지 여부와 이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해당 채널의 사용자들(근로자 대표 포함) 보복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보유하고 있는지
- 기업 자체 인력에 대한 중대한 영향, 위험 및 기회를 관리하기 위해 취한 조치(S1-4)
 - 자체 인력과 관계된 중대한 영향 대응 · 중대한 위험 완화 · 중대한 기회 추구를 위한 접근 방식과 조치, 해당 조치의 효과
 - 자체 인력에 대한 특정 실제적 또는 잠재적 부정적 영향에 대응하여 필요한 조치를 식별하는 절차
 - 자체 인력과 관련된 중대한 영향, 위험 및 기회를 관리하기 위한 실행 계획 및 자원에

대한 요약 설명

- 기업 자체 인력에 대한 중대한 영향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설명
 - 자사 근로자에 대한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예방 또는 완화하기 위해 취해졌거나, 계획 중이거나 진행 중인 조치
 - 실제 중대한 영향과 관련하여 구제책을 제공하거나 가능하게 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와 방법
 - 자사 근로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 시행 중인 추가 조치 또는 이니셔티브
 - 해당 조치와 이니셔티브의 효과를 추적하고 평가하는 방법
- 기업 자체 인력에 대한 중대한 위험 및 기회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설명
 - 자사 근로자에 대한 영향과 의존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중대한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계획되거나 진행 중인 조치와 해당 조치의 효과를 추적하는 방법
 - 자사 근로자와 관련한 중대한 기회를 추구하기 위해 계획되거나 진행 중인 조치
- 기업 자체의 관행(조달, 판매 및 데이터 사용과 관련된 관행 포함)이 자체 인력에 중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유발하거나 기여하지 않도록 보장하는지 여부와 그 방법을 공개

□ 지표 및 목표

○ 중대한 영향, 위험 및 기회 관리와 관련된 목표(S1-5)

- 자사 근로자에 대한 부정적 영향 감소, 긍정적 영향 촉진, 중요한 위험 및 기회 관리와 관련한 기한이 있는 결과 지향적인 목표 공개
- 기업의 목표 설정 과정(자사 근로자 또는 근로자 대표와 직접 협력하는지 여부 및 그 방법 포함) 공개
 - 목표 설정
 - 성과 추적
 - 성과를 통한 교훈이나 개선 사항 식별(해당되는 경우)

○ 기업의 고용 근로자의 특성(S1-6)

- 기업의 고용 관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영향의 범위와 특성을 포함한 기업의 고용 방식을

이해하기 위해 자사 근로자의 주요 특성을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

- 총 직원 수에 대한 인원수 보고, 국가별 기업의 직원이 50명 이상인 경우 성별 및 국가별 세부 내역
- 인원수 또는 FTE(Full Time Equivalent) 보고
 - ① 정규직: 성별, 지역별 구분
 - ② 비정규직: 성별 및 지역별 구분
 - ③ 시간제 근로자(Non-guaranteed hours employees): 성별, 지역별 구분
- 보고 기간 동안의 이직자 수 및 비율
- 데이터 편집에 사용된 방법론 및 가정에 대한 설명
 - ① 인원수 또는 FTE(FTE 정의 방법에 대한 설명 포함)
 - ② 보고 기간 전체의 평균 값 또는 다른 방법을 사용하여 계산된 값
- 해당되는 경우, 데이터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상황 정보(예: 보고 기간 동안의 직원 수 변동)
- 총 직원 수 정보를 재무제표에 대해 상호 참조

○ 기업의 비고용 근로자의 특성(S1-7)

- 기업 자체 인력 내 비고용 근로자의 주요 특성을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

- 비고용 근로자의 총 수(노동력 공급 기업과 계약을 맺은 개인 또는 주로 고용 활동에 종사하는 기업에서 제공한 근로자에 대한 설명 포함)
 - ① 가장 일반적인 유형의 비고용 근로자 및 기업과의 고용 관계
 - ② 수행하는 업무 유형
- 데이터 수집에 사용된 방법론 및 가정에 대한 설명
 - ① 인원수 또는 FTE(FTE 정의 방법에 대한 설명 포함)
 - ② 보고 기간 전체의 평균 값 또는 다른 방법을 사용하여 계산된 값
- 해당되는 경우, 데이터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상황 정보(예: 보고 기간 동안 및 현재 보고 기간과 이전 보고 기간 사이에 비고용 근로자 수의 상당한 변동)

○ 단체교섭 범위 및 사회적 대화(S1-8)

- 단체 교섭 협약(collective bargaining agreements)이 자사 근로자의 근로 조건 및 고용 조건에 미치는 영향
 - 단체 교섭 협약의 적용을 받는 전체 직원의 비율
 - 유럽 경제 지역(European Economic Area; EEA)에서, 하나 이상의 단체 협약을 체결하고 있는지 여부와 해당되는 경우, 단체 협약의 적용을 받는 직원의 전체 비율을 각 국가별로 명시(고용이 중대한 문제로 식별되었으며 총 직원수의 10%가 50명 이상인 경우)
 - EEA 이외 지역에서, 지역별 단체 교섭 협약이 적용되는 자사 근로자의 비율
- 단체 교섭 협약이 적용되지 않는 직원의 경우, 다른 직원에게 적용되는 단체 교섭 협약에 기반하여 기업이 해당 직원의 근로 조건 및 고용 조건을 결정하는지, 아니면 다른 기업의 단체 교섭 협약을 기반으로 결정하는지 여부 명시
- 단체 교섭 협약이 비고용 근로자의 근로 조건 및 고용 조건에 미치는 영향의 범위
- 사회적 대화와 관련하여 다음 정보를 포함
 - 각 EEA 국가별로 사업장 수준에서 근로자 대표가 담당하는 직원의 글로벌 비율(고용이 중대한 문제로 식별된 경우)
 - 유럽노동이사회(European Works Council, EWC), 유럽주식회사(Societas Europaea, SE) 사업장 협의회 또는 유럽협동조합(Societas Cooperativa Europaea, SCE) 노동 협의회의 대표를 위해 직원들과 합의한 사항
- 다양성 지표(S1-9)
 - 최고 경영진의 성별 분포 및 직원의 연령 분포
 - 직원 중 최고 경영진의 수와 비율에 따른 성별 분포
 - 연령별 직원 분포: 30세 미만, 30~50세 50세 이상
- 적절 임금(S1-10)
 - 모든 직원이 해당 기준에 따라 적절한 임금을 받고 있는지 여부
 - 모든 직원이 적절한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해당 국가와 적절 임금 이하를 지불받는 직원의 비율
- 사회적 보호(S1-11)

- 자사의 모든 근로자가 주요 생활 사건(질병, 실업, 산업재해 및 후천적 장애, 출산 휴가, 퇴직)으로 인한 소득 손실에 대해 사회적 보호를 받고 있는지 여부
 - 사회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 해당 사건 유형과 관련하여 사회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국가와 고용 및 비고용 근로자의 유형을 추가로 공개
- 장애인(S1-12)
- 자사 근로자 중 장애인의 비율
 - 성별에 따라 분류된 장애인 근로자의 비율 공개 가능
- 교육 및 기술개발 지표(S1-13)
- 지속적인 전문성 강화를 위해 자사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교육 및 기술 개발의 범위
 - 정기 성과 및 경력 개발 평가에 참여한 직원의 비율(직원 카테고리 및 성별에 따른 분류)
 - 직원 카테고리 및 성별별 1인당 평균 교육 시간
- 건강 및 안전 지표(S1-14)
- 업무 관련 부상 예방을 위해 수립된 안전보건 관리 시스템의 적용 범위, 품질 및 성과를 이해하기 위해 보건 및 안전 관리 시스템의 적용을 받는 자사 근로자의 범위와 업무 관련 부상, 질병 및 사망과 관련된 사고 건수에 대한 정보
 - 법적 요구사항 또는 인정된 표준이나 지침에 따라 기업의 보건 및 안전 관리 시스템이 적용되는 자사 근로자의 비율
 - 업무 관련 부상 및 질병으로 인한 사망자 수(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다른 근로자의 업무 관련 부상 및 질병으로 인한 사망자 수 포함)
 - 기록된 업무 관련 사고 건수 및 비율
 - 기록된 업무 관련 질병 건수
 - 업무 관련 부상, 업무 관련 사고로 인한 사망, 업무 관련 질병,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인한 손실 일수
- 일과 삶의 균형 지표(S1-15)
- 일과 삶의 균형 측면 중 하나인 가족 관련 휴가를 평등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직원의 권리와 실제 관행을 이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공개

- 가족 관련 휴가를 받을 수 있는 직원의 비율
 - 가족 관련 휴가를 받은 적격 직원의 비율 및 성별 분석
- 보상 지표(임금 격차 및 총 보상)(S1-16)
- 남녀 임금격차와 최고 임금을 받는 개인의 보수와 직원 보수의 중간값의 비율
 - 남녀 임금 격차(남성과 여성 직원의 평균 총 시간당 임금의 차이를 남성 직원의 평균 총 시간당 임금으로 나누어 백분율로 표현한 값으로 정의)
 - 모든 직원(최고 임금을 받는 개인 제외)의 평균 연간 총 보수에 대해 최고 임금을 받는 개인의 보수 비율
- 사고 및 불만과 심각한 인권 영향 및 사건(S1-17)
- 업무 관련 사고 및 불만 사항과 자사 직원 내에서 발생한 심각한 인권 영향 및 사건과 관계된 중대한 벌금 또는 제재 조치
 - 개인 정보 보호 규정에 따른 성별, 인종 또는 민족 출신, 국적, 종교 또는 신념, 장애, 연령, 성적 취향 또는 기타를 이유로 한 업무 관련 차별 사건과 내부 또는 외부 이해관계자와 관련된 관련 형태의 차별 사건을 포함
 - 사회 및 인권 문제와 관계된 업무 관련 고충, 사고 및 불만 사항과 관련하여 다음의 정보를 공개
 - 보고된 차별 사건(괴롭힘 포함)의 총 건수
 - (차별이나 괴롭힘을 제외한) 기타 사회 및 인권 문제에 대해 자사 근로자들이 고충을 제기할 수 있는 창구(고충처리 메커니즘 포함) 및 해당되는 경우, OECD 다국적 기업의 국가연락사무소(National Contact Point, NCP)를 통해 접수된 불만 건수
 - 사회적 및 인권 요소와 관련된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총 벌금, 과태료, 손해 배상액과 그러한 금액을 재무제표에 가장 관련 있는 금액과 조정한 내역
 - 해당되는 경우, 데이터와 해당 데이터가 어떻게 편집되었는지 이해하는 데 필요한 상황 정보
 - 확인된 심각한 인권 영향 및 사건(예: 강제 노동, 인신매매 또는 아동 노동)과 관련하여 다음의 정보를 공개
 - 자사 근로자와 관련된 심각한 인권 문제 및 사건의 수(UNGC 및 OECD 다국적 기업

지침을 위반한 사례 건수 포함)

- 심각한 인권 영향 및 사건과 관련하여 발생한 총 벌금, 과태료 및 손해 배상액과 해당 금액을 재무제표의 가장 관련 있는 금액과 조정한 내역

2) S2 – 가치사슬 내 근로자(Workers in the value chain)

□ 전략

○ 이해관계자의 이익 및 견해(ESRS2 SBM-2)

- 인권(노동 포함) 존중을 포함하여 (실제 또는 잠재적) 가치사슬 근로자의 이익, 견해, 권리 및 기대가 기업의 전략 및 사업 모형에 미치는 영향

○ 중대한 영향, 위험 및 기회와 전략 및 사업모형과의 상호 작용(ESRS2 SBM-3)

- 가치사슬 근로자에 대한 실제 및 잠재적 영향과 중요한 영향, 위험 및 기회를 식별하고 평가하는 프로세스, 가치 사슬 근로자에 대한 영향과 의존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중대한 위험 및 기회와 기업의 전략 및 사업 모형간의 관계 설명
- 기업에 의해 중대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모든 가치 사슬 근로자와 관련하여 다음의 정보를 공개

- 영업 활동 또는 업스트림 및 다운스트림 가치 사슬을 통해 중대한 영향을 받는 근로자 유형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다음 사항에 대한 해당 여부를 명시

- ① 사업장에서 근무하지만 기업 자체 인력에 속하지 않는 근로자(즉 자영업자 또는 고용 활동에 종사하는 제3자 기업이 제공한 근로자)
- ② 기업의 업스트림 가치사슬 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예: 금속이나 광물 추출, 상품 수확, 정제, 제조 또는 기타 형태의 가공에 관련된 근로자)
- ③ 기업의 다운스트림 가치사슬 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예: 물류 또는 유통 제공업체, 프랜차이즈 가맹점, 소매업체의 활동에 참여하는 근로자)
- ④ 보고 기업과 관련된 합작 투자 또는 특수목적법인의 운영에 종사하는 근로자
- ⑤ 고유한 특성이나 특정한 상황으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기 쉬운 근로자(예: 노조 원, 이주 노동자, 재택 근무자, 여성 또는 청년 근로자)

- 기업의 가치사슬에 있는 근로자 중 아동 노동이나 강제 노동의 위험이 큰 지역(국가 수준 또는 기타 수준) 또는 상품
- 기업이 운영하거나 소싱 또는 기타 비즈니스 관계가 있는 상황에서 중대한 부정적 영향이 광범위하거나 체계적인지 여부(예: 특정 국가 또는 지역의 특정 상품 공급망에서의 아동 노동 또는 강제 노동) 또는 개별 사건(예: 산업 재해 또는 기름 유출)이나 특정 비즈니스 관계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잠재적 영향에는 혁신과 구조 조정, 광산 폐쇄, 전환 광물 채굴 증가 및 태양광 패널 생산과 관련된 영향이 포함)
- 중대한 긍정적 영향의 경우, 긍정적 영향을 초래하는 활동에 대한 간략한 설명(예: 구매 관행의 개선, 공급망 근로자에 대한 역량 강화)을 포함하여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의 맥락에서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기회(예: 일자리 창출, 역량 개발)를 설명하고, 긍정적 영향을 받거나 받을 수 있는 가치사슬 근로자의 유형과 지리적 위치를 포함
- 가치 사슬 근로자에 대한 영향과 의존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중대한 위험과 기회와 이에 해당되는 특정 그룹(예: 특정 연령층, 특정 공장 또는 국가의 근로자)

□ 영향, 위험 및 기회 관리

○ 가치사슬 근로자 관련 정책(S2-1)

- 가치사슬 내 근로자에 대한 중대한 영향, 위험 및 기회 관리를 다루는 정책을 설명하고, 해당 정책이 특정 그룹 또는 전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지 여부를 명시
- UNGC 원칙과 OECD 다국적기업 지침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프로세스 및 메커니즘을 포함하여 가치사슬 근로자와 관련된 인권 정책의 추진 의지를 다음의 일반적 접근 방식과 중대한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
 - 노동권을 포함한 근로자의 인권 존중
 - 가치사슬 근로자의 참여
 - 인권 영향에 대한 구제책을 제공 또는 가능하게 하는 조치
- 자사 근로자와 관련된 정책이 인신매매, 강제 노동 및 아동 노동을 명백히 다루고 있는지 여부 및 공급업체 행동 강령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명시
- 가치사슬 근로자 관련 정책이 국제적으로 인정된 표준(UNGP 포함)에 부합하는지 여부

와 그 방식을 공개

- 업스트림 및 다운스트림 가치사슬에서 보고된 가치 사슬 근로자 관련 UNGC 원칙 및 OECD 다국적 기업 지침 위반 사항의 범위 및 성격

○ 영향에 대해 가치사슬 근로자와 소통하는 절차(S2-2)

- 가치사슬 근로자에 대한 실제적, 잠재적 중대한 영향을 관리하기 위한 결정이나 활동에 가치사슬 근로자의 입장이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와 그 방법을 (해당되는 경우) 다음 사항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여 공개
 - 가치사슬 근로자 또는 근로자 대표와 직접적으로 소통이 이루어지는지, 혹은 가치사슬 근로자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대리인과 소통이 이루어지는지 여부
 - 협의 단계, 유형 및 빈도
 - 해당 협의의 결과가 기업의 접근 방식에 반영되도록 보장하는 운영 책임을 지는 기업의 최상위 직책과 기능
 - 해당되는 경우, 가치 사슬 근로자의 인권 존중, 특히 집단적 교섭권과 관련하여 기업이 글로벌 노동조합 연맹과 체결한 글로벌 프레임워크 협약 또는 기타 협약, 그리고 기업이 해당 근로자의 관점을 이해하는 데 있어 이러한 협약의 역할에 대한 설명
 - 해당되는 경우, 기업이 가치사슬 근로자의 참여 효과를 평가하는 방법
- 해당되는 경우, 영향에 특히 취약하거나 소외될 수 있는 근로자(예: 여성 근로자, 이주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의 입장을 이해하기 위해 취하는 단계
- 기업이 가치사슬 근로자와 협력하기 위한 일반적인 절차를 도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정보를 공개할 수 없는 경우 이를 명시(해당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기간 공개 가능)

○ 부정적인 영향을 해결하기 위한 절차와 가치사슬 근로자가 고충을 제기할 수 있는 채널(S2-3)

- 가치사슬 근로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거나 기여했다고 확인된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세스 또는 협력 절차를 설명하기 위해 다음 사항에 대해 기술
 - 가치사슬 근로자에게 중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 구제책을 제공하거나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반적인 접근 방식 및 절차(제공된 구제책의 효과를 평가하는 방법 포함)

- 가치사슬 근로자가 기업에 직접 고충이나 요구 사항을 제기하고 이를 해결하도록 마련된 특정 채널(기업 자체적으로 또는 제3자 메커니즘을 통해 마련되었는지 여부 포함)
- 기업이 가치사슬 근로자의 작업장 내에서 이러한 채널의 가용성을 지원하거나 요구하는 절차
- 제기된 문제를 추적 및 모니터링하는 방법과 채널의 효율성을 보장하는 방법
- 가치사슬 근로자가 고충 및 요구 사항을 제기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조나 절차를 인지 및 신뢰하고 있는지 여부와 이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보복으로부터 해당 채널의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보유하고 있는지
- 가치사슬 근로자에 대한 중대한 영향, 위험 및 기회를 관리하기 위해 취한 조치(S2-4)
 - 가치사슬 근로자와 관계된 중대한 영향 대응 · 중대한 위험 완화 · 중대한 기회 추구를 위한 접근 방식 및 조치, 해당 조치의 효과
 - 가치사슬 근로자에 대한 실제적 또는 잠재적 중대한 부정적 영향 대응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 식별
 - 가치사슬 근로자에게 발생한 특정 중대한 부정적 영향과 관련하여 취한 조치(자사의 구매 또는 기타 내부 관행과 관련된 조치뿐만 아니라 가치사슬 내 회사의 역량 강화 또는 다른 형태의 협력, 협력사 또는 기타 관련 당사자와의 공동 행동 포함)
 - 가치사슬 근로자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해결할 수 있는 프로세스의 시행 및 결과에 대한 유효성 및 효과성 보장
 - 가치사슬 근로자에 대한 중대한 영향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설명
 - 가치사슬 근로자에 대한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예방 · 완화 · 교정하기 위해 계획되거나 진행중인 조치
 - 가치사슬 근로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추가 계획 또는 절차
 - 해당 조치, 프로그램 및 프로세스의 효과를 추적하고 평가하는 방법
 - 가치사슬 근로자에 대한 중대한 위험 및 기회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설명
 - 가치사슬 근로자에 대한 영향과 의존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중대한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계획되거나 진행중인 조치와 해당 조치의 효과를 추적하는 방법
 - 가치사슬 근로자와 관련한 중대한 기회를 추구하기 위해 계획되거나 진행중인 조치

- 해당되는 경우 조달, 판매 및 데이터 사용과 관련된 관행을 포함하여 자체 관행이 가치사슬 근로자에게 중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유발하거나 기여하지 않도록 보장하는지 여부와 방법
- 업스트림 및 다운스트림 가치 사슬과 관련된 심각한 인권 문제 및 사건의 보고 여부
- 가치사슬 내 근로자에 대한 중요한 영향, 위험 및 기회를 관리하기 위한 실행 계획 및 자원에 대한 요약 설명 제공
- 보고 기간 동안 가치사슬 근로자에게 실제 중대한 부정적 영향이 발생한 경우, 기업이 해당 영향을 초래하거나 기여한 경우 취한 구제 조치 공개

□ 지표 및 목표

○ 중대한 영향, 위험 및 기회 관리와 관련된 목표(S2-5)

- 가치사슬 근로자에 대한 부정적 영향 감소, 긍정적 영향 촉진, 중요한 위험 및 기회 관리와 관련한 기한이 있는 결과 지향적인 목표 공개
- 기업의 목표 설정 과정(가치사슬 근로자 또는 그 대표와 직접 협력하는지 여부 및 그 방법 포함) 공개
 - 목표 설정
 - 성과 추적
 - 성과를 통한 교훈이나 개선 사항 식별(해당되는 경우)

3) S3 –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Affected communities)

□ 목적

- 다음과 관련하여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에 대한 중대한 실제 및 잠재적 영향을 식별하고 관리하기 위해 기업이 취하는 일반적인 접근 방식을 설명하기 위함
 - 지역사회의 경제 · 사회 · 문화적 권리
 - 예: 충분한 주거, 충분한 식량, 물 및 위생, 토지 관련 및 보안 관련 영향

- 지역사회 시민적 · 정치적 권리
 - 예: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인권옹호자(Human Rights Defenders)에 대한 영향
- 원주민(indigenous peoples)의 특정 권리
 - 예: 자유로운 사전인지동의(Free, Prior, and Informed Consent; FPIC), 자결권, 문화적 권리
- ESRS2 일반 공시에 명시된 중대성 평가 프로세스를 통해 영향을 받는 지역 사회에 대한 중대한 영향, 위험 및 기회가 식별된 경우에 적용

□ 전략

- 이해관계자의 이익 및 견해(ESRS2 SBM-2)
 - 인권(해당되는 경우 원주민의 권리) 존중을 포함하여 실제 또는 잠재적 영향을 받는 지역 사회의 견해, 이익 및 권리가 전략 및 사업모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 중대한 영향, 위험 및 기회와 전략 및 사업모형과의 상호 작용(ESRS2 SBM-3)
 - 영향을 받는 지역 사회에 대한 실제 및 잠재적 중대한 영향, 위험 및 기회를 식별하고 평가하는 프로세스 설명
 -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에 대한 영향과 의존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중대한 위험 및 기회와 기업의 전략 및 사업 모형간의 관계 설명
 - 기업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영향을 받는 지역 사회에 대해 다음의 정보를 공개
 - 영업 활동 또는 업스트림 및 다운스트림 가치 사슬을 통해 중대한 영향을 받는 지역 사회 유형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해당 지역사회가 다음에 해당하는지 명시
 - ① 기업의 사업 현장, 공장, 시설 또는 기타 영업 지역 주변에서 일하거나 거주하는 지역 사회, 또는 해당 사업장에서의 활동(예: 하류 수질 오염)에 영향을 받는 더 멀리 위치해있는 지역 사회
 - ② 기업의 가치 사슬에 따른 지역사회(예: 공급업체 시설 운영이나 물류 또는 유통 제공업체의 활동에 의해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
 - ③ 업스트림 및 다운스트림에 해당하는 지역사회(예: 금속이나 광물을 추출하거나 상

품을 수확하는 지점, 또는 폐기물이나 재활용 장소 주변에 위치한 지역사회)

④ 원주민 공동체

- 중대한 부정적 영향의 경우(친환경적 및 기후 중립적인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역사회에 대한 영향 및 혁신과 구조 조정, 광산 폐쇄, 지속 가능한 경제 전환과 태양광 패널 생산에 필요한 광물 채굴 증가와 관련된 잠재적 영향 포함),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명시
 - ① 기업이 운영되거나 소싱 또는 기타 비즈니스 관계를 맺고 있는 상황에서 중대한 부정적 영향이 광범위하거나 체계적인지(예: 고도로 산업화된 지역에서 건강과 삶의 질에 영향을 받는 소외된 주민)
 - ② 기업의 활동(예: 독성 폐기물 유출로 인해 지역 사회의 깨끗한 식수가 영향을 받는 경우) 또는 특정 비즈니스 관계의 개별 사고(예: 기업 운영에 반대하는 지역 사회의 평화적인 시위에 기업의 보안팀이 폭력적으로 대응한 경우)와 관련이 있는지
- 중대한 긍정적 영향의 경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활동(예: 새로운 형태의 지역 생계를 지원하기 위한 역량 강화)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긍정적인 영향을 받거나 받을 수 있는 지역사회의 유형(특정 국가나 지역에서 긍정적인 영향의 발생 여부)
-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에 대한 영향과 의존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중대한 위험 및 기회

□ 영향, 위험 및 기회 관리

○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 관련 정책(S3-1)

- 지역사회에 대한 중대한 영향, 위험 및 기회를 관리하기 위해 기업이 도입한 정책을 설명하고, 해당 정책이 영향을 받는 특정 지역 사회 또는 영향을 받는 모든 지역 사회에 적용되는지 여부를 명시
- 원주민에 대한 영향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특정 정책 조항 공개
-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와 관련된 인권 정책 추진 의지(UNGP, 노동에서의 기본적 원칙과 권리에 관한 ILO 선언(ILO Declaration on Fundamental Principles and Rights at Work)²⁰⁾ 또는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준수를 모니터링하는 프로세스 및 메커

20) 국제적인 노동 표준을 설정하기 위해 1988년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서 채택된 선언으로 ①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권

니즘 포함)를 다음 사항에 대한 일반적인 접근 방식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

- 지역사회, 특히 원주민의 인권 존중
-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의 참여
- 인권 영향에 대한 구제책 제공 또는 구제를 가능하게 하는 조치
- 영향을 받는 지역 사회에 대한 정책이 지역 사회와 원주민에 관련된 국제적으로 인정된 기준(특히 UNGP)과 어떻게 부합하는지
- 기업의 영업활동 또는 업스트림 및 다운스트림 가치 사슬에서 영향을 받는 지역 사회와 관계된 국제적 기준(UNGP, 노동에서의 기본적 원칙과 권리에 관한 ILO 선언 또는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의 비준수 사례의 범위(해당되는 경우 그러한 사례의 성격)에 대한 설명

○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와 영향에 관해 소통하는 절차(S3-2)

- 지역사회에 대한 실제적, 잠재적 중대한 영향을 관리하기 위한 결정이나 활동에 지역사회의 입장이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와 그 방법을 (해당되는 경우) 다음 사항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여 공개
 - 영향을 받은 지역사회 또는 지역사회의 대표와 직접적으로 소통이 이루어지는지, 혹은 해당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대리인과 소통이 이루어지는지 여부
 - 협의 단계, 유형 및 빈도
 - 해당 협의의 결과가 기업의 접근 방식에 반영되도록 보장하는 경영 책임을 지는 기업의 최상위 직책과 기능
 - 해당되는 경우, 기업이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의 참여 효과를 평가하는 방법
- 해당되는 경우, 영향에 특히 취약하거나 소외될 수 있는 지역사회 또는 지역사회 내 특정 그룹(예: 여성 및 소녀)의 입장을 이해하기 위해 취하는 단계
-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가 원주민에 해당하는 경우, 기업은 FPIC를 포함하여 이해관계자 참여 접근 방식에서 다음 사항에 대해 이들의 특정 권리를 어떻게 고려하고 존중하는지
 - 문화적, 지적, 종교적, 정신적 재산

보장, ② 강제노동 금지, ③ 아동노동 금지, ④ 고용과 직업에 대한 차별 금지의 네 가지 원칙으로 구성

- 토지와 영토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
- 영향을 미치는 입법적 또는 행정적 조치(특히, 원주민이 참여하는 경우, 원주민의 참여 방식과 기준에 대해 어떻게 협의했는지)
- 기업이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와 협력하기 위한 일반적인 절차를 도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정보를 공개할 수 없는 경우 이를 명시(해당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기간 공개 가능)
- 부정적인 영향을 해결하기 위한 절차와 피해를 입은 지역사회가 고충을 제기할 수 있는 채널(S3-3)
 - 지역사회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절차와 지역사회가 고충을 제기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채널 설명
 - 지역 사회에 중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 구제책을 제공하거나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반적인 접근 방식 및 절차(제공된 구제책의 효과를 평가하는 방법 포함)
 - 피해를 입은 지역사회가 기업에 직접 고충이나 요구 사항을 제기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마련된 특정 채널(기업 자체적으로 또는 제3자 메커니즘을 통해 마련되었는지 여부 포함)
 - 비즈니스 관계를 통해 이러한 채널의 가용성을 지원하는 절차
 - 제기된 문제를 추적 및 모니터링하는 방법과 채널의 효율성을 보장하는 방법
 - 피해를 입은 지역사회가 고충 및 요구 사항을 제기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조나 절차를 인지 및 신뢰하고 있는지 여부와 이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보복으로부터 해당 채널의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보유하고 있는지
- 지역사회에 대한 중대한 영향, 위험 및 기회를 관리하기 위해 취한 조치(S3-4)
 - 피해를 입은 지역사회에 대한 중대한 영향 해결 · 중대한 위험 관리 · 중대한 기회 추구를 위한 조치와 그 효과
 - 지역사회에 대한 실제적 또는 잠재적 중대한 부정적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식별하는 절차
 - 지역사회에 대한 특정 중대한 부정적 영향에 조치를 취하기 위한 접근 방식(토지 취득, 계획 및 건설, 운영 또는 폐쇄 관행과 관련한 자사 관행에 대한 조치뿐만 아니라, 더 넓은 산업 또는 기타 관련 당사자와의 협력 조치가 필요한지 여부를 포함)

- 부정적 영향을 해결할 수 있는 프로세스의 시행 및 결과에 대한 유효성 및 효과성 보장
- 지역사회에 대한 중대한 영향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설명
 - 지역사회에 대한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예방 및 완화하기 위해 취해지거나 계획 중이거나 진행 중인 조치
 - 지역사회에 대한 실제 중대한 영향과 관련하여 구제책을 제공하거나 가능하게 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와 방법
 -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제공하기 위해 시행 중인 추가 조치 또는 이니셔티브
 - 해당 조치와 계획의 효과를 추적하고 평가하는 방법
- 지역사회에 대한 중대한 위험 및 기회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설명
 - 지역사회에 대한 영향과 의존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중대한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계획되거나 진행 중인 조치와 해당 조치의 효과를 추적하는 방법
 - 지역사회와 관련한 중대한 기회를 추구하기 위해 계획되거나 진행 중인 조치
- 기획, 토지 취득 및 개발, 자금 조달, 원자재 추출 또는 생산, 천연 자원의 사용, 환경 영향 관리와 관련된 경우를 포함한 기업내 관행이 지역사회에 중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유발하거나 기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취하는 조치
- 피해를 입은 지역사회와 관련된 심각한 인권 문제 및 사건의 보고 여부

□ 지표 및 목표

○ 중대한 영향, 위험 및 기회 관리와 관련된 목표(S3-5)

-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에 대한 부정적 영향 감소, 긍정적 영향 촉진, 중요한 위험 및 기회 관리와 관련한 기한이 있는 결과 지향적인 목표 공개
- 기업의 목표 설정 과정(지역사회 또는 지역사회 대표와 직접 협력하는지 여부 및 그 방법 포함) 공개
 - 목표 설정
 - 성과 추적
 - 성과를 통한 교훈이나 개선 사항

4) S4 - 소비자 및 최종 사용자(Consumers and end-users)

□ 목적

- 다음 사항과 관련하여 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가 소비자 및 최종 사용자에게 미치는 중대한 실제 및 잠재적 영향을 식별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해 기업이 취하는 일반적인 접근 방식을 설명하기 위함
 - 소비자 또는 최종 사용자에게 대한 정보 관련 영향(예: 개인 정보 보호, 표현의 자유 및 (품질)정보에 대한 접근)
 - 소비자 또는 최종 사용자의 개인 안전(예: 건강과 안전, 개인의 보안 및 아동 보호)
 - 소비자 또는 최종 사용자의 사회적 포용(예: 차별 금지,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 책임 있는 마케팅 관행)
- 영향과 소비자 및 최종 사용자에게 대한 기업의 의존성이 중대한 위험이나 기회를 어떻게 창출할 수 있는지 설명
 - 예를 들어, 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 평판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은 비즈니스 성과에 해로울 수 있는 반면,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신뢰는 매출 증가 또는 미래 소비자 기반 확대와 같은 비즈니스 이익 창출 가능

□ 전략

- 이해관계자의 이익 및 견해(ESRS2 SBM-2)
 - 인권 존중을 포함하여 소비자 및 최종 사용자의 이익 및 권리가 기업의 전략 및 사업모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 중대한 영향, 위험 및 기회와 전략 및 사업모형과의 상호 작용(ESRS2 SBM-3)
 - 소비자 및 최종 사용자에게 대한 실제 및 잠재적 중대한 영향, 위험 및 기회를 식별하고 평가하는 프로세스 설명
 - 소비자 및 최종 사용자에게 대한 영향과 의존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중대한 위험 및 기회와 기업의 전략 및 사업 모형간의 관계 설명

- 기업의 영업 활동 및 가치 사슬과 관련된(제품 또는 서비스, 비즈니스 관계를 통해 발생하는) 중대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소비자 및 최종 사용자가 ESRS2에 따른 공시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함께 다음의 정보를 공개
 - 영업 활동 또는 가치 사슬을 통해 중대한 영향을 받는 소비자 및 최종 사용자의 유형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다음 사항에의 해당 여부 명시
 - ① 본질적으로 사람에게 유해하거나 만성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제품의 소비자 및 최종 사용자
 - ② 개인 정보 보호 권리, 개인 데이터 보호 권리, 표현의 자유, 차별 금지 권리에 잠재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비스의 소비자 및 최종 사용자
 - ③ (제품이나 서비스의 사용에 의한 잠재적인 피해 방지를 위해) 정확하고 접근 가능한 제품 또는 서비스 관련 정보(설명서, 제품 라벨 등)에 의존하는 소비자 및 최종 사용자
 - ④ 건강이나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영향, 또는 마케팅 및 판매 전략의 영향에 특히 취약한 소비자 및 최종 사용자(예: 어린이 또는 재정적으로 취약한 개인)
 - 중대한 부정적 영향이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명시
 - ① 기업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상황에서 중대한 부정적 영향이 광범위하거나 체계적인지(예: 서비스 사용자의 개인 정보 보호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 감시)
 - ② 개별 사건(예: 특정 제품과 관련된 결함) 또는 특정 비즈니스 관계에서의 개별 사고(예: 비즈니스 파트너가 젊은 소비자를 대상으로 부적절한 마케팅 사용)와 관련이 있는지
 - 중대한 긍정적 영향의 경우, 긍정적인 영향을 초래하는 활동(예: 장애인의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제품 디자인)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긍정적인 영향을 받거나 받을 수 있는 소비자 및 최종사용자 유형(특정 국가나 지역에서 긍정적인 영향 발생 여부 공개 가능)
 - 소비자 및 최종사용자에 대한 영향과 의존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중대한 위험 및 기회

□ 영향, 위험 및 기회 관리

○ 소비자 및 최종 사용자 관련 정책(S4-1)

- 제품 및 서비스가 소비자 및 최종 사용자에게 미치는 중대한 영향, 위험 및 기회를 관리하기 위해 기업이 도입한 정책을 설명하고, 해당 정책이 특정 그룹 또는 모든 소비자 또는 최종 사용자에게 적용되는지 여부를 명시
- 소비자 및 최종 사용자와 관련된 인권 정책 추진 의지(UNGP, 노동에서의 기본적 원칙과 권리에 관한 ILO 선언 또는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준수를 모니터링하는 프로세스 및 메커니즘 포함)를 다음 사항에 대한 일반적인 접근 방식 및 중요한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
 - 소비자 또는 최종 사용자의 인권 존중
 - 소비자 또는 최종 사용자의 참여
 - 인권 영향에 대한 구제책 제공 또는 이를 가능하게 하는 조치
- 소비자 및 최종 사용자에게 대한 정책이 국제적으로 인정된 기준(특히 UNGP)과 어떻게 부합하는지 공개
- 기업의 영업활동 또는 업스트림 및 다운스트림 가치 사슬에서 소비자 및 최종 사용자와 관계된 국제적 기준(UNGP, 노동에서의 기본적 원칙과 권리에 관한 ILO 선언 또는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의 비준수 사례의 범위(해당되는 경우 그러한 사례의 성격)에 대한 설명

○ 소비자 및 최종 사용자와 영향에 관해 소통하는 절차(S4-2)

- 소비자 및 최종 사용자에게 대한 실제적, 잠재적 중대한 영향을 관리하기 위한 결정이나 활동에 소비자 및 최종 사용자의 입장이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와 그 방법을 (해당되는 경우)다음 사항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여 공개
 - 영향을 받는 소비자 및 최종 사용자 또는 소비자 및 최종 사용자의 대표와 직접적으로 소통이 이루어지는지, 혹은 해당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대리인과 소통이 이루어지는지 여부
 - 협의 단계, 유형 및 빈도
 - 해당 협의의 결과가 기업의 접근 방식에 반영되도록 보장하는 경영 책임을 지는 기업의 최상위 직책과 기능

- 해당되는 경우, 기업이 소비자 및 최종 사용자의 참여 효과를 평가하는 방법과 협의의 결과
- 해당되는 경우, 영향에 특히 취약하거나 소외될 수 있는 소비자 및 최종 사용자(예: 장애인, 어린이 등)의 입장을 이해하기 위해 취하는 단계
- 기업이 소비자 및 최종 사용자와 소통하기 위한 일반적인 절차를 도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정보를 공개할 수 없는 경우 이를 명시(해당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기간 공개 가능)
- 부정적인 영향을 해결하기 위한 절차와 소비자 및 최종 사용자가 고충을 제기할 수 있는 채널(S4-3)
 - 소비자 및 최종 사용자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절차와 소비자 및 최종 사용자가 고충을 제기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채널 설명
 - 소비자 및 최종 사용자에 중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 구제책을 제공하거나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반적인 접근 방식 및 절차(제공된 구제책의 효과를 평가하는 방법 포함)
 - 소비자 및 최종 사용자가 기업에 직접 고충이나 요구 사항을 제기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마련된 특정 채널(기업 자체적으로 또는 제3자 메커니즘을 통해 마련되었는지 여부 포함)
 - 비즈니스 관계를 통해 이러한 채널의 가용성을 지원하는 절차
 - 제기된 문제를 추적 및 모니터링하는 방법과 채널의 효율성을 보장하는 방법
 - 소비자 및 최종 사용자가 고충 및 요구 사항을 제기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조나 절차를 인지 및 신뢰하고 있는지 여부와 이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보복으로부터 해당 채널의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보유하고 있는지
- 소비자 및 최종 사용자에 대한 중대한 영향, 위험 및 기회를 관리하기 위해 취한 조치(S4-4)
 - 소비자 및 최종 사용자에 대한 중대한 영향 해결 · 중대한 위험 관리 · 중대한 기회 추구를 위한 조치와 그 효과
 - 소비자 및 최종 사용자에 대한 특정 실제적 또는 잠재적 부정적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식별하는 프로세스
 - 기업이 소비자 및 최종 사용자에 대한 특정 중대한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조치를 취하는 방식(제품 디자인, 마케팅 또는 판매에 관한 자체 관행뿐만 아니라 보다 광범위한

산업 또는 관련 당사자들과의 협력을 통한 조치 포함)

- 중대한 부정적 영향이 발생한 경우 구제책을 제공하거나 이를 가능하게 하는 프로세스의 시행 및 결과의 유효성 및 효과성 보장
- 소비자 및 최종 사용자와 관련된 중요한 영향, 위험 및 기회를 관리하기 위한 실행 계획 및 자원에 대해 요약된 설명 제시
- 중대한 영향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설명
 - 소비자 및 최종 사용자에게 대한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예방 및 완화하기 위해 취해지거나 계획 중이거나 진행 중인 조치
 - 소비자 및 최종 사용자에게 대한 실제 중대한 영향과 관련하여 구제책을 제공하거나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와 그 방법
 - 소비자 및 최종 사용자를 위한 개선된 사회적 결과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시행 중인 추가 조치 또는 이니셔티브
 - 해당 조치 및 이니셔티브의 효과를 추적하고 평가하는 방법
- 중대한 위험 및 기회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설명
 - 소비자 및 최종 사용자에게 대한 영향과 의존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중대한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계획되거나 진행 중인 조치와 해당 조치의 효과를 추적하는 방법
 - 소비자 및 최종 사용자와 관련한 중대한 기회를 추구하기 위해 계획되거나 진행 중인 조치
- 마케팅, 판매 및 데이터 사용과 관련된 기업내 관행이 소비자 및 최종 사용자에게 중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유발하거나 기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취하는 조치
- 소비자 및 최종 사용자와 관련된 관련된 심각한 인권 문제 및 사건의 보고 여부

□ 지표 및 목표

○ 중대한 영향, 위험 및 기회 관리와 관련된 목표(S4-5)

- 소비자 및 최종 사용자에게 대한 부정적 영향 감소, 긍정적 영향 촉진, 중요한 위험 및 기회 관리와 관련한 기한이 있는 결과 지향적인 목표 공개
- 기업의 목표 설정 과정(소비자 및 최종 사용자 또는 그들의 대표와 직접 협력하는지

여부 및 그 방법 포함) 공개

- 목표 설정
- 성과 추적
- 성과를 통한 교훈이나 개선 사항 식별

2.5. ESRS2 거버넌스

1) G1 - 비지니스 행위(Business conduct)

□ 거버넌스

○ 행정, 감독 및 관리 기구의 역할(GOV-1)

- 업무 수행에 대한 리더십 공개 시, 다음 측면을 다룸
 - 업무 수행과 관련된 행정, 관리 및 감독 기관의 역할
 - 업무 수행 문제에 대한 행정, 관리 및 감독 기관의 전문 지식

□ 영향, 위험 및 기회 관리

○ 중요한 영향, 위험 및 기회를 식별하고 평가하는 프로세스에 대한 설명(IRO-1)

- 위치, 활동, 부문 및 거래를 포함하여 평가에 사용되는 모든 관련 기준 포함

○ 기업문화 및 업무수행방침(G1-1)

- 기업 문화를 확립 · 발전 · 촉진하기 위한 계획과 사업 수행 문제에 관한 정책
 - 기업 문화 육성 전략, 해당 전략의 실행 방법 및 결과 평가 방법 포함
 - 불법적인 행동이나 행동 강령 또는 유사한 문서에 위배되는 행동에 대한 우려 사항을 식별 · 보고 · 조사하기 위한 메커니즘에 대한 설명, 내부 또는 외부 이해관계자의 보고 수용 여부
 - 기업이 UN 부패 방지 협약에 부합하는 부패 방지 또는 뇌물 방지 정책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이를 명시하고 이를 실행할 계획이 있는지 여부와 시행 일정을 명시

- 내부 고발 보호를 포함하여 부정 행위를 보고하기 위한 보호 장치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
 - ① 비즈니스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도 비윤리적인 행동을 거부하는 직원을 보호
 - ② 관련법에 따라 제보자 자격을 부여받은 자사 근로자 및 비윤리적 행위 사건을 신고한 자사 근로자에 대한 보복 금지
 - 기업이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정책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 이를 명시하고 이를 실행할 계획이 있는지 여부와 실행 일정 명시
 - 기업이 비즈니스 행위(부패 또는 뇌물 수수 포함) 사건을 즉각적이고 독립적이며 객관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여부
 - 해당하는 경우, 동물 복지에 관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
 - 부패 · 뇌물 수수와 관련하여 가장 위험에 처한 기업 내 기능의 식별 또는 정의를 포함하여 업무 수행에 대한 조직 내 교육을 위한 기업의 전략
- 공급업체와의 관계 관리(G1-2)
- 공급업체와의 관계 관리 및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보 제시
 - 특히 공급망의 위험과 일반적인 지속 가능성의 맥락에서 공급업체와의 관계와 관련된 기업의 전략
 - 공급측 계약 파트너 선택 시, 사회적 · 환경적 기준을 고려하는지 여부와 고려 방법
 - 취약한 공급업체를 지원하고 사회적 · 환경적 성과를 개선하기 위해 구현된 기업의 관행
 -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연체금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 관행에 대한 설명 제공
- 부패 또는 뇌물수수 방지 및 적발(G1-3)
- 부패 및 뇌물 수수와 관련된 혐의 또는 사건을 예방 · 감지 · 조사 ·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에 대한 정보
 - 부패 · 뇌물 수수 혐의 또는 사건을 예방 · 탐지 ·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절차에 대한 개요
 - 조사관이나 조사위원회가 해당 문제와 관련된 경영진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는지 여부

안

- 행정, 관리 및 감독 기구에 결과를 보고하는 프로세스

○ 부패 또는 뇌물수수 방지 관련 교육

- 기업이 제공하거나 요구하는 부패·뇌물 방지 교육 프로그램의 성격, 범위 및 깊이
- 해당되는 경우 행정, 감독 및 관리 기구의 구성원과 관련된 정보

□ 지표 및 목표

○ 확인된 부패 또는 뇌물 수수 사례(G1-4)

- 보고 기간 동안 확인된 부패 또는 뇌물 수수 사건에 대한 정보 제공
 - 확인된 부패 또는 뇌물 수수 사건의 총 수와 성격
 - 부패방지법 및 뇌물방지법 위반에 대한 유죄판결 건수 및 벌금액
 - 보고 기간 동안 기업과 그 근로자를 상대로 제기된 부패 또는 뇌물 수수와 관련된 공개 법적 소송의 세부 사항 및 해당 사건의 결과
 - 부패 또는 뇌물수수 관련 사건으로 인해 직원이 해고되거나 징계된 것으로 확인된 사건의 수
 - 부패 또는 뇌물 수수 관련 위반으로 인해 종료되거나 갱신되지 않은 사업 파트너와의 계약과 관련된 사건의 수
- 기업이나 그 직원이 직접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만 가치 사슬 구성원과 관련된 사건이 포함

○ 정치적 영향력 및 로비 활동(G1-5)

- 중대한 영향과 관련된 로비 활동을 포함하여 정치적 영향력과 관련된 활동 및 약속에 대한 정보
 - 해당되는 경우, 이러한 활동의 감독을 담당하는 행정, 관리 및 감독 기구의 대표
 - 재정적 또는 현물적 정치 기부
 - ① 관련 국가 또는 지역, 수혜자/수혜자 유형별로 집계된 해당 기업의 직접 및 간접적 정치 기부금의 총 금전적 가치

- ② 적절한 경우, 현금 기부의 금전적 가치를 추정하는 방법
 - 로비 활동에서 다루는 주요 주제와 이에 대한 기업의 주요 입장
 - 기업이 EU 투명성 등록부(Transparency Register) 또는 회원국의 동등한 투명성 등록부에 등록된 경우, 해당 등록부의 이름 및 식별 번호
- 지불 관행(G1-6)
 - 비즈니스 파트너, 특히 중소기업(SME)에 대한 지급 관행 관련 정보 제공
 - 계약상 또는 법정 지급 기간이 계산되기 시작한 날부터 기업이 송장을 지급하는 데 소요되는 평균 시간(일수)
 - 공급자의 주요 카테고리별 기업의 표준 지불 조건(일수) 및 이러한 표준 조건과 일치하는 지불 비율에 대한 설명
 - 연체금 보고 기간 동안의 법적 절차(현재 진행 중인) 건수
 - 충분한 상황정보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보완 정보

3.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기후공시 규칙

- 2024년 3월 6일, SEC는 기업이 기업공개(IPO)를 포함한 정기보고서 및 증권신고서에 특정 기후 관련 정보를 제시하도록 요구하는 최종 규칙(The Enhancement and Standardization of Climate-Related Disclosures for Investors)을 발표
 - 최종 규칙의 목적은 투자자를 보호하고 공정하고 질서 있고 효율적인 시장을 유지하며, 투자 및 투표 결정에 도움이 되는 상세하고 표준화된 기후 관련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것임
 - 최종 규칙에서의 ‘중대성’이란, 특정 기업에 대한 투자 및 의결권 결정에 대한 정보의 중대성을 의미하며, 해당 결정 외의 기후 관련 문제에 대한 정보의 중요성을 의미하지 않음
- Regulation S-X(재무제표 공시 요구사항)에 따라 기업은 다음의 기후 관련 정보를 재무제표의 주석으로 제공하며, 기존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요건이 적용됨
 - 심각한 기상 이변 현상(severe weather events) 및 기타 자연 현상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 탄소 상쇄(carbon offsets) 및 재생 에너지 인증(Renewable Energy Certificate or Credit; REC)
- 심각한 기상 이변 현상 및 기타 자연 현상, 또는 공시된 기후 관련 지표 또는 전환 계획이 재무적 추정 및 가정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

□ Regulation S-K(정기보고서 및 증권신고서 공시 요구사항)에 따라 재무제표 외에 요구되는 공시는 다음과 같음

- 전략 - 기후 관련 중대한 위험과 기업의 전략 · 사업모형 · 전망에 기후 관련 위험이 미치는 영향
- 거버넌스 - 기후 관련 위험에 대한 이사회 및 경영진의 감독
- 위험 관리 - “중대한” 기후 관련 위험의 식별, 평가 및 관리를 위한 프로세스
- 지표 및 목표 - 기후 관련 지표 및 목표
- GHG 배출량 - 상장 대기업(Large Accelerated Filers; LAFs) 및 상장 증권 기업(Accelerated Filers; AFs)의 경우(SRCs 및 EGCs 제외), 단계적으로 중요한 Scope 1 및 Scope 2 GHG 배출량 공시(단, Scope 3 GHG 배출량 공시는 요구하지 않음)

□ 대상 기업 및 공시 일정

- 재무제표 공시는 신성장기업(Emerging Growth Companies; EGCs), 소규모 공시 기업(Smaller Reporting Companies; SRCs) 및 미국에 상장한 해외기업(foreign private issuers)을 포함한 모든 기업(자산 유동화 기업 제외)에 적용
- GHG 배출량 공시의 경우, LAFs와 AFs (SRC 및 EGCs 제외)에게만 적용
- 기업 규모 및 공시 요구사항에 따라 2025년 회계연도부터 적용(2026년 공시)

표 1. 기업 유형에 따른 SEC 기후공시 일정

기업 유형	중대한 지출, 영향, GHG 공시를 제외한 재무제표 공시 및 다른 모든 공시	중대한 지출 및 영향에 대한 공시	Scope 1 & 2 GHG 배출량 공시	Scope 1 & 2 GHG 배출량 공시에 대한 인증
상장 대기업(LAFs)	2026년 공시 (FY2025)	2027년 공시 (FY2026)	2027년 공시 (FY2026)	제한적 인증 - 2030(FY2029) 합리적 인증 - 2034(FY2033)
SRC 및 EGC를 제외한 상장 중견기업(AFs)	2027년 공시 (FY2026)	2028년 공시 (FY2027)	2029년 공시 (FY2028)	제한적 인증 - 2032(FY2031) 합리적 인증 요구되지 않음
소규모 기업 (Nonaccelerated filer), SRCs 및 EGCs	2028년 공시 (FY2027)	2029년 공시 (FY2028)	요구되지 않음	요구되지 않음

□ SEC 기후공시 의무화 제도 관련 법적 진행 상황

- 2024. 3. 6일 SEC의 최종 규칙 승인 이후 정치권과 이해관계 그룹 간의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고 있으며, 관련 법정 소송도 진행 중이어서 미국 내 기후공시의 본격적인 도입 전망이 불확실한 혼란 상태에 있음
 - Liberty Energy Inc.와 Nomad Proppant Services LLC는 2024. 3. 8일 제5연방항소 법원에 SEC 기후공시에 대한 시행중지명령(administrative stay)을 요청하였으며, 2024. 3. 15일 제5연방항소법원은 이를 받아들임(이후 2024. 3. 22일 제5연방항소법원은 시행중지명령을 해제함)
 - 2024. 3. 6일~14일 사이에 SEC 기후공시를 둘러싼 9건 이상의 소송이 제2, 제5, 제6, 제8, 제11연방항소법원 등 6개 이상의 연방법원에 제기되었고, 2024. 3. 21일 광역소송 사법위원회(JPML)는 이를 병합하여 제8연방항소법원에서 심리하도록 함
 - 2024. 3. 26일 Liberty Energy Inc.와 Nomad Proppant Services LLC는 제8연방항소 법원에 SEC 기후공시의 시행중지명령을 요청하는 서한을 제출하였으며, 2024. 3. 26일 미국 상공회의소(USCC), 텍사스주 비즈니스 협회, 롱뷰 상공회의소는 제8연방항소 법원에 사법적 검토가 있을 때까지 SEC 기후공시 시행의 유예를 요청함
- 2024. 4. 4일 SEC는 거래소법 25조 및 행정절차법 705조에 따라 제8연방항소법원에 병합된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기후공시 시행을 보류하기로 하였으나, 이 결정이 기후공시

를 폐기하는 것은 아니란 점을 명확히 밝힘

- 2024. 4. 10일 국회에 제출된 의회심사법(Congressional Review Act)에 따라 무효화 될 가능성 또한 존재함

1) 재무제표 공시(Regulation S-X)

- SEC는 재무 영향 지표에 대한 공시를 요구하지 않으며 대신, 심각한 기상 현상(severe weather events) 및 기타 자연 조건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개별적인 실제 지출 비용(expenditure effects)을 공시하도록 요구
- 심각한 기상 이변 현상 및 기타 자연 현상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공시
 - “허리케인, 토네이도, 홍수, 가뭄, 산불, 극한 기온 및 해수면 상승”을 포함한 심각한 기상 이변 현상 및 기타 자연 현상의 “결과”로 인해 발생하는 자본화 금액(capitalized costs), 지출 비용(expenditures expensed), 요금(charge) 및 손실을 공시
 - 심각한 기상 이변 현상 및 기타 자연 현상으로부터 발생하는 ① 발생 및 손실로 지출되는 비용(“손익계산서(income statement) 영향”)과 ② 자본화된 원가 및 비용(“재무상태표(balance sheet) 영향”)의 두 가지 카테고리 구분
 - 손익계산서 영향
 - 영업 복원(restore)
 - 사건 또는 기타 자연 현상에 영향을 받는 자산 또는 영업의 재배치(relocate)
 - 영향을 받은 자산의 폐기(retire)
 - 영향을 받은 자산의 수리(repair)
 - 영향을 받은 자산의 손상차손(impairment loss) 인지
 - 심각한 기상 이변 현상 및 기타 자연 현상이 비즈니스 영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응
 - 재무상태표 영향
 - 영업 복원

- 영향을 받은 자산의 폐기
- 영향을 받은 자산의 교체 또는 수리
- 영향을 받은 자산의 손상비용(impairment charge) 인지
- 심각한 기상 이변 현상 및 기타 자연 현상이 비즈니스 영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응
- 영향을 받는 각 재무제표 항목에서 인식된 회수 금액(예: 보험금)을 별도로 명시

○ 공시기준

- 각 카테고리의 총액이 해당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재무제표 주석에 공시
 - 손익계산서 영향: 심각한 기상 이변 현상 및 기타 자연 현상으로 인해 발생한 지출 비용 및 손실의 총액이 해당 회계연도의 세전 소득(손실)의 절댓값의 1% 이상인 경우 (또는 \$100,000 이상인 경우)
 - 재무상태표 영향: 심각한 기상 이변 현상 및 기타 자연 현상에 의해 해당 회계연도 말, 인정된 자본화 금액 및 요금의 절댓값의 총액이 주주 지분(stockholders' equity) 또는 결손금의 절댓값의 1% 이상인 경우(또는 \$500,000 이상인 경우)
- 즉, 세전 소득 또는 손실의 절댓값의 1%가 \$100,000 미만에 해당하는 기업은 심각한 기상 현상 및 기타 자연 조건으로 인해 발생한 지출 비용 및 손실의 총액이 \$100,000 이상이 될 때까지 공시할 필요가 없음
- 마찬가지로, 주주 지분 또는 적자의 절댓값의 1%가 \$500,000 미만에 해당하는 기업은 심각한 기상 현상 및 기타 자연 조건으로 인해 발생한 자본화 금액 및 요금의 총액의 절댓값이 \$500,000 이상이 될 때까지 공시할 필요가 없음

○ 귀속 원칙(attribution principle)

- 기업이 자본화 금액, 지출 비용, 요금 또는 손실이 심각한 기상 현상 또는 기타 자연 조건의 "결과"인지 여부를 결정
- 심각한 기상현상 또는 기타 자연 조건이 지출을 유발하거나 회수를 받는 “중요한” 요인인 경우 공시를 요구

□ 탄소 상쇄 및 REC

○ 탄소 상쇄 및 REC의 정의

- 탄소 상쇄: 기업의 GHG 배출을 상쇄하기 위해 계산 및 추적되는 방식의 GHG 배출의 감축(reduction), 제거(removal) 또는 방지(avoidance)
- REC: 생산 및 전력망으로 전달되는 재생 가능 전기의 megawatt-hour(1 MWh 또는 1,000 kilowatt-hours)를 나타내는 크레딧 또는 인증서
- 탄소 상쇄 또는 REC의 사용이 공시된 기후 관련 지표 또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의 중요한 구성 요소인 경우 이에 대한 다음의 재무제표 공시를 제시
 - 총액:
 - 회계연도 동안 지출된(expensed) 탄소 상쇄 및 REC 금액
 - 회계연도 동안 자본화된(capitalized) 탄소 상쇄 및 REC 금액
 - 회계연도 동안 자본화된 탄소 상쇄 및 REC에서 발생한 손실액
 - 자본화된 금액의 시작 및 종료시 잔액
 - 비용화되거나 자본화되거나 손실이 인식된 금액의 손익계산서 및 재무상태표의 항목
 - 탄소 상쇄 또는 REC에 대한 회계 정책

□ 심각한 기상 이변 현상 및 기타 자연 현상, 또는 공시된 기후 관련 지표 또는 전환 계획이 재무적 추정 및 가정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

- 사건, 현상, 목표 또는 전환 계획이 재무제표에 사용된 추정 및 가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성적인 설명 제공
 - 예를 들어, SEC 신고 시 특정 기후 목표를 공시하는 기업은 GHG 배출을 줄이기 위해 특정 자산을 조기에 폐기할 계획을 세울 수 있으며, 공시된 기후 목표의 결과로 해당 자산의 유효 수명에 중대한 변화가 있는 경우, 공시가 요구됨
 - 그러나 추정치와 가정이 실질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시가 요구되지 않음

2) 재무제표 외 공시(Regulation S-K)

□ 기후 관련 위험의 공시

- 단기적(향후 12개월) 및 장기적(향후 12개월 이후)으로 기업의 “비즈니스 전략(business strategy), 영업 결과(results of operations) 또는 재무 상태(financial condition)”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거나 합리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특정 기후 관련 위험을 공시
- <표 2>는 SEC 기후공시에 따른 기후 관련 위험의 정의를 나타내고 있음

표 2. SEC 기후공시에 따른 기후 관련 위험의 정의

구분	정의
기후 관련 위험	- 비즈니스, 영업 결과 또는 재무 상태에 대한 기후 관련 상황 및 사건의 실제 또는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
물리적 위험	- 기업의 비즈니스 영업에 대한 급성 및 만성 위험을 모두 정의에 포함 - 기업의 비즈니스 대상의 영업에 대한 급성 또는 만성 위험은 정의에 포함되지 않음 - 급성 위험 : 사건에서 비롯된 위험으로, 허리케인, 홍수, 토네이도 및 산불과 같은 단기적인 심각한 기상 이변 현상과 관련 - 만성 위험 : 지속적인 고온, 해수면 상승, 가뭄과 같은 장기적인 기상 패턴의 결과 뿐만 아니라, 농경지 경작성 감소, 토지 거주 가능성 감소, 담수 가용성 감소와 같은 관련 영향의 결과로 사업이 직면할 수 있는 위험
전환 위험	- 기후 관련 위험의 완화 또는 적응을 다루기 위한 규제, 기술 및 시장 변화가 기업의 비즈니스, 영업 결과 또는 재무 상태에 미치는 실제 또는 잠재적 부정적인 영향으로 정의 - 가치 사슬에 대한 영향은 정의에 포함되지 않음 - 비배타적 목록(Non-exclusive Lis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 관련 법률 또는 정책의 변화로 인한 비용 증가 • 탄소 집약적 제품에 대한 시장 수요 감소로 인해 해당 제품의 판매, 가격 또는 이익 감소 • 자산의 평가 절하 또는 폐기, • 법적 책임 및 소송 방어 비용의 위험 • 신기술 채택과 관련된 경쟁 압력 • 시장 행동 변화 • 소비자 선호도 또는 행동 변화를 촉발할 수 있는 평판 영향(등록자의 고객 또는 비즈니스 대상으로부터 발생하는 영향 포함) • 기업의 행동 변화

- 식별된 기후 관련 위험이 물리적 위험인지 또는 전환 위험인지 구분하고, 제시된 위험의 성격과 위험에 노출된 기업의 범위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해당하는 경우 기업이 공개해야 하는 비배타적 공시 목록 제공
 - 물리적 위험: 급성 또는 만성 위험으로 분류될 수 있는지 여부, 지리적 위치 및 물리적 위험에 영향을 받는 자산, 영업 또는 프로세스의 성격
 - 전환 위험: 규제, 기술, 시장(소비자, 비즈니스 대상 및 투자자 선호도 변화 포함) 또는

기타 전환 관련 요인과의 관련 여부와 이러한 요인이 기업에게 영향을 미치는 방식

- 이미 특정 분석이나 실행을 수행하고 있거나 특정 위험이 기후 관련이라는 판단을 내린 경우에만 공시하며, (가치 사슬과 관련된 기후 관련 위험이 기업의 비즈니스 · 영업결과 · 재무상태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쳤거나 합리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인 가치 사슬에 대한 부정적인 기후 관련 영향은 공시할 필요 없음
- GHG 배출량 감축 공약을 한 관할권에서 중요한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이 공약 이행과 관련된 중대한 전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지 여부를 고려(즉 해당 관할권에서 활동하는 기업은 투자자에게 이러한 특정 유형의 전환 위험에 대해 공시해야 할 수도 있음)
- 기후 관련 기회
 - 최종 규칙은 기후 관련 기회를 언급하지 않으므로 해당 정의를 포함하지 않으며, 기후 관련 기회 공시를 다른 자발적 공시와 동일하게 취급
 - 그러나, 해당 조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은 중요한 기후 관련 위험에 관한 공시 외에도 추구하고 있거나 합리적으로 추구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중요한 기후 관련 기회에 대한 공시를 포함하도록 선택할 수 있음
- 시간 규모
 - 중대한 영향을 미쳤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모든 기후 관련 위험을 설명할 때, 그러한 위험이 단기적(향후 12개월) 및 장기적(향후 12개월 이후)으로 나타날 합리적 가능성에 대해 설명
- 중대성 결정
 - 중대성에 대한 전통적 개념과 일관됨
 - 즉, 위원회의 정의 및 대법원 판례에 따라, 합리적인 투자자가 유가증권의 매매 또는 투표 결정 시, 이를 중요하게 고려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거나, 공시의 누락이 이용 가능한 정보의 조합을 크게 변경할 경우 중대한 문제로 판단

□ 전략 · 사업 모형 · 전망에 대한 기후 관련 위험의 중대한 영향 공시

- 식별된 기후 관련 위험이 기업의 전략 · 사업모형 · 전망에 미치는 실제 및 잠재적 “중대한” 영향을 설명
 - 기후 관련 위험으로 인한 중대한 영향의 비배타적 목록 제시(해당되는 경우, 다음 목록에

대한 영향을 포함하여 공개하며, 이러한 영향의 전부 또는 일부만 공개하도록 의무화하지는 않음)

- 비즈니스 영업(영업 유형 및 위치 포함)
 - 제품 또는 서비스
 - 공급업체, 구매자 또는 중요한 계약의 대상(알려진 또는 합리적으로 이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 기후 관련 위험을 완화하거나 이에 적응하기 위한 활동(새로운 기술 또는 프로세스의 도입 포함)
 - 연구 개발을 위한 지출
- 기업의 사업전략 · 영업결과 · 재무상태에 미치는 기후 관련 영향이 중대하지 않은 경우, 이를 공시할 필요가 없으며, 반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후 관련 위험을 식별하였으나, 최종 규칙에 그 영향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 영향을 공개
- 중대한 영향을 전략 · 재무계획 · 자본배분의 일부로 고려하는지 여부 및 그 방법
- 설명된 기후 관련 위험의 영향이 기업의 사업 모형 또는 전략에 통합되었는지 여부 포함 (기후 관련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자원 사용 여부 및 방법 포함)
 - 설명된 전환 계획에 언급된 목표가 기업의 사업 모형 또는 전략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설명
- “경영진의 평가”에서, 공시된 중대한 기후 관련 위험에 대한 “완화 또는 적응 활동의 직접적인 결과”에 해당하는 중대한 지출과 재무적 추정 및 가정에 대한 중대한 영향을 정량적 및 정성적으로 설명
- 기후 관련 위험 완화 또는 적응을 목적으로 회계연도 동안 발생한 자본화 및 비용화된 실제 중대한 지출을 포착하기 위한 목적
 - 중요한 기후 관련 위험(즉, 기업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쳤거나 미칠 가능성이 합리적으로 높은 것으로 기업이 식별한 기후 관련 위험)에 대해서만 논의해야 하며, '연결 재무제표'가 아닌 기업의 '비즈니스 · 영업결과 · 재무상태'에 대한 영향을 설명
 - 공시 요구 사항을 명확한 기준이 아닌 중대성에 적용하며, "경영진의 평가"에서 “완화 또는 적응 활동의 직접적인 결과”인 중요한 지출액으로 공시를 제한

□ 전환 계획(Transition Plan)

- 기업이 중대한 전환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계획을 도입한 경우, 전환 계획(기후 관련 위험을 줄이기 위한 기업의 전략 및 실행 계획)을 설명
 - 전환 계획에 따른 조치가 비즈니스 · 영업결과 · 재정상태에 미친 영향과 계획에 따른 진행 상황을 설명하고, 매년 연차보고서를 통해 업데이트
 - 회계연도 동안 전환 계획에 따른 조치에서 직접적으로 발생한 중대한 지출과 재무적 추정 및 가정에 대한 중대한 영향(예: 기후 관련 R&D 지출)을 정량적 · 정성적으로 공시에 포함
 - 기업은 중대한 지출의 성격이나 재무적 추정 또는 가정에 대한 중대한 영향의 성격,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공시된 계획에 따른 조치로부터 직접적으로 발생했는지 정성적으로 설명할 수 있음
 - 해당 기간 동안 공시된 전환 계획에 따른 조치와 관련된 지출이 중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공시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개별적 지출이 중요하지 않을 경우, 계획에 따른 전체 전환 조치와 관련된 전체 지출의 중대성을 고려해야 하며, 해당되는 경우 적절한 공시를 제공해야 함(예를 들어, 개별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일련의 지출은 계획에 따른 동일한 조치 또는 관련 조치의 결과일 수 있으며, 이러한 지출이 전체적으로는 중요할 수 있음)
 - 기업 내 자체적인 추진의지 또는 중요한 사업을 운영하는 관할권의 약속에 따른 GHG 감축 계획이 전환 계획에 포함될 수 있음
 - 최종 규칙은 기업이 전환 계획을 채택하도록 의무화하지 않으며, 계획을 갖고 있지 않은 기업의 경우에는 공시가 필요하지 않음
 - 물리적 위험에 대한 언급은 제외되었으나, 기업은 위험 관리 공시의 일부로 중대한 물리적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을 공개해야 함

□ 시나리오 분석

- 기업이 시나리오 분석을 사용하여 기후 관련 위험이 비즈니스 · 운영결과 · 재정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분석 결과에 기반하여 기후 관련 위험이 비즈니스 · 운영결과 · 재정 상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하는 경우, 시나리오 분석에

사용된 매개 변수, 가정 및 분석 선택 사항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재무적 영향을 포함한 예상되는 중대한 영향을 설명

- 최종 규칙은 기업이 시나리오 분석을 수행하도록 요구하지 않으며, 특정 위험 관리 모델을 명시하지 않음
- 즉, 기업이 중요한 기후 관련 위험을 고려하기 위해 시나리오 분석을 수행하기로 결정했는지 여부에 따라 공시를 요구함으로써 기업은 자신의 특정 산업 또는 비즈니스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기후 시나리오 모델 또는 기후 위험 평가 방식 선택 가능

□ 내부 탄소 가격

- 기업의 내부 탄소 가격의 책정이 기후 관련 위험 평가 및 관리에 중요한 경우, 이에 대한 특정 정보 - CO₂e의 메트릭 톤(metric ton)당 가격 및 총 가격(해당하는 경우, 예상되는 총 가격 변화 포함)을 공개
 - 둘 이상의 내부 탄소 가격을 사용하는 경우 각 내부 탄소 가격에 대해 요구되는 공시를 제공하고 다른 가격을 사용하는 이유 설명
 - 공시된 내부 탄소 가격의 사용과 관계된 기업의 운영 범위가 최종 규칙에 따른 기업의 GHG 배출량 계산시 사용된 조직 경계와 다른 경우, 이 차이점에 대해 간략히 설명
 - 기업이 내부 탄소 가격을 공개해야 하는 경우, 중요한 기후 관련 위험을 평가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설명하기 위해 내부 탄소 가격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설명 가능

□ 거버넌스

- 이사회 감독의 공시(Disclosure of Board Oversight)
 - 기후 관련 위험에 대한 이사회 감독에 대해 설명
 - 해당되는 경우, 기후 관련 위험의 감독을 담당하는 이사회 위원회 또는 분과 위원회의 식별과 이사회 또는 해당 위원회 또는 분과 위원회가 그러한 위험에 대해 정보를 얻는 절차(논의의 빈도는 제외)에 대해 설명
 - 공시된 지표 또는 목표가 있거나, 공시된 전환 계획이 있는 경우, 이사회가 지표 또는 목표나 전환 계획에 대한 진행 상황을 감독하는지 여부와 그 방법을 공개

○ 경영진 감독의 공시(Disclosure of Management Oversight)

- 기업이 “중요한” 기후 관련 위험을 평가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 경영진의 역할을 설명
- 해당되는 경우, 다음의 비배타적 공시 항목 목록을 다루도록 명시
 - 기후 관련 위험을 평가하고 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영진의 직책(management positions) 또는 위원회의 존재 여부 및 누구인지와, 해당 직책의 소유자 또는 위원회 구성원의 관련 전문 지식(전문 지식의 성격을 충분히 자세히 설명)
 - 해당 직책 또는 위원회가 기후 관련 위험을 평가하고 관리하는 프로세스
 - 해당 직책 또는 위원회가 해당 위험에 대한 정보를 이사회나 위원회 또는 분과 위원회에 보고하는지 여부
- 비배타적 공시 목록은 기후 관련 위험에 대한 경영진의 감독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도출을 통해 보일러플레이트(boilerplate) 공시 경향을 완화하는 동시에, 중요한 기후 관련 위험을 평가하고 관리하는 경영진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므로써 기업에게 특정 거버넌스 구조에 맞춰 공시를 제공할 수 있는 유연성 부여
- 최종 규칙은 기업이 중대한 기후 위험을 식별했을 경우에만 공시를 요구하며, 투자자가 전반적인 투자 목표와 위험 허용 범위를 고려하여 기업의 감독 프로세스 및 메커니즘에 대해 더 나은 정보에 입각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기존 감독 관행에 대한 공시를 유도
- 기후 관련 위험에 대한 관리 감독을 행사하지 않는 기업이 정보를 공시하도록 요구하지 않음

□ 위험 관리 (Risk Management Disclosure)

- 기업이 “중대한” 기후 관련 위험을 식별, 평가 및 관리하기 위해 보유한 모든 프로세스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며, 중요한 기후 관련 위험을 식별하지 않은 경우 공시 불필요
- 해당되는 경우, 기업은 중대한 물리적 위험 또는 전환 위험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합리적 가능성이 있는지를 식별하는 방법과 특정 위험을 완화, 수용 또는 적응할지 여부를 어떻게 결정하는지, 그리고 기후 관련 위험 해결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부여하는지 다루어야 함
- 기업이 중대한 기후 관련 위험을 관리하는 경우, 중대한 기후 관련 위험을 식별 · 평가 · 관리하기 위해 설명한 프로세스가 기업의 전체 위험 관리 시스템이나 프로세스에 통합되었는지 여부와 방법을 공개

□ 지표 및 목표

- 기후 관련 목표가 비즈니스 · 운영결과 · 재정상태에 실질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쳤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합리적인 경우, 모든 기후 관련 목표를 공개
 -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진행 상황과 그러한 진행 상황이 어떻게 달성되었는지 공개하며, 기업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해당 연도 동안 취한 조치를 설명하고, 매 회계연도마다 이를 업데이트
 - 목표 또는 이를 달성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의 직접적인 결과에 해당하는 기업의 비즈니스 · 운영결과 · 재무 상태에 대한 중대한 영향에 대한 논의를 포함
 - 이 논의에는 지표나 목표 또는 이를 달성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의 직접적인 결과에 해당하는 재무적 추정 및 가정에 대한 모든 중대한 지출 및 중대한 영향에 대한 정량적, 정성적 공시를 포함
 - 목표의 중대한 영향을 이해하기 위해 공시해야 하는 정보 목록에 "배출"을 포함하지 않음
 - 기업이 배출 감소를 위한 목표를 설정한 경우, 목표에 포함된 활동 범위를 설명할 때 이를 공시
- 해당되는 경우 다음 사항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여 목표의 중대한 영향(또는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중대한 영향)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추가 정보나 설명을 제공
 - 목표에 포함된 활동 범위
 - 측정 단위(해당 목표가 절대적인지 또는 집약도 기반인지는 측정 단위를 통해 도출 가능)
 - 목표 달성을 위해 정의된 기간과 그 기간이 기후 관련 조약, 법률, 규정, 정책 또는 조직에 의해 설정된 하나 이상의 목표에 기반하고 있는지 여부
 - 기업이 목표에 대한 기준을 설정한 경우, 정의된 기준 기간 및 진행 상황을 추적하는 수단
 - 기업이 기후 관련 목표를 어떻게 달성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정성적 설명

□ GHG 배출량

- 투자자들은 기업의 GHG 배출량(Scope 1 및 2 배출량 포함)에 대한 정보를 전환 위험에

대한 기업의 노출도를 측정하는 주요 지표일 뿐만 아니라, 전환 위험 관리를 평가하고 기업의 기후 관련 지표 또는 목표를 향한 진행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유용한 수단으로 간주

- GHG 배출량 정보는 기업의 비즈니스 · 운영결과 · 재무상태 · 전망에 대한 전환 위험과 관련 지표 및 목표의 전반적인 영향을 이해하는데 필수적
- Scope 1, 2 배출량 중 하나 또는 둘 다 중요하며, 기업이 LAF 또는 AF인 경우, Scope 1 또는 2 배출량 지표를 공시
 - 즉, 해당 배출이 중요한 경우 LAF는 Scope 1 배출량 또는 Scope 2 배출량 지표를 공시
 - SRC 또는 EGC가 아닌 AF는 GHG 배출량 공시를 단계적으로 진행
- Scope 1, 2 배출의 중대성은 전통적인 중대성 개념을 따라 결정
 - 즉, 중대성은 단순히 배출량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며, 연방 증권법(Federal securities laws) 및 Regulation S-K에 따른 다른 중대성 결정과 마찬가지로 합리적인 투자자가 정보 항목(즉, 기업의 Scope 1, 2 배출량)의 공시가 투자 또는 투표 결정을 내릴 때 중요하며, 그러한 공시의 생략이 이용 가능한 정보의 전체 조합을 크게 변경한 것으로 간주할 경우에 근거
 - 기업의 Scope 1, 2 배출량은 투자자가 해당 배출량이 단기 또는 장기적으로 기업의 비즈니스 · 운영결과 · 재무상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또는 합리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전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지 이해하기 위해 계산 및 공시가 필요하기 때문에 중요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외국법이나 주법이 기업에게 GHG 배출량 지표를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기업은 중대한 전환 위험에 직면하게 되며 해당 배출량은 현재 또는 세금 인상이나 재정적 패널티를 통해 추가적인 규제 부담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업은 그러한 배출량 지표의 중대성을 고려해야 함
 - 기업이 공시해야 하는 전환 계획이나 목표 달성을 향한 진전을 이루었는지 여부를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업의 GHG 배출량 계산 및 공시가 필요한 경우 GHG 배출량은 중요할 수 있음
 - 반면, 기업이 중대한 전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해서 반드시 Scope 1, 2 배출이 해당 기업에게 실제로 중요하다고 볼 수 없음

- 예를 들어, 기업은 GHG 배출 이외의 이유(직접적으로 배출량 기준이 아닌 사용하는 기술을 기준으로 제품의 판매를 제한하는 새로운 법이나 규정)로 증대한 전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 그러한 위험은 Scope 1, 2 배출량 정보의 공시를 요구하지 않을 수 있음
- 데이터가 중요하지 않은 경우, GHG 배출량 데이터 공시를 요구하지 않음
- GHG 배출량 지표(Metric)의 제시, 기본 방법론 및 가정에 대한 공시
 - 설명된 배출량 Scope를 CO₂e 단위의 총합으로 공시
 - Scope 1, 2 배출량을 공시해야 하는 기업은 구매하거나 생성된 상쇄의 영향을 제외한 총 배출량을 공시하며, 공시된 배출량의 구성 가스가 개별적으로 중요한 경우, 다른 가스 와 분리된 구성 가스도 공시
 - 예를 들어, 기업이 공시된 GHG 배출량 감소 목표에 메탄과 같은 특정 구성 가스를 포함시켰다면, 사업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러한 구성 가스는 중요할 수 있으며, 따라서 이를 분리하여 공시
 - Scope 1, 2 배출량 계산 시 사용되는 조직 경계와 해당 경계를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방법론 공시
 - 조직 경계가 기업의 연결 재무제표에 포함된 회사 및 운영의 범위와 실질적으로 다른 경우 합리적인 투자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이러한 차이에 대해 간략히 설명
 - 배출원과 배출원의 분류 방식을 포함하여 사용되는 운영 경계에 대한 설명
 - GHG 배출량 보고에 사용되는 프로토콜 또는 표준에 대한 간략한 설명
 - 기업이 GHG 프로토콜의 기업 회계 및 보고 표준, EPA 규정, 해당 ISO 표준, 또는 다른 표준에 따른 방식을 사용하여 GHG 배출 지표를 계산했는지 여부를 공시
 - GHG 배출량 계산 방식(위치 기반 방법 또는 시장 기반 방법), 사용된 배출 계수의 유형 및 출처(예: 다양한 연료 유형의 고정 연소 또는 이동 연소에 대한 EPA의 배출 계수 등), GHG 배출량을 계산하는 데 사용된 계산 도구의 출처(예: GHG 프로토콜에서 제공하거나 ISO 표준에 따른 GHG 배출량 계산 등) 공시
 - 기업이 추정치의 기초가 되는 가정과 사용 이유를 설명하는 한, GHG 배출량 공시 시 합리적인 추정치를 사용할 수 있음
- GHG 배출량 공시 요구사항에서의 제외

- 현재 기업이 Scope 3 배출량을 공시하도록 요구하지 않음
- Scope 1 및 2 배출량을 포함하여 GHG 배출량을 공시해야 하는 모든 요구 사항에서 SRC 및 EGC를 면제
- 기업이 17 CFR 229.1505(a)(1)에 따라 Scope 1 및 2 배출량 공시 시, 분뇨 관리 시스템 (manure management system)의 GHG 배출량을 포함할 필요가 없음

4. 캘리포니아 기후법안

- 2023년 10월 7일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주지사 Gavin Newsom의 승인으로 일정 수준의 대기업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를 의무화하고, 공시대상에 Scope 3를 포함하는 내용의 기후 기업 데이터 책임법(SB 253 법안)과 기업의 기후관련 재무위험 대응을 위한 재무 위험 보고서 공시를 의무화 하는 내용의 기후 관련 재무 위험법(SB 261 법안)이 통과됨
- 연간 총 수입이 10억 달러를 초과하고, 캘리포니아에서 사업을 하는 모든 기업(유한회사, 기업, 유한책임회사 및 기타 사업체)은 2026년부터 매년 Scope 1과 Scope 2 GHG 배출량을 공시하고, Scope 3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7년부터 매년 공시하며, 독립적인 제3자 검증 제공자에 의해 공시내용에 대해 검증을 받아야 함
- 기업은 늦어도 2026년 1월 1일까지 그리고 그 이후 2년마다 기업의 기후 관련 재무 위험과 이 위험을 줄이고 적응하기 위해 채택한 조치를 공개하는 '기후 관련 재무 위험 보고서'를 준비하고, 자체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대중에게 제공

1) SB-253 '기후 기업 데이터 책임법(Climate Corporate Data Accountability Act)'

- 일정 수준 이상 기업의 GHG 배출 데이터 공시 의무(Scope 3 포함)
- 대상 기업
 - 연간 매출이 10억달러(\$1,000,000,000)를 초과하며(이전 회계연도 매출액 기준), 캘리포

니아에서 사업을 하는 모든 기업(본 주, 미국의 다른 주 또는 컬럼비아 특별구의 법률 또는 미국 의회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유한회사, 회사, 유한책임회사 또는 기타 사업체)

□ GHG 배출량 공시(Scope 1, 2, 3 배출량 공시)

- 2026년부터 매년 이전 회계연도에 대한 Scope 1, 2 GHG 배출량 공시
- 2027년부터 Scope 3 배출량 공시(Scope 1, 2 배출량 공시 후, 180일 이내)
- GHG 프로토콜 표준 및 지침에 따른 GHG 배출량 측정 및 보고(예: 온실가스 프로토콜 기업 회계 및 보고 표준, 세계자원연구소(World Resources Institute)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세계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World Business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가 개발한 온실가스 프로토콜 기업 가치 사슬(Scope 3))

□ 제3자 검증

- Scope 1, 2 GHG 배출량은 2026년부터 제한적 검증(limited assurance) 수준으로, 2030년부터는 합리적 검증(reasonable assurance) 수준으로 수행
- Scope 3 배출량에 대한 검증업무는 2030년부터 제한된 검증(limited assurance) 수준에서 수행
- 제3자 검증 제공자는 GHG 배출량 측정, 분석, 보고 또는 검증에 대한 상당한 경험과 전문 표준, 해당 법률 및 규제 요구사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충분한 역량과 능력을 보유해야 하며, 보고 주체인 기업과 그 계열사와 관련하여 상황에 적합하고 독립적인 보고서를 발행해야 함

□ 위반시 처벌

- 미제출, 지연 제출 또는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주 위원회에 의한 행정 처벌(행정 벌금은 보고 연도에 \$500,000를 초과할 수 없음)
- Scope 3 배출량 보고의 경우, 2027년에서 2030년 사이의 처벌은 미제출에 대해서만 발생하며,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선의로 공시된 정보는 허위 진술에 대한 처벌을 받지 않음

2) SB-261 ‘Greenhouse gases: climate-related financial risk’

□ 기업의 기후관련 재무위험 대응을 위한 재무 위험 보고서 공시 의무

□ 대상 기업

- 연간 매출이 5억 달러(\$500,000,000)를 초과하며(이전 회계연도 매출액 기준), 캘리포니아에서 사업을 하는 모든 기업(본 주, 미국의 다른 주 또는 컬럼비아 특별구의 법률 또는 미국 의회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유한회사, 회사, 유한책임회사 또는 기타 사업체)
- 단, 캘리포니아 주 보험부의 규제를 받거나 다른 주에서 보험사업을 하는 사업체는 포함되지 않음

□ 보고 주기 및 방법

- 2026년 1월 1일(또는 그 이전)까지 첫 보고, 이후 2년마다 기후변화 관련 재무 위험 보고서를 작성하고 기업 자체 웹사이트를 통해 대중에게 공개

□ 기후 관련 재무 위험

- “기후 관련 재무 위험”은 물리적 위험 및 전환 위험으로 인해 즉각적이고 장기적으로 기업의 재무 결과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중대한 위험으로 정의(기업 경영, 상품 및 서비스 제공, 공급망, 직원 건강 및 안전, 자본 및 금융 투자, 기관 투자, 대출 수혜자와 차용자의 재무 상태, 주주 가치, 소비자 수요, 금융 시장 및 경제 건전성 등에 대한 위험을 포함)
- 기후 관련 재무 위험 보고서에 TCFD(또는 이에 상응하는 권장 프레임워크 및 공시) 요구사항에 따른 기후 관련 재무 위험과, 그러한 위험에 대해 기업이 취한 완화 및 적응 조치를 공시하도록 요구
- 기후 관련 재무 위험 보고서에 기업의 GHG 또는 자발적 GHG 완화에 대한 설명이 포함된 경우, 독립적인 제3자 검증기관에 의한 검증 필요
- 공시 요구사항에 따른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은 기업의 경우, 최선을 다해 권장 공시를

제공하고, 보고 공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며, 완전한 공시를 준비하기 위해 취할 조치를 설명

□ 위반시 처벌

- 보고서를 인터넷 웹사이트에 공개하지 않거나 부적절하거나 불충분한 보고서를 게시하는 경우 \$50,000 이하의 행정 처벌
- 단, 조항 위반에 대한 처벌시, 과거 및 현재 기업의 조항 준수 현황과 기업이 조항 준수를 위해 취한 조치와 관련한 상황을 고려해야 함

5. 한국지속가능성 공시기준

- 2024년 4월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는 ISSB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에 대한 이슈를 식별하고 국제 동향에 대한 분석과 국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개초안을 발표함
- 기업, 투자자, 전문기관, 학계,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KSSB 자문위원회를 중심으로 한국회계기준원 내 전문위원회인 법령정보전문위원회, 투자자 전문위원회와 함께 지속가능성 기준제정원칙 및 공시 요구사항에 대해 논의
 - 자산 2조 이상 코스피 상장 242개사를 대상으로 총 21회 기업 간담회를 진행하고 경제단체(대한상의, 중기중앙회, 경총, 한경협, 상장협), 투자자, 유관기관 민간 전문가를 대상으로 현장 간담회를 진행하고 의견을 청취함
 - 공시기준서 제101호 ‘정책 목적을 고려한 추가 공시(선택)사항 관련하여 기획재정부,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국가인권위원회, 특허청 등과 논의
-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 KSSB는 일반목적재무보고서의 이용자가 기업에 자원을 제공하기 위한 의사결정을 할 때 유용한 정보를 기업이 제공할 수 있도록 국내 자본시장에서 사용될 수 있는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제정함
- ISSB의 공시기준을 바탕으로 국제 정합성과 국내 수용가능성을 고려하였으며 구체적인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음
 - (정보 유용성) 정보이용자인 투자자에게 신뢰성 및 비교가능성 높은 양질의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를 제공

- (국제 정합성) 미국, EU 등 글로벌 공시기준과 상호 운용 가능한 ISSB 기준을 시작점으로 공시기준을 제정함으로써 해외에서 활동하거나 자금을 조달하는 기업, 글로벌 공급망에 속한 수출 기업들의 이중 공시부담을 최소화
- (기업의 수용가능성) 국내 기업의 공시 역량 및 준비 상황을 감안하여 공시기준 적용이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함

1) 제1호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 공시를 위한 일반사항

- 공시원칙을 설명하는 개념적 기반과 공시내용 표시 등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을 통해 이용자가 기업에 대한 자원 제공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할 때 유용한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
 - 단기, 중기 또는 장기적으로 기업 전망(현금흐름, 자금조달, 자본비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해 적용함
 -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를 작성할 때 기업은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정보만을 공시할지, 기후 외 다른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정보도 공시할지를 선택
- 제1호 일반사항은 유용한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가 공시되도록 하는 기본 개념을 기반으로 함
 - 공정한 표시
 - 목적적합한 정보를 완전하고 중립적이며 정확하게 표현
 - 중요성
 - 기업 전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공시
 - 중요한 정보란 일반목적재무보고서에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하거나 불분명하게 하여 이를 근거로 내리는 주요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정보를 의미함

- 중요한 정보의 식별
 - 정보이용자의 특성과 기업의 상황을 고려하여 기업의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의 맥락에서 중요한지를 평가
 - 식별된 정보가 중요한지 평가할 때는 양적 요인과 질적 요인 모두를 고려해야 함
- 통합 및 세분화
 - 정보를 통합함으로써 중요한 정보가 다른 정보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경우, 사용된 언어가 모호하거나 불명확한 경우, 중요한 정보가 분산되어 있는 경우, 정보가 부적절하게 통합되는 경우 세분화하여 공시

○ 보고기업

- 재무제표의 보고기업과 동일
- K-IFRS를 적용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지배기업은 자신의 종속기업을 포함한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를 제공
 - 따라서 지배기업은 종속기업이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를 적시에 인지하여 공시할 수 있도록 관련 내부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 다만 특정 종속기업의 정보가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중요한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해당 정보를 공시하지 않을 수 있음

○ 연계된 정보

- 정보이용자가 다양한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간의 연계성,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 내 연계성 및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와 재무제표 정보가 연계되는 방식을 이해할 수 있는 정보제공 요구
-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에 사용되는 데이터 및 가정은 가능한 재무제표 작성에 사용된 것과 일관되며 관련 표시 통화를 사용함

□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와 관련하여 네 가지 핵심요소 거버넌스, 전략, 위험관리, 지표 및 목표에 대한 정보 공시

○ 거버넌스

- 기업이 지속가능성 위험 및 기회를 모니터링, 관리 및 감독하는 데 사용되는 프로세스,

통제 및 절차에 대한 정보

○ 전략

- 기업이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를 관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접근법

○ 위험관리

- 기업이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를 식별, 평가, 우선순위 설정 및 모니터링하기 위해 사용하는 프로세스

○ 지표 및 목표

-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와 관련된 기업의 성과

□ 공시내용 및 표시와 관련된 일반 요구사항은 구체적으로 다음의 사항을 따름

○ 지침의 원천

- 보고할 정보를 식별하는 데 있어 참고할 수 있는 지침의 원천을 제시
-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 식별
 - SASB 기준의 공시 주제와 연관된 지표
 - '물 관련 공시를 위한 CDSB 프레임워크 적용지침' 및 '생물다양성 관련 공시를 위한 CDSB 프레임워크 적용지침'(이하 CDSB 프레임워크 적용지침)
 - 일반목적재무보고서 이용자의 정보수요를 충족하도록 고안된 요구사항을 가진 다른 기준제정기구의 최신 발표문(pronouncements)
 - 동종 산업 혹은 동일 지역에서 운영되는 기업들이 식별한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
- 적용 가능한 공시 요구사항 식별
 - SASB 기준의 공시 주제와 연관된 지표
 - CDSB 프레임워크 적용 지침
 - 다른 기준제정기구의 최신 발표문
 - 동종 산업 혹은 동일 지역에서 운영되는 기업들이 공시한 정보
 - GRI, ESRS

○ 비교 정보

- 당기 공시되는 모든 값에 대해 전기 비교정보를 공시(서술형 공시에 대한 비교정보가 유용한 경우 서술형 정보도 비교 공시)
- 지표가 추정값이고 과거에 존재했던 상황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당기 중에 획득한 경우, 해당 정보를 반영하여 비교값을 수정하여 공시(단, 실무적으로 불가능하거나 미래 사건 등과 관련된 경우 제외)
- 보고기간에 지표를 재정의하거나 새로운 지표를 도입하는 경우 해당 지표에 대한 비교값을 공시(단, 실무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제외)

○ 준수 문구

- 기업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준수하였음을 기술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의 요구사항을 모두 준수해야 함
- 단, 법률이나 규정에서 특정 정보에 대한 공시를 금지하거나 기회에 대한 정보가 상업적으로 민감한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정보에 대해 생략 가능

□ 판단, 불확실성 및 오류와 관련하여 다음의 정보를 공시

○ 판단

-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보고에 가장 유의적인 영향을 미친 판단

○ 측정 불확실성

- 보고된 값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유의적인 불확실성과 관련된 정보
- 높은 수준의 측정 불확실성이 있는 값을 식별한 후 측정 불확실성의 원천, 기업이 사용한 가정, 근사값 및 판단과 관련된 정보를 공시

○ 오류

-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중요한 전기오류는 비교값을 재작성하고 오류의 성격 등에 대한 정보를 공시

2) 제2호 기후 관련 공시사항

-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정보 공시 요구하는데 목적이 있음
 - 기후변화가 기업에 미치는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으로 물리적 위험(홍수, 가뭄) 및 전환 위험(기후 관련 규제 신설에 따른 비용 증가)으로 구분
 - 기업이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모든 정보가 기업에게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공시를 생략한 경우 기업은 해당 사실과 근거를 공시
 - 단, 기업이 기후 외 다른 지속가능성 관련 사안을 공시하지 않기로 선택한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 및 근거를 공시할 필요는 없음

-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와 관련하여 네 가지 핵심요소 거버넌스, 전략, 위험관리, 지표 및 목표에 대한 정보 공시
 - 거버넌스
 - (의사결정기구)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를 감독할 책임이 있는 의사결정기구 또는 개인
 - (책임과 의사결정)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가 의사결정기구의 책임에 반영되는 방식, 기업의 전략 감독을 위한 적절한 인력 확보 노력, 의사결정기구에의 보고빈도,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를 의사결정과정에서 고려하는 방법 등
 - (목표 및 보상) 의사결정기구가 기후 관련 목표를 설정하고 진척도를 감독하는 방법, 관련되는 성과 지표가 보상 정책에 포함되는지와 그 방법 등
 -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를 모니터링, 관리 및 감독하는 데 사용되는 거버넌스 프로세스, 통제 및 절차상의 경영진 역할
 - 전략
 - 위험 및 기회
 - 기업 전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정보 공시
 - 식별된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와 각 위험이 물리적 위험인지 전환 위험인지 설명
 - 식별된 각 기후 관련 위험과 기회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범위를 명시
 - 기간범위 관련 정보를 명시함에 있어 기업은 기업이 정의한 기간범위를 사용하거나 기준에서 제시한 기간범위를 사용할 수 있음

- ① 단기 :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
- ② 중기 :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초과 5년 이내
- ③ 장기 :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5년 초과
- 다만 기간범위는 산업별 특징을 포함한 여러 요소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기업은 적절한 기간범위를 위와 달리 정의하여 사용할 수 있음
- 사업모형 및 가치사슬
 -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가 기업의 사업모형 및 가치사슬에 미치는 현재 및 예상 영향 공시
 - 기업의 사업모형 및 가치사슬에서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가 집중된 부분에 대한 설명을 포함
- 전략 및 의사결정
 -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가 기업의 전략과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공시
 -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에 적응하고 완화하기 위한 기업의 직·간접적 노력 등을 포함한 기업의 대응 계획과 이에 따른 자원배분 사업모형 상의 변화
- 현재 및 예상 재무적 영향
 -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가 보고기간 및 미래시점에 걸쳐 기업의 재무상태 및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 공시
 - 보고기간에 미친 영향과 단기, 중기, 장기에 걸쳐 재무제표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변화에 대한 설명
 - 양적 및 질적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양적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관련 공시기준에 따라 질적 정보로 제시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함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양적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음
 - ① 현재 또는 예상 재무적 영향을 별도로 식별할 수 없는 경우
 - ② 측정불확실성이 높아 산출되는 양적 정보가 유용하지 않을 경우
 - ③ 기업이 양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역량과 자원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
- 기후회복력

- 기후 관련 변화, 전개 상황 및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기업의 전략과 사업모형의 회복탄력성에 대한 정보 공시
- 기업의 전략과 사업모형에 대한 기업평가의 시사점 및 단기, 중기, 장기에 걸쳐 전략과 사업모형을 조정시킬 수 있는 기업의 역량
- 기후 관련 시나리오 분석을 수행한 방법과 시점, 분석에 사용한 시나리오와 주요 가정 정보
- 기후회복력 관련 시나리오 분석을 해마다 반드시 수행할 필요는 없으며, 기업은 전략 계획 주기에 맞춰 분석을 수행할 수 있음

○ 위험관리

- 위험 프로세스 정책

- 기후 관련 위험을 식별, 평가하며 모니터링하는데 사용되는 프로세스와 정책 공시
- 기후 관련 위험이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식별되는지와 식별 방법, 위험의 성격과 발생 가능성을 평가하는 방법, 위험을 모니터링 하는 방법 등

- 기회 프로세스

- 기후 관련 기회를 식별, 평가하며 모니터링하는데 사용하는 프로세스 공시

- 프로세스의 통합

-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를 식별, 평가하며 감독하는 프로세스가 기업의 전반적인 위험 관리 프로세스에 통합되고 작용하는 범위와 방식을 공시

○ 지표 및 목표

- 산업전반 지표

- 온실가스 절대 총배출량 : 이산화탄소환산톤으로 Scope 1, 2, 3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
 - ① 관할 당국과 거래소로부터 요구받는 별도의 측정 방법이 없는 경우 GHG 프로토콜에 따라 측정
 - ② Scope 3 온실가스 배출량의 경우 의무화 여부 및 시기 등은 의견수렴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예정
- 전환 위험 : 전환 위험에 취약한 자산 또는 사업활동의 금액 및 백분율

- 물리적 위험 : 물리적 위험에 취약한 자산 또는 사업활동의 금액 및 백분율
 - 기회 : 기후 관련 기회에 부합하는 자산 또는 사업활동의 금액 및 백분율
 - 자본 배치 :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에 관련된 자본적 지출, 자금조달 및 투자액
 - 내부탄소가격 : 기업이 탄소가격을 의사결정에 활용하는지와 그 방법, GHG 배출 원가를 평가하기 위해 기업이 사용하는 GHG 배출량 1톤당 가격²¹⁾
 - 경영진 보상 : 기후 관련 사항이 경영진 보상 책정에 활용되는지와 그 방법, 기후 관련 사항에 연계된 경영진 보상의 당기 인식 비율
- 산업기반 지표
- 기업이 속한 산업의 공통적인 특성과 연관된 위험 및 기회에 대한 기업의 익스포저 및 관리방안을 이해할 수 있도록 반영된 지표로 그 공시여부를 기업이 선택할 수 있음
 - 해당 공시 기업은 'IFRS S2 이행에 대한 산업기반 지침'의 공시 주제와 관련된 산업기반 지표를 참고할 수 있음
- 기후 관련 목표
- 기업이 설정한 기후 관련 목표와 이를 검토하는 기업의 접근법에 대한 정보를 공시
 - 기업의 양적 질적 목표, 법률 규제에 의해 충족이 요구되는 목표, 목표가 적용되는 기간 및 부문
 - 목표를 설정 검토하는 접근법, 목표의 제3자 검증 여부, 목표 달성 진척도를 모니터링 하는 방법과 모니터링에 사용되는 지표
 - 목표의 대상이 되는 온실가스 종류와 총배출량 목표에 해당하는지 여부
 - 순배출량 목표의 경우 연관된 온실가스 총배출량 목표를 별도로 공시하며, 순배출량 목표달성을 위한 탄소 크레딧 사용 계획을 공시

3) 제101호 정책 목적을 고려한 추가 공시사항

21) 기업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두 가지 유형의 내부 탄소 가격은 다음과 같음.

- ① 잠재 가격(shadow price) : 이론적 비용 또는 개념적 값으로서 기업이 부과하지는 않지만 위험 영향, 새로운 투자, 프로젝트의 순 현재가치 그리고 다양한 이니셔티브의 비용 및 효익 같은 경제적 시사점이나 절충을 이해하는데 사용
- ② 내부 탄소세(internal tax or fee) :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사업활동, 제품군 또는 기타 사업 단위에 부과되는 탄소 가격

- 다양한 위치에 산발적으로 공개되고 있는 정보를 지속가능성 재무정보 공시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용자의 정보 유용성을 향상시키고자 함
 - 기업은 제101호의 적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공시 요구사항 항목별로도 공시 여부를 기업이 선택 가능함
 -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서 제1호와 달리 별도의 보고 실체를 적용함
 - 국내 법규에 따라 공개중인 정보는 관련 법규의 보고 실체에 따라 정보를 공시함
 - 정부부처에서 반영을 요청한 정보는 법적 실체를 보고실체로 함
 - 지속가능성 재무정보와 동시에 보고하고 보고기관도 동일하게 적용
 - 단, 법규에 따라 공개 중인 정보의 보고기간은 다를 수 있으며 이 경우 보고기간이 다름을 명시

-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서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재무공시와 구분하여 공시
 - 국내 법규에 따라 공개되고 있는 정보와 정부의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보로 구분하여 공시
 - 법규에 따라 공개 중인 정보
 - 온실가스 목표 관리제도²²⁾
 - 배출권 거래제²³⁾
 - 환경정보 공개제도²⁴⁾
 -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제도²⁵⁾
 - 환경물질의 배출, 정부규제 준수, 녹색 기업 등과 관련된 정보²⁶⁾
 - 직원 등의 현황 관련 정보²⁷⁾
 -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보

2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7조 제1항

23)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24)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8 제1항

25)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6조

2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 제1항;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 제2항;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2

2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 제1항

- 가족친화경영 확산을 위한 정보²⁸⁾
 - ① 출산휴가 사용자 비율
 - ② 육아휴직 사용자 비율
 - ③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 사용자 비율
 -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사용자 비율
 - ⑤ 일·가정 양립을 위한 유연근무제도
 - ⑥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여부
 - ⑦ 임신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 및 운영 여부
- 강제노동 예방을 위한 정보²⁹⁾
- 안전 경영에 대한 정보
 - ①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업의 경영방침
 - ② 기업 내 안전·보건관리 조직
 - ③ 안전·보건 관련 예산 및 시설 현황
 - ④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보고기간의 활동 실적 및 차년도 활동 계획
 - ⑤ 보고기간말 기준 상시 근로자수
 - ⑥ 보고기간 중 발생한 업무 상 사고 사망자수
 - ⑦ 보고기간 중 발생한 업무 상 질병 사망자수
 - ⑧ 보고기간의 사고사망만인율
 - ⑨ 보고기간의 질병사망만인율
- 종업원 다양성에 대한 정보
 - ① 보고기간말 기준 장애인 고용률
 - ② 보고기간말 기준 중증 장애인 비율 및 여성 장애인 비율
 - ③ 보고기간말 기준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공표 대상 해당 여부³⁰⁾

28) 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제19조, 제22조의2; 영유아보육법 제14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29) 근로기준법 제7조

3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9조제3항

- ④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설립 여부 및 장애인 고용 현황³¹⁾
- 부정경쟁방지를 위한 정보
 - ① 보고기간 동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관련하여 계류 중이거나 완료된 소송 건수
 - ② 보고기간 동안 완료된 소송의 주요 결과
- 인권 경영에 대한 정보
 - ① 인권경영 관련 기업의 조직, 제도 및 규정
 - ②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
 - ③ 식별된 인권이슈가 있을 경우, 해당 이슈에 대한 대응 여부
 - ④ 인권침해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구제절차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
 - ⑤ 보고기간말 기준 총 직원 수 대비 인권경영 교육을 이수한 직원 수

3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제3항

III

ESG 공시 비교 분석

1. 기본 원칙

- 선택된 기본 원칙 관련 일부 항목에 대하여 미국과 유럽의 ESG 관련 공시기준 및 한국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아래 표로 비교함
- 기업 규모에 따라 IFRS와 ESRS는 2025년(FY2024)부터, SEC 기후공시와 CA 기후법안은 2026년(FY2025)부터 ESG 관련 사항에 대한 공시 의무를 적용하며 한국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은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향후 공시 적용 시기가 확정될 예정
 - SEC 기후공시의 경우 현재 사법적 검토가 종료될 때까지 의무화 도입이 보류된 상태이나 심의 및 이행 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 필요
- 중대성에 대한 개념의 경우, ESRS는 영향중대성(기업이 사람·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재무중대성 모두를 포함하는 이중중대성 원칙을 채택하고 있으나 IFRS와 한국지속가능성 공시기준, SEC 기후공시, CA 기후법안은 투자자 중심의 재무중대성(미래 기업의 현금흐름, 자금조달, 자본비용에 미치는 재무적 영향)만을 적용함
- IFRS와 한국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은 기후 관련 정보를 의무 공시 범위로 규정하며 ESRS는 기후변화가 기업에 중요하다고 평가된 경우에만 관련 정보를 공시하도록 요구하지만, 기후변화를 공시에서 제외할 경우 중대성 평가 결과를 상세히 설명하도록 요구함
 - IFRS, ESRS, 한국지속가능성 공시기준 모두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를 식별하고 시나리오에 기반한 기업의 회복탄력성 분석을 요구하고 있으며, 특히 ESRS는 지구온난화 1.5°C 제한 목표에 따른 구체적인 기업별 목표를 설정하도록 요구하며, 시나리오 분석 시 저탄소 및 고탄소 시나리오를 포함할 것을 제안함
 - SEC는 기후 관련 위험이 실질적으로 기업에 미치는 재무적 영향만을 공시하도록 요구하며, 기후 관련 기회와 시나리오 분석은 공시 의무에서 제외함

- IFRS, 한국지속가능성 공시기준, ESRS, CA 기후법안 모두 Scope 1, 2, 3 온실가스 배출량을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요구하나, SEC 기후공시는 Scope 1 또는 Scope 2 배출량이 중요한 경우에만 공시하도록 하며 Scope 3 배출량은 의무공시 범위에서 제외함
 - IFRS는 1년간(FY2024) Scope 3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의무를 유예함
- IFRS와 한국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은 제3자 인증과 비준수시 처벌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제시하지 않음

표 3. 기본 원칙에 대한 국내외 ESG 공시기준 비교

구분	IFRS	ESRS	SEC 기후공시	CA 기후법안	한국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적용 대상	재무제표 보고 의무를 지닌 각 국가의 상장기업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지배기업은 종속기업을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NFRD 적용 기업³²⁾ • EU 내 설립 대기업³³⁾(Non-EU 기업을 지배기업으로 하는 EU내 종속 기업 포함) 	미국 증시 상장기업 (단, 상장 소기업, SRC 및 EGC는 GHG 배출량 공시에서 제외)	SB 253 - 연 매출 10억 달러 이상 (SB261 - 연 매출 5억 달러 이상), 캘리포니아주에서 사업을 하는 모든 기업	재무제표 보고 의무를 지닌 국내 상장 기업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지배기업은 종속기업을 포함)
공시 범위	모든 지속가능성 및 기후 관련 사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SRS2에 따른 지속가능성 관련 사항 • 중대성 평가에 따른 환경·사회 거버넌스 주제별 공시 요구사항(단, ESRS E1 기후변화는 자발적 공시에 해당하나, 공시에서 제외할 경우 중대성 평가 결과에 대한 상세 설명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무제표 공시(Reg. S-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변화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 탄소상쇄 및 REC - 재무적 추정 및 가정 • 재무제표 외 공시(Reg. S-K)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 관련 정보 및 GHG 배출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cope 1, 2 & 3 GHG 배출량 공시 의무(SB 253 - 기후기업데이터책임법) • 재무 위험 보고서 공시 의무(기후 관련금융위험법 - SB 26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 관련 정보 의무 공시 • 기후 외 지속가능성 관련 사안은 선택적 공시
적용 시기	2024. 1.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NFRD 적용 기업 - 2025. 1. 부터(FY2024) 적용 • EU 내 설립 대기업 - 2026년부터 (FY2025)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 규모 및 공시 요구사항에 따라 2026년(FY2025)부터 적용 • Reg. S-X & Reg. S-K 기후관련 공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AF: 2026년 공시(FY2025) - AF: 2027년 공시(FY2026) • Reg. S-K Scope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AF: 2027년 공시(FY2026) - AF: 2029년 공시(FY20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cope 1&2: 2026년 공시 • Scope 3: 2027년 공시 • 기후관련 재무위험 보고서: 2026. 1. 1. 까지(이후 2년마다) 공시 	미정

III. ESG 공시 비교 분석

중대성	미래 기업 전망(현금흐름, 자금조달, 자본비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	영향중대성(기업이 사람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 또는 재무중대성(기업에 재정적 영향을 유발) 기준에 부합하는 지속가능성 문제 (이중중대성 원칙)	특정 기업에 대한 투자 및 의결권 결정에 대한 정보의 중대성을 의미(해당 결정 외의 기후 관련 문제에 대한 정보의 중요성을 의미하지 않음)	기후 관련 재무 위험을 물리적·전환 위험으로 인해 즉각적이고 장기적으로 기업의 재무 결과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중대한 위험으로 정의	단·중·장기적으로 기업 전망(현금흐름, 자금조달, 자본비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
GHG 배출량	Scope 1, 2, 3 배출량 공시 (Scope 3는 1년간 미공시 허용)	Scope 1, 2, 3 배출량 공시 (GHG 집약도 포함)	기업 규모 및 중대성 평가에 따라 Scope 1, 2 배출량 공시	Scope 1, 2, 3 배출량 공시	Scope 1, 2, 3 배출량 공시
기후관련 위험 및 기회 (시나리오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후 관련 물리적·전환 위험 및 기회가 기업에 미치는 재무적 영향 기후 관련 시나리오 분석을 포함한 사업모형의 회복탄력성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ESPS E1 공시 시, 기후 관련 물리적·전환 위험 및 기회 식별 시나리오 분석(고탄소 및 1.5°C 시나리오 포함)에 기반한 회복탄력성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심각한 기상 이변 현상 및 기타 자연 현상으로부터 발생하는 재무적 영향(재무제표 공시) 물리적·전환 위험이 전략·운영결과 재무상태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 (재무제표 외 공시) 기후 관련 기회 공시 및 시나리오 분석 요구되지 않음 	SB 261 - TCFD 보고 요건(또는 이에 상응하는 수준의 요건)에 따른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와 시나리오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후 관련 물리적·전환 위험 및 기회가 기업에 미치는 재무적 영향 기후 관련 시나리오 분석을 포함한 사업모형의 회복탄력성 평가
제3자인증	표준에 규정되지 않음	CSRD 공시 내용(지속가능성 보고서)에 대한 제한적 검증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Scope 1&2 제한적 검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AF 2030년(FY2029) - AF 2032년(FY2031) Scope 1&2 합리적 검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AF 2034년(FY2033) 	<ul style="list-style-type: none"> Scope 1&2 제한적 검증: 2026년 Scope 1&2 합리적 검증: 2030년 Scope 3 제한적 검증 미정 	표준에 규정되지 않음
비준수시 처벌	표준에 규정되지 않음	현지 법률에 따름 (EU 각 회원국은 CSRD 발효 이후 18개월 이내에 자국 법률을 제정	SEC 규정 비준수와 마찬가지로 벌금 및 기타 법적 조치를 포함한 SEC 집행 조치 발생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SB 253 - 요구 사항 미충족 시 보고 연간 최대 \$500,000 SB 261 - 보고를 하지 않거나 보 	표준에 규정되지 않음

		할 의무를 지님)		고가 불충분한 경우 보고 연간 최대 \$50,000	
향후 일정	생물다양성, 생태계, 인권 등에 관한 추가적인 공시기준 제정 예정이나 구체적 시기 미확정	8개 산업에 대한 산업별 공시기준을 담은 ESRS 두번째 세트는 2026년 6월 도입 예정	제5항소법원의 SEC 기후공시 행정 유예 요청 승인 및 미국 지방정부 등에서 총 9건의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현재 상장기업의 기후공시 의무화 도입이 보류됨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2024. 5. 1. ~ 8. 31.)

32) 직원 수 500명 이상 EU 상장사, 금융권(은행, 보험사)

33) ① 총 자산 2천만 유로 이상, ② 순 매출 4천만 유로 이상, ③ 직원 수 250명 이상의 기준 중 2개 이상에 해당하는 기업

2. 지속가능성

- 미국과 유럽을 비롯하여 국제적으로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와 관련하여 네 가지 핵심요소(거버넌스, 전략, 위험 관리, 지표 및 목표)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음

1) 거버넌스

- IFRS 일반 요구사항은 거버넌스 측면에서 기업의 지속가능성 위험 및 기회를 모니터링, 관리 및 감독하는 데 사용되는 기업의 프로세스, 통제 및 절차를 이해하기 위한 정보에 대해 공시할 것을 요구
 -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를 모니터링하는 의사결정기구(이사회, 위원회) 또는 개인을 식별하고, 적용되는 규정과 정책에 대한 정보 공시
 -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의사결정기구의 역할과 절차 및 내부와의 통합에 대한 정보 공시
- ESRS 일반 공시는 기업의 행정, 관리 및 감독 기구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다섯가지 공시를 요구
 - 기업의 행정, 관리 및 감독 기구의 역할(GOV-1)
 - 기업의 행정, 관리 및 감독 기구 구성원의 다양성, 역할, 책임, 전문성 등에 대한 설명과 정보에 대해 공시
 - 기업의 행정, 관리 및 감독 기구에서 다루는 지속가능성 문제에 제공되는 정보(GOV-2)
 - 행정, 관리 및 감독 기관이 지속가능성 문제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구하고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관련 정보 공시
 - 보수 제도에 지속가능성 관련 성과 통합(GOV-3)
 - 행정, 관리 및 감독 기구 구성원의 보수 제도, 지속가능성 성과 지표가 보수에 반영되는지 관련 정보 공시

- 지속가능성 실사 보고(GOV-4)
 - 지속가능성 실사 과정의 주요 측면 및 단계의 적용이 어떻게 실시되고 반영되는 정보의 맵핑을 공시
- 지속가능성 보고에 대한 위험 관리 및 내부 통제(GOV-5)
 - 지속가능성 보고 프로세스와 관련하여 위험관리 및 내부 통제 시스템의 주요 특징에 대해 공시
- 한국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은 지속가능성 위험 및 기회를 모니터링, 관리 및 감독하는데 사용되는 프로세스, 통제 및 절차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요구함
 - 지속가능성 위험 및 기회를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는 의사결정기구 또는 개인을 식별하고, 그에 따른 기업의 운영규정과 관련 정책에 대해 설명된 정보를 공시
 - 관련 세부 기준은 IFRS 기준을 벤치마크하여 국제 기준과의 정합성을 높임

2) 전략

- IFRS 일반 요구사항은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를 관리하기 위한 기업의 전략을 이해하기 위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요구
 - 관련하여 기업의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 사업모형과 가치사슬, 전략 및 의사결정, 회복력 등에 대한 정보 공시
 -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의 영향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기간범위에 대한 정보를 명시해야 하며, 보고기간에 해당하는 합리적인 양적, 질적 정보를 모두 공시해야 함
- ESRS 일반 공시는 기업의 전략과 관련하여 세가지 공시를 요구
 - 시장 지위, 전략, 사업모형 및 가치사슬(SBM-1)
 -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설명, 제품 및 서비스 그룹, 고객 카테고리, 지리적 영역 및 이해관계자와의 관계 측면에서 지속가능성 관련 목표 제시

- 이해관계자의 이익 및 견해(SBM-2)
 - 기업의 전략과 사업모형이 이해관계자의 이익과 견해를 어떻게 고려하는지에 대한 정보 공시
- 주요 영향, 위험 및 기회와 기업의 전략 및 사업모형과의 연계성(SBM-3)
 - 중대성 평가를 통한 주요 영향, 위험 및 기회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공시
- 한국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은 기업이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를 관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접근법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요구
 - 기업의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 사업모형과 가치사슬, 전략 및 의사결정, 회복력 등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며, IFRS 공시기준에 따라 국제 기준과의 정합성을 높임

3) 위험 및 기회 관리

- IFRS 일반 요구사항은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를 식별, 평가하고 우선순위를 설정 및 모니터링하기 위한 기업의 프로세스를 이해하기 위한 정보에 대해 공시할 것을 요구
 - 기업이 사용하는 투입변수 및 매개변수, 위험 식별을 위한 시나리오 분석, 위험 발생 가능성 및 크기에 대한 평가 방식, 위험의 우선순위, 위험에 대한 모니터링, 위험 관련 프로세스에 대한 정보 공시
- ESRS 일반 공시는 중대성 평가 절차, 기회에 대한 보고, 정책 및 조치에 대한 내용을 공시하도록 요구함
 - 관련하여 주요 영향, 위험, 기회의 식별 및 평가 절차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공시
 - 합리적인 예측과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주요 지속가능성 관리를 위해 채택한 정책, 조치 및 자원에 대한 정보 공시
- 한국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은 기업이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를 식별, 평가, 우선순위 설정 및 모니터링하기 위해 사용하는 프로세스에 대한 공시 요구

- 기업이 사용하는 투입변수 및 매개변수, 위험 식별을 위한 시나리오 분석, 위험 발생 가능성 및 크기에 대한 평가 방식, 위험의 우선순위, 위험에 대한 모니터링, 위험 관련 프로세스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며, IFRS 일반 요구사항과 동일한 기준 제시

4) 지표 및 목표

- IFRS 일반 요구사항은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와 관련된 기업의 성과를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에 대한 공시를 요구
 -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에서 요구하는 지표를 비롯하여 개별 기업의 자체 지표, 측정치, 제3자 검증, 계산 및 방법론에 대한 정보 공시
 - 관련 법률이나 규제를 충족시키기 위한 정보 공시

- ESRS 일반 공시는 주요 지속가능성 문제에 대한 지표와 목표에 대한 정책 및 조치의 효과를 추적하여 공시할 것을 요구
 -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또는 기회와 관련하여 성과 및 효과를 평가하는 모든 측정 기준 및 기업별 기준에 대해 식별된 지표를 공시함
 - 목표, 정책 목적, 목표 수준, 중간 목표, 방법론 및 주요 가정, 과학적 증거 등에 대한 객관적이고 검증받은 정보를 공시

- 한국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은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와 관련된 기업의 성과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요구
 - 한국지속가능성 공시기준에서 요구하는 지표, 개별 기업의 지표, 측정치, 제3자 검증, 방법론, 가정, 투입변수 등에 대한 정보 공시
 - 기업의 목표 및 법률, 규제를 충족시키기 위한 목표에 대한 정보 공시를 통해 국제 기준과의 호환성 확보

표 4. 지속가능성에 대한 국내외 ESG 공시기준 비교

구분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유럽지속가능성 공시표준	한국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거버넌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를 모니터링, 관리 및 감독하는데 사용되는 기업의 프로세스, 통제 및 절차를 이해하기 위한 정보 지속가능성 관련 의사결정기구에 대한 식별 정보 및 적용되는 규정과 정책에 대한 정보 공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의 행정, 관리 및 감독 기구 구성원의 다양성, 역할, 책임, 전문성 등에 대한 정보 공시 지속가능성 문제 관련 정보 처리, 보수제도, 실사, 내부 통제 관련 정보 공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속가능성 위험 및 기회에 대한 모니터링, 관리, 감독, 통제 및 절차에 대한 정보 공시 지속가능성 문제 관련 의사결정기구, 운영규정, 관련 정책에 대한 정보 공시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를 관리하기 위한 전략에 대한 정보 공시 사업모형, 가치사슬, 전략 및 의사결정, 회복력 등에 대한 합리적인 양적·질적 정보 공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장 지위, 전략, 사업모형 및 가치사슬에 대한 정보 이해관계자의 이익 및 견해에 대한 정보 주요 영향, 위험 및 기회와 기업의 전략 및 사업모형과의 연계성에 대한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를 관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접근법에 대한 정보 공시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 사업모형, 가치사슬, 전략 및 의사결정, 회복력 등에 대한 정보 공시
위험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를 식별, 평가, 모니터링하기 위한 기업의 프로세스에 대해 정보 공시 기업의 투입변수, 매개변수, 시나리오 분석, 위험 발생 가능성, 평가 방식, 우선 순위, 모니터링, 프로세스 등에 대한 정보 공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대성 평가 절차, 기회에 대한 보고, 정책 및 조치에 대한 정보 공시 주요 영향, 위험, 기회의 식별, 평가 절차에 대한 정보 공시 지속가능성 관리를 위한 정책, 조치, 자원에 대한 정보 공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를 식별, 평가, 우선순위 설정, 모니터링에 대한 정보 공시 사용된 투입 및 매개변수, 시나리오 분석, 위험 평가 방식, 모니터링 등에 대한 정보 공시
지표 및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와 관련된 성과에 대한 정량적 정보 공시 IFRS 관련 지표 및 기업 자체 지표, 측정치, 제3자 검증, 방법론에 대한 정보 공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속가능성 관련 지표와 목표에 대한 정책 및 조치의 효과에 대해 공시 관련 성과를 평가하는 측정 기준 및 기업별 기준에 대한 정보 공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와 관련된 성과에 대한 정보 공시 지표, 측정치, 제3자 검증, 방법론, 가정, 투입변수 등에 대한 정보 공시

3. 환경

- ESRS는 기후변화를 포함한 오염, 수자원 및 해양 자원,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자원사용 및 순환경제의 다섯 가지 환경 영역에 대한 공시 표준을 제시하고 있으나, IFRS와 한국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은 환경 영역 중 현재 기후변화에 대한 공시 표준만을 제시하였으며, SEC 기후공시 및 CA 기후 법안은 기후변화에 포커스를 맞추어 기후 관련 정보 제시를 의무화 하는 규정에 해당함

- 이에 본 보고서는 환경 영역 중 기후변화에 대한 국내외 공시 표준을 ① 거버넌스, ② 전략, ③ 위험 및 기회 관리, ④ 지표 및 목표의 네 가지 보고 영역을 중심으로 비교함
 - 거버넌스의 경우 IFRS, ESRS, SEC 기후공시, 한국지속가능성 공시기준 모두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를 감독할 책임이 있는 의사결정기구와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의 평가 및 관리 책임이 있는 경영진, 그리고 기후 관련 목표 관련 경영진 보상에 대한 정보 공시를 요구
 - IFRS와 한국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은 경영진 보상 관련 사항을 ‘지표 및 목표’에서 보고하도록 함
 - 전략의 경우, IFRS, ESRS, SEC 기후공시, CA 기후법안, 한국지속가능성 공시기준 모두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가 기업에 미치는 재무적 영향과 이를 관리하기 위한 기업의 계획(완화 및 적응 조치)을 공시하도록 요구
 - IFRS, ESRS, 한국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은 시나리오 분석에 기반한 기업의 전략 및 사업모형의 회복탄력성 평가를 요구
 - 위험 및 기회 관리의 경우, IFRS, ESRS, SEC 기후공시, CA 기후법안, 한국지속가능성 공시기준 모두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의 식별·평가에 대한 프로세스를 공시하도록 요구
 - SEC 기후공시는 기후 관련 기회를 의무 공시 범위에서 제외함
 - 지표 및 목표의 경우, IFRS, ESRS, SEC 기후공시, CA 기후법안, 한국지속가능성 공시기준 모두 GHG 배출량을 공시하도록 요구
 - IFRS, ESRS, CA 기후법안, 한국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은 Scope 3 배출량을 의무 공시 범위에 포함하며(IFRS는 1년간 공시 유예), SEC 기후공시는 Scope 3 배출량 공시 의무를 면제함

- ESRs와 SEC 기후공시는 GHG 배출량 목표 공시 시 탄소 상쇄를 제외한 총 GHG 배출량을 공시하도록 하며, IFRS는 총 배출량 또는 순 배출량 목표를 공시하도록 요구

1) 거버넌스

- IFRS S2 기후 관련 공시기준은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를 감독하는 의사결정기구와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 모니터링에 대한 경영진의 역할을 공시하도록 요구
 - 기후 관련 책임 반영 및 해당 기구의 역량
 - 기후 관련 목표 설정 및 진척도 모니터링
 - 전략, 의사결정, 위험관리 및 정책 감독 시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 고려
- ESRs E1 기후변화 공시표준은 행정, 관리 및 감독 기구 구성원의 보수에 GHG 배출량 감축 성과를 포함하여 기후 관련 고려 사항을 반영하도록 요구
 - ‘행정, 관리, 및 감독 기구의 역할’, ‘행정, 관리 및 감독 기구에서 다루는 지속가능성 문제 및 정보의 제공’, ‘지속가능성 보고에 대한 위험 관리 및 내부 통제’는 ESRs2 ‘지속가능성 문제에 대한 일반공시 요구사항’에서 다룸
- SEC 기후공시기준은 기후 관련 위험에 대한 이사회 감독, 기후 관련 위험의 평가 및 관리 책임이 있는 경영진에 대한 정보 공시를 요구
 - 기후 관련 위험을 감독하는 이사회 내 위원회를 식별하고, 해당 정보를 얻는 절차, 공시된 목표나 전환 계획의 진행 상황 감독에 대한 정보 공개
 - 경영진이 보유한 기후 관련 전문 지식의 성격, 기후 관련 위험의 평가 및 관리 절차, 이사회에 기후 관련 위험 정보 보고 여부 공개
- 한국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제2호는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를 감독할 책임이 있는 의사결정기구와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 모니터링, 관리 및 감독에 대한 경영진의 역할을 공시하도록 요구
 - 의사결정기구와 관련하여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책임 반영, 인력 확보 노력,

의사결정기구에의 정보 보고빈도, 기후 관련 목표 설정 및 진척도 감독, 보상 정책에 기후 관련 목표에 대한 성과 지표 포함 여부에 대한 정보 공개

2) 전략

- IFRS S2 기후 관련 공시기준은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가 기업에 미치는 재무적 영향과 이에 대한 기업의 대응 전략 및 회복탄력성을 공시하도록 요구
 - 기업 전망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와 관련된 기간 범위
 -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가 사업모형과 가치사슬에 미치는 현재 및 미래 영향
 -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대응 방법 및 계획: 완화 및 적응계획, 전환 계획, 목표 달성 계획, 자원 조달 방법
 -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가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
 - 기업 전략 및 사업모형의 회복탄력성 평가(기후 관련 시나리오 분석 포함)

- ESRS E1 기후변화 공시표준은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전환 계획과 기후 관련 위험에 대한 기업의 전략 및 사업모형의 회복탄력성을 공시하도록 요구
 -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전환 계획 공시 시, 지구온난화 1.5°C 제한을 위한 GHG 배출량 감축 목표, 탈탄소화 수단 및 핵심 전환 조치, 투자 및 자금 조달, 잠재적 고정 GHG 배출에 의한 전환 리스크에 대한 정보 포함
 - 기후 관련 물리적 위험 및 전환 위험을 식별하고, 기후 시나리오 분석에 기반하여 기후변화에 대한 기업의 전략 및 사업모형의 회복탄력성 분석

- SEC 기후공시 기준은 기후관련 위험이 기업의 전략 · 사업모형 · 전망에 대한 중대한 영향을 공시하도록 요구하며(Regulation S-K), 심각한 기상 이변 및 기타 자연 현상이 기업에 미치는 재무적 영향은 재무제표에 공시하도록 요구(Regulation S-X)
 - “허리케인, 토네이도, 홍수, 가뭄, 산불, 극한 기온 및 해수면 상승”을 포함한 심각한 기상 이변 현상 및 기타 자연 현상으로부터 발생하는 재무적 영향을 ① 발생 및 손실로 지출되는 비용(“손익계산서 영향”)과 ② 자본화된 원가 및 비용(“재무상태표 영향”)으로 구분하여

재무제표에 공시

- 기후 관련 물리적 위험 또는 전환 위험과 기업의 사업전략 · 운영결과 · 재무상태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을 공시
 - 기업 활동의 유형 및 위치, 제품 또는 서비스, 공급 또는 구매업체,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활동, 연구개발을 위한 지출 등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
 - 기업의 전략, 재무계획 및 자본 배분에의 고려여부 및 방법
 - ‘경영진의 평가’에서, ‘공시된 기후 관련 위험’에 대한 완화 또는 적응 활동에 의해 ‘직접적으로 발생한’ 중대한 지출
 - 중요한 기후 관련 위험을 고려하기 위해 시나리오 분석을 수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만 시나리오 분석에 대해 공시
 - 전환 계획을 도입한 경우에만 전환 계획에 따른 조치로부터 직접적으로 발생한 중대한 지출 및 진행 상황에 대해 공시
 - 기후 관련 기회에 대한 공시를 요구 하지 않음
- CA 기후법안은 기후 관련 재무 위험 및 해당 위험에 대한 완화 및 적응 조치를 공시하도록 요구
- 기후 관련 재무 위험에 대해 물리적 위험 및 전환 위험으로 인해 즉각적이고 장기적으로 기업의 재무 결과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중대한 위험으로 정의
 - TCFD 또는 이에 상응하는 권장 프레임워크 및 공시 요구사항에 따라 기후 관련 재무위험 보고서를 통해 해당 정보 공시
- 한국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제2호는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가 기업에 미치는 재무적 영향과 이에 대한 기업의 대응 전략 및 회복탄력성을 공시하도록 요구
- 기후 관련 물리적 위험, 전환 위험 및 기회와 영향에 대한 기간 범위(단, 중, 장기)
 -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가 사업모형 및 가치사슬에 미치는 현재 및 예상 영향
 -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가 기업의 전략과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및 기후변화 적응 및 완화를 위한 대응 계획과 이에 따른 자원배분 및 사업모형의 변화

-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가 현재 및 미래에 걸쳐 기업의 재무상태 및 재무성과에 미치는 양적·질적 영향
-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기업의 전략과 사업모형의 회복탄력성(기후 관련 시나리오 분석 수행 방법 및 시점, 적용 시나리오, 주요 가정 포함)

3) 위험 및 기회 관리

- IFRS S2 기후 관련 공시기준은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의 식별 · 평가 · 우선순위 설정 · 모니터링을 위한 프로세스를 공시하도록 요구
 - 기후 관련 위험 식별을 위한 시나리오 분석 관련 정보
 - 기후 관련 위험의 성격, 발생가능성 및 영향의 크기에 대한 평가 방식
 - 기후 관련 위험에 대한 우선순위 적용 방식
 - 기후 관련 위험에 대한 모니터링 방식

- ESRS E1 기후변화 공시표준은 기업의 GHG 배출이 미치는 영향과 기후 시나리오 하에서 기후 관련 위험의 식별 · 평가와 기후변화 완화 · 적응 정책 및 이에 대한 조치와 자원을 공시하도록 요구
 - 기업의 GHG 배출이 미치는 영향과 고탄소 및 1.5°C 시나리오에서의 기후변화 물리적 위험과 전환 위험의 식별 및 평가
 -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관련 정책이 에너지 효율성, 재생 에너지 사용 등을 다루는 방법
 -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정책과 관련된 조치(탈탄소화 수단에 의한 완화 조치 및 예상 GHG 배출 감축량) 및 자원(조치 이행에 필요한 자본지출 및 운영비용)

- SEC 기후공시 기준은 “중대한” 기후 관련 위험을 식별 · 평가 · 관리하기 위해 기업이 보유한 모든 프로세스 공시를 요구
 - 기후 관련 위험의 발생 가능성 식별 방법
 - 특정 위험의 완화, 수용 또는 적응 여부 결정 및 위험 해결을 위한 우선순위 부여 방법

- 기업의 전체 위험 관리 시스템 또는 프로세스에의 통합 여부 및 방법
- 한국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제2호는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의 식별 · 평가 · 모니터링에 사용되는 프로세스 및 정책을 공시하도록 요구
 - 시나리오 분석을 포함한 위험 및 기회 식별 방법
 - 기후 관련 위험의 성격 및 발생가능성 평가 방법
 - 기후관련 위험 모니터링 방법
 - 기업내 전반적인 위험관리 프로세스에의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 관리 프로세스 통합

4) 지표 및 목표

- IFRS S2 기후 관련 공시기준은 GHG 지표(Scope 1, 2, 3) 및 목표와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지표(기후 관련 자산 또는 사업활동, 자본배치, 내부탄소가격) 및 목표, 경영진 보상을 공시하도록 요구
 - GHG 지표
 - Scope 1, 2, 3으로 구분된 발생한 총 GHG 배출량의 절댓값
 - GHG 프로토콜 기업 회계 및 보고 기준 적용
 - Scope 1, 2 배출량의 경우, 회계상 지배기업과 종속기업, 관계기업, 공동기업, 비연결대상 종속기업 등으로 세분화
 - 배출량 측정에 사용된 접근법(방법, 투입변수, 가정 등)
 - GHG 목표
 - 해당 GHG 종류 및 배출량 카테고리(Scope 1, 2, 3)
 - GHG 총 배출량 또는 순배출량 해당 여부(순배출량 목표 공시 시, 연관된 총배출량 목표 별도 공시)
 - 목표 도출 시, 부문별 탈탄소화 접근법 사용 여부
 - 배출량 상쇄에 사용되는 탄소 크레딧 관련 정보

- 기후 관련 전환 · 물리적 위험과 기회에 관련한 기업의 자산 또는 사업활동의 금액 및 백분율
 - (자본배치)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비하여 배치된 자본지출, 자금조달 또는 투자 금액
 - (내부 탄소 가격) 기업의 의사결정 시 적용되는 탄소 가격에 대한 설명
 - 경영진 보상에 기후 관련 사항의 고려 여부
 - 기후 관련 목표 설정에 사용되는 지표, 목적, 기간, 기업 내 적용되는 범위와 해당 목표 설정 · 검토를 위한 접근법(제3자검증, 내부 절차) 및 진척도 모니터링
- ESRS E1 기후변화 공시표준은 GHG 배출량 및 감축 목표(Scope 1, 2, 3)와 에너지 소비량,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에 의한 재정적 영향을 공시하도록 요구
- GHG 배출량(Scope 1, 2, 3 및 총 GHG 배출량으로 구분)
 - Scope 1 배출량 및 배출권 거래제도에 의해 조절된 Scope 1 배출량
 - 위치 기반 또는 시장 기반 Scope 2 배출량
 - Scope 1, 2 배출량의 경우, 연결 회계 그룹 기업과 관계기업, 합작기업, 비연결 자회사, 공동 통제되는 운영 및 자산으로 구분
 - GHG 집약도(순 매출액 당 총 GHG 배출량)
 - GHG 배출량 감축 목표(Scope 1, 2, 3으로 구분 또는 통합)
 - 총 GHG 배출량 감축 목표(목표 달성 수단엔 GHG 제거, 탄소 크레딧 또는 회피된 배출량 포함 불가)
 - 현재의 GHG 배출 감축 목표의 기준 연도 및 기준치
 - 2030년에 대한 목표(2030년 이후 5년마다 목표치 및 기준 연도 갱신)
 - 목표 설정에 활용된 과학적 근거, 지침 또는 프레임워크, 가정 등
 - 목표 달성을 위한 탈탄소화 수단 및 정량적 기여도
 - 탄소배출권을 통한 GHG 제거 및 감축
 - 기업 활동 및 가치사슬에서의 GHG 제거 및 저장량
 - 가치사슬 외부의 탄소 배출권 구매를 통한 GHG 배출 감축량

- 기업 활동에서의 에너지 소비 및 조성(화석, 원자력, 재생 에너지원으로 구분)
 - 기후 영향이 높은 섹터에 대한 화석 에너지원(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의 총 에너지 소비량
 - 기후 영향이 높은 섹터에서의 에너지 집약도(순 매출액당 총 에너지 소비)
- 내부 탄소가격 제도의 유형, 적용 범위, 가격 책정 및 계산 방법과 내부 탄소 가격 제도를 통한 기후 관련 정책 및 목표 실행
- 주요 물리적 · 전환 위험 및 기후 관련 기회에 의한 재정적 영향
 - 단 · 중 · 장기적으로 물리적 위험(급성 또는 만성) 및 전환 위험에 노출된 기업의 자산, 순매출 또는 부채(금액 및 비중)
 -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조치가 다루는 자산과 해당 조치로 인해 예상되는 비용 절감 및 순매출 변화
- SEC 기후공시 기준은 Scope 3을 제외한 Scope 1, 2 GHG 배출량과 기후 관련 목표를 공시하도록 요구하며, 기후 관련 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으로 탄소 상쇄 및 REC가 사용된 경우 이와 관련한 금액을 재무제표에 공시하도록 요구
- GHG 배출량(Scope 1, 2 배출량)
 - 총 Scope 1, 2 GHG 배출량 공시
 - 구매 또는 상쇄된 배출량 제외
 - LAF 또는 AF가 Scope 1 또는 Scope 2 배출량을 증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시
 - 지분법에 기준함
 - 배출량 계산 시 사용되는 조직 경계, 방법론(위치 기반 또는 시장 기반 방법, 배출계수의 유형, 계산도구 등) 설명
- 기후 관련 목표
 - 목표 달성을 위한 진행 상황 및 계획
 - 해당 연도 동안 목표 달성을 위해 취한 조치(매 회계연도마다 업데이트) 및 조치의 결과
 - 목표 측정 단위 및 목표에 포함된 기업 활동 범위

- 탄소 상쇄 및 REC
 - 목표 달성 계획의 증대한 구성 요소로 사용된 경우에만 재무제표 공시
 - 회계연도 동안 지출되거나 자본화된 탄소 상쇄 및 REC 금액, 탄소 상쇄 및 REC에서 발생한 손실액
 - 자본화된 탄소 상쇄 및 REC 금액의 시작 및 종료시 잔액
 - 탄소 상쇄 또는 REC에 대한 회계 정책

- CA 기후법안은 연간 총 수입이 10억 달러를 초과하고, 캘리포니아에서 사업을 하는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2026년(FY 2025)부터 Scope 1, 2 배출량 공시 및 제한적 검증 수준의 제3자 검증을 요구
 - 2030년부터 Scope 1, 2 배출량 공시 시 합리적 검증 수준의 제3자 검증
 - 2027년부터 Scope 3 배출량 공시(2030년부터 제한된 검증 수준의 제3자 검증)
 - GHG 프로토콜 표준 및 지침에 따른 GHG 배출량 측정 및 보고

- 한국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제2호는 Scope 1, 2, 3 GHG 배출량과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지표(기후 관련 자산 또는 사업활동, 자본배치, 내부탄소가격) 및 목표, 경영진 보상을 공시하도록 요구
 - Scope 1, 2, 3 GHG 배출량(Scope 3 의무화 여부 및 시기 등은 추후 결정 예정)
 - 기후 관련 전환·물리적 위험 및 기회에 대한 기업의 자산 또는 사업활동의 금액 및 백분율
 - (자본 배치)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에 관련된 자본적 지출, 자금조달 및 투자액
 - (내부탄소가격) 기업의 의사결정에 활용되는 탄소가격에 대한 설명
 - 경영진 보상에 기후 관련 사항 활용 여부 및 방법(경영진 보상의 당기 인식 비율)
 - 기후 관련 목표
 - 설정된 목표와 이를 검토하는 기업의 접근법
 - 양적 질적 목표, 법률 규제에 의해 요구되는 목표, 목표의 적용 기간 및 부문
 - 목표의 제3자 검증 여부

- 목표 달성 진척도 모니터링 방법 및 적용되는 지표
- 목표에 해당하는 GHG 종류
- GHG 총배출량 목표 해당 여부(순배출량 목표의 경우 연관된 총배출량 목표 별도 공시)
- 순배출량 목표 달성을 위한 탄소 크레딧 사용 계획

표 5. 환경 영역(기후변화)에 대한 국내외 ESG 공시기준 비교

구분	IFRS S2 기후 관련 공시	ESRS E1 기후변화	SEC 기후공시	CA 기후 법안	한국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제2호
거버넌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를 감독하는 의사결정기구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 모니터링에 대한 경영진의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정 관리 및 감독 기구 구성원의 보수에 GHG 배출량 감축 성과를 포함한 기후 관련 고려 사항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후 관련 위험에 대한 이사회의 감독 기후 관련 위험의 평가 및 관리 책임이 있는 경영진의 역할, 성격, 범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를 감독할 책임이 있는 의사결정기구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 모니터링 관리 및 감독에 대한 경영진의 역할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가 사업모형과 가치사슬에 미치는 영향 기후변화 적응 및 완화를 위한 기업의 전략 및 의사결정 방법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의 재무적 영향 기후 회복력 평가(시나리오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전환 계획 기후 관련 물리적 위험 및 전환 위험 식별 기업의 전략과 사업 모형의 회복 탄력성 분석(시나리오 분석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무제표 공시] 심각한 기상 이변 및 기타 자연 현상이 미치는 재무적 영향(손익계산서 영향 및 재무상태표 영향) 기업의 전략, 운영결과, 재무상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후 관련 물리적·전환 위험 기후위험 완화·적응을 위한 전환 계획과 해당 계획에 따른 중대한 지출 및 재무적 영향 시나리오 분석 수행 시, 시나리오 분석 방법 및 예상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SB-261] 기후 관련 재무 위험 및 해당 위험에 대한 완화 및 적응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가 사업모형 및 가치사슬에 미치는 영향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기업의 대응 전략 및 의사결정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가 기업의 재무상태 및 재무성능에 미치는 영향 기업의 전략과 사업모형의 회복 탄력성 평가(기후 시나리오 분석 포함)
위험 및 기회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의 식별·평가·우선순위 설정·모니터링을 위한 프로세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의 GHG 배출이 미치는 영향 기후 시나리오에서의 물리적·전환 위험 식별 및 평가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관련 정책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정책과 관련된 조치 및 자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대한 기후 관련 위험의 식별·평가·관리를 위해 보유한 모든 프로세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의 식별·평가·모니터링에 사용되는 프로세스 및 정책 기업내 전반적인 위험관리 프로세스에의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 관리 프로세스 통합

III. ESG 공시 비교 분석

<p>지표 및 목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HG 지표(Scope 1, 2, 3) 및 목표(목표 도출 시 탈탄소화, 탄소 크레딧 사용 등) •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기업의 자산 또는 사업활동 금액 • 자본배치 • 내부탄소가격 • 기후 관련 목표 • 경영진 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cope 1, 2, 3 GHG 배출량 (GHG 집약도 포함) 및 감축 목표 • 에너지 소비(에너지 집약도 포함) 및 조성 • 탄소배출권을 통한 GHG 제거 및 감축 • 내부 탄소가격 • 물리적· 전환 위험 및 기후 관련 기회에 의한 재정적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AF 또는 AF에게 Scope 1, 2 GHG 배출량 공시(Scope 3 제외) • 기후 관련 목표 및 관련 조치(매 회계년도마다 업데이트) • [재무제표 공시]기후 목표 달성을 위해 사용된 탄소 상쇄 및 REC 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B-253] 연간 총 수익이 10억 달러를 초과하고, 캘리포니아에서 사업을 하는 모든 기업에게 2026년부터 Scope 1, 2 GHG 배출량 공시 및 제한적 검증 수준의 제3자 검증 요구(2027년부터 Scope 3 공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cope 1, 2, 3 GHG 배출량 • 전환·물리적 위험 및 기회와 관련된 기업의 자산 또는 사업활동의 금액 및 백분율 • 자본 배치 • 내부탄소가격 • 경영진 보상 • 기후 관련 목표(목표 접근법, 적용 기간 및 부문 제3자 검증 여부, GHG 목표, 탄소 크레딧 사용 등)
----------------	--	---	--	---	---

4. 사회

- 해외 공시 표준 중 ESRs에서만 기업 자체 인력, 가치사슬 근로자, 지역사회, 소비자 및 최종 사용자의 네 가지 사회 영역에 대한 공시 표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한국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의 경우, 제1·2호에 따른 재무공시와 구분하여 “제101호 정책 목적을 고려한 추가 공시사항”을 통해 정부의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보를 추가하고, 기업이 선택적으로 적용하도록 함
- 이에 본 보고서는 ESRs S1 기업 자체 인력에 대한 공시 표준과 한국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제101호 정책 목적을 고려한 추가 공시사항을 비교함
- ESRs S1은 근로 조건, 평등한 대우와 기회, 업무 관련 권리와 관련하여 기업이 근로자에게 미치는 중대한 영향에 대한 정책, 위험·기회 관리, 지표·목표를 공시하도록 요구
 - 근로 조건: ① 고용 안정성, ② 근무 시간, ③ 적절 임금, ④ 사회적 대화, ⑤ 결사의 자유, 직장협회의 존재 및 정보, 근로자의 협의 및 참여권, ⑥ 단체 교섭, ⑦ 일과 삶의 균형, ⑧ 건강과 안전
 - 평등한 대우와 기회: ① 성 평등 및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 ② 교육 및 기술 개발, ③ 장애인 고용 및 통합, ④ 직장 내 폭력 및 괴롭힘에 대한 조치, ⑤ 다양성
 - 업무 관련 권리: ① 아동 노동, ② 강제 노동, ③ 적절한 주거, ④ 개인정보
- 한국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은 정부의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보로 ① 가족친화경영 확산, ② 강제노동 예방, ③ 안전 경영, ④ 종업원 다양성, ⑤ 부정경쟁방지, ⑥ 인권 경영에 대한 정보를 제시

표 6. 사회 영역에 대한 ESRS S1과 한국지속가능성 공시기준 비교

카테고리		ESRS S1	한국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제101호(정책 목적을 고려한 추가 공시사항)
근로조건	고용안정성 및 근무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의 고용 및 비고용 근로자의 주요 특성(총 직원 수, 유형별 FTE 등) 	
	적절임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적절 임금) 기업의 모든 직원이 해당 기준에 따라 적절한 임금을 받고 있는지(적절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해당 국가와 적절 임금 이하를 지불받는 직원 비율) 	
	단체 교섭 및 사회적 대화, 근로자의 협의 및 참여 권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정적인 영향을 해결하기 위한 절차와 직원이 고충을 제기할 수 있는 채널 자사 근로자 및 근로자 대표와 소통하는 절차 단체 교섭 협약이 자사 근로자의 근로 조건 및 고용 조건에 미치는 영향 	
	일과 삶의 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적 보호) 주요 생활 사건(질병, 실업, 산업재해, 장애, 출산 휴가, 퇴직)으로 인한 소득 손실에 대한 사회적 보호 (일과 삶의 균형 지표) 가족 관련 휴가의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족친화경영 확산을 위한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산휴가, 육아휴직, 가족돌봄휴직(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사용자 비율 - 유연근무제도 - 직장어린이집,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 및 운영 여부
	건강과 안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 자체 인력에 대한 정책) 사업장 사고 예방 정책 또는 관리 시스템 보유 여부 (건강 및 안전 지표) 보건 및 안전 관리 시스템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 범위와 업무 관련 부상·질병·사망과 관련 사고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전 경영에 대한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보건에 관한 기업의 경영방침 및 기업 내 안전·보건관리 조직 - 안전·보건 관련 예산 및 시설 현황과 활동 실적·계획 - 상시 근로자수 - 업무 상 사고·질병 사망자수
평등한 대우와 기회	성 평등 및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상 지표) 남녀 임금격차와 최고 임금을 받는 개인의 보수와 직원 보수의 중간값의 비율 	
	교육 및 기술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 및 기술개발 지표) 전문성 강화를 위해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교육 및 기술 개발 범위 	

	장애인 고용 및 통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자사 근로자 중 장애인 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업원 다양성에 대한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고용률, 중증 장애인 및 여성 장애인 비율 -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공표 대상 해당 여부 -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여부 및 장애인 고용 현황
	직장 내 폭력 및 괴롭힘에 대한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 내 발생한 인권 영향 및 사건과 보고된 차별 (또는 괴롭힘) 사건 • (기업 자체 인력에 대한 정책) 괴롭힘을 포함한 차별 철폐에 대한 구체적 정책 보유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 경영에 대한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경영 관련 기업의 조직·제도·규정 - 인권영향평가 실시 여부 - 식별된 인권이슈에 대한 대응 여부 - 인권침해 피해에 대한 구제절차 - 인권경영 교육을 이수한 직원 수
	다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 자체 인력에 대한 정책이 인종 및 민족 출신, 피부색, 성별, 성적 취향, 성 정체성, 장애, 나이, 종교, 정치적 견해, 국적 또는 사회적 출신 등의 차별 및 다양성을 다루고 있는지 여부 • (다양성 지표) 최고 경영진의 성별 분포 및 직원의 연령 분포 	
기타 업무 관련 권리	아동 노동 및 강제 노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 자체 인력에 대한 정책) 해당 정책이 인신매매, 강제 노동 및 아동 노동을 명백히 다루고 있는지 • UNGC 및 OECD 다국적 기업 지침 위반 사례(강제 노동, 인신매매 또는 아동 노동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제노동 예방을 위한 정보

IV 결론 및 제언

- 국내외 기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ESG 정보 공시 의무화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 그러나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ESG 공시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개별 기관의 기준에 따라 제각각의 형태로 공시가 이루어짐
 - 공시기준 불일치는 개별 기업의 ESG 정보 공시에 대한 실무적 혼란 및 비효율적인 공시 정보의 중복을 야기함
 - 이에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공시기준의 필요성에 대한 요구가 제기되었으며 관련 국제기구들의 협의가 진행됨
 - 2022년 IFRS ESG 공시기준이 발표되었으며, 2023년 EU는 CSRD의 이행을 위한 유럽 지속가능성공시표준을 제정함
 - 미국 증권위원회는 2024년 특정 기후 관련 정보를 제시하도록 요구하는 최종 규칙을 발표하였으며, 캘리포니아 주는 미국에서 처음으로 기업의 탄소배출량 공개를 의무화하는 기후공시법을 제정함
 - 국내에서도 2024년 「한국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초안을 발표하고 현재 의견을 수렴하고 있음

- 이에 본 보고서는 현재 논의(또는 시행)되고 있는 국내외 ESG 공시제도 현황을 확인하고 세부 내용에 대한 비교 분석을 실시함
 - IFRS, ESRS, SEC 기후공시, CA 기후법안, 한국지속가능성 공시기준에 대한 내용을 관찰하고 기본 원칙, 지속가능성, 환경, 사회에 대한 세부 원칙을 확인함
 - 기본 원칙은 공시 대상, 공시 범위, 적용 시기, 중대성, GHG 배출량, 기후관련 시나리오

분석, 제3자 인증, 비준수시 처벌에 대한 내용을 확인

- 지속가능성 및 환경 측면에서 거버넌스, 전략, 위험 및 기회 관리, 지표 및 목표에 대한 내용 비교
- 사회 측면에서 ESRS와 한국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비교함

□ 국내외 ESG 공시제도의 기본 원칙 비교 결과는 다음과 같음

- 공시 대상은 각국의 상장기업 또는 일정 규모(매출) 이상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며, 종속기업을 포함
- 공시 범위는 기업의 지속가능성 또는 기후 관련 리스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관련 사안들에 대해 공시
 - IFRS는 모든 지속가능성 및 기후 관련 사안에 대해 의무 공시 적용
 - ESRS는 기후변화를 자발적 공시로 규정하나, 이를 공시에서 제외할 경우 중대성 평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구
 - 한국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의 경우 기후는 의무 공시를 채택하였으나, 기후 외 지속가능성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기업이 선택적 공시
- 적용 시기는 2025년부터(2024년 정보 대상) IFRS 및 ESRS를 시작으로 향후 점진적으로 공시기준을 확대 예정
 - 한국의 경우 현재 의견 수렴 중이며 적용 시기는 미정
- 중대성에 대한 정의는 기업의 재무, 영향, 정보의 중대성을 포함하며, 향후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지속가능성 또는 환경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판단 필요
- GHG 배출량은 Scope 1, Scope 2, Scope 3에 대해 공시하도록 요구함
 - IFRS는 1년간 Scope 3 공시 유예
 - SEC는 Scope 3 공시 의무 면제
 - ESRS는 GHG 집약도에 대해서도 공시
- 기후 관련 시나리오 분석은 기후 관련 물리적·전환 위험 및 기회를 식별하고, 기업에 미치는 재무적 영향과 회복탄력성 평가 정보를 공시하도록 요구함
- 제3자 인증의 경우 SEC 기후공시와 CA 기후법안의 경우 향후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IFRS와 한국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은 제3자 인증에 대해 규정되지 않음

○ ESRs는 공시 기준 미준수에 따른 처벌은 현지 법률에 따름

- SEC 기후공시는 법적 조치와 집행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CA 기후법안은 최대 50만 달러의 벌금 적용

- IFRS와 한국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은 현재 규정되지 않음

□ 지속가능성 및 환경에 대한 공시 보고영역은 거버넌스, 전략, 위험 및 기회 관리, 지표 및 목표의 네 가지 영역으로 구분됨

○ 거버넌스 측면에서 국내외 ESG 공시제도는 공통적으로 지속가능성(또는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를 관리, 감독하는데 필요한 의사결정기구, 경영진, 규정,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공시를 요구함

○ 전략 측면에서 공통적으로 지속가능성(또는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를 식별하고, 위험 및 기회를 관리하기 위한 전략, 사업모형, 이해관계자, 의사결정, 회복력 등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함

○ 위험 및 기회 관리 측면에서 지속가능성(또는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를 식별, 우선순위 설정, 평가, 분석, 모니터링, 정책, 조치, 지원 등에 대한 정보 공시가 요구됨

○ 지표 및 목표 측면에서 지속가능성 관련 성과에 대한 정량적 정보, 측정 기준, 조치 효과 등에 대한 정보를 공시해야 하며,

- 기후 관련 GHG 지표(Scope 1, 2, 3), GHG 집약도, 감축 목표, 구체적 수치 등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함

□ 종합하면, 국내외 ESG 공시기준의 주요 공통점은 다음과 같음

○ 중대성 기준

- IFRS, SEC 기후공시, CA 기후법안, 한국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은 모두 투자자 중심의 재무중대성을 적용하는 반면, ESRs는 이중중대성을 채택하여 환경적 및 사회적 영향을 포함

○ 기후 관련 정보 공시

- 모든 ESG 공시기준은 기업들이 거버넌스, 전략, 위험 및 기회 관리, 지표 및 목표의 네 가지 영역에 대해 기후 관련 정보를 공시하도록 요구
- 기업이 기후변화가 기업의 전략, 재무 상태 및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히 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방법과 계획 공시

○ 재무적 영향 및 대응 전략

- 모든 기준은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가 기업에 미치는 재무적 영향을 공시하도록 요구
- 기업의 재무 성과와 지속 가능성 이슈 간의 연관성을 명확히 하고, 기후 관련 정보가 재무적 중요성을 가지는 경우 이를 공개
- 기후변화에 대한 기업의 대응 전략과 회복탄력성 평가를 포함해, 기후 관련 위험에 대한 완화 및 적응 계획을 공시

○ GHG 배출량 공시

- 모든 기준은 온실가스 배출량의 공시를 요구
- Scope 1, 2, 3 배출량을 포함한 GHG 배출량의 측정 및 보고를 요구하며, 이를 통해 기업의 환경적 영향을 투명하게 공개

○ 목표 설정 및 진행 상황 모니터링

- 모든 기준은 기후 관련 목표의 설정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 및 진행 상황의 모니터링을 요구
- 기업은 기후변화 대응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의 달성을 위한 전략적 조치와 진척도를 공시

○ 위험 및 기회 관리 프로세스

- 모든 기준은 기후 관련 위험과 기회의 식별, 평가, 우선순위 설정, 모니터링 및 관리 프로세스를 공시하도록 요구
- 기업은 이러한 위험 관리 프로세스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이를 공개하여 이해관계자에게 투명성을 제공

○ 시나리오 분석의 활용

- 대부분의 기준이 기후 관련 시나리오 분석을 활용하여 기후변화가 기업의 전략 및 사업모

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도록 요구

- 시나리오 분석은 기업의 회복탄력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도구로 작용

○ 정보의 명확성과 신뢰성

- 모든 기준은 공시된 정보의 명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을 요구

□ 그러나 공시기준마다 요구되는 세부 정보 수준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존재함

○ 모든 지속가능성 및 기후 관련 사안에 대해 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특히 유럽의 ESRS 공시기준은 기후변화 뿐만 아니라 생물다양성까지 포함한 영역, 이해관계자와 거버넌스 영역 모두에 걸쳐 가장 강도 높은 정보 공시가 요구됨

- 타 ESG 관련 공시기준의 경우 기후변화에 보다 포커스를 맞춘 공시기준이 제시되고 있음

○ 기후 관련 정보 공시에 있어 온실가스 배출량, 기후 관련 위험과 이에 대한 기업의 대응 전략, 기업이 설정한 기후 관련 목표와 이에 대한 경영진의 보상 정책을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요구되는 정보의 차이가 있음

- IFRS, ESRS, CA 기후 법안, 한국지속가능성 공시기준 모두 Scope 1, 2, 3 온실가스 배출량을 의무 공시 범위로 규정하고 있음

- 특히 ESRS는 탄소 중립을 위한 지구온난화 1.5°C 제한 목표에 부합하는 기업의 구체적인 목표 및 전략을 제시하고, 이를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 뿐만 아니라 에너지 소비량까지 공시하도록 요구함

- 반면, 미국 SEC 기후공시는 Scope 3 배출량 공시 의무를 면제함

- IFRS, ESRS, 한국지속가능성 공시기준 모두 기후 관련 물리적·전환 위험 및 기회에 대한 기업의 회복탄력성 분석을 요구함

- 특히 ESRS는 고탄소 시나리오 및 1.5 °C 시나리오에 따른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를 포함하도록 제안

- 반면 SEC 기후공시는 기후 관련 위험이 기업에 미치는 실질적인 재무적 영향을 공시하도록 요구하며 기후 관련 기회의 식별과 시나리오에 기반한 회복탄력성 분석은 요구하지 않음

□ 각국 ESG 공시제도에 차이가 나타나게 된 원인은 다음과 같이 분석됨

○ 각국의 ESG 공시기준들은 법적, 경제적, 사회적 배경과 정책적 이유로 인해 차이가 존재함

- 글로벌 일관성을 목표로 하는 공시기준인 IFRS S1·S2는 주로 투자자 중심의 접근 방식을 채택하여 국제적으로 통일된 정보를 제공
- 유럽은 포괄적이고 상세한 ESG 공시기준을 통해 기업들이 환경, 사회, 지배구조 측면에서 투명성을 높이도록 요구하고 적극적인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추진
- 시장 중심적 접근을 선호하는 미국은 기후변화에 따른 재무적 영향을 중심으로 기업의 정보를 요구하며, 캘리포니아주는 독자적인 주 정부 차원의 규제를 통해 주로 탄소 배출과 같은 환경적 책임을 강조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기후변화 대응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구
- 한국은 주요국 및 국제기구의 기준을 참조하여 글로벌 정합성을 반영한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초안을 마련하였으나, 국제 표준을 따르면서도 국내 기업의 기후공시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내 산업 구조의 특성을 반영한 세부 지침 마련 등에 있어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

○ 정책적 목표 및 규제 환경

- IFRS S1·S2는 글로벌 일관성을 강조하며 다양한 국가에서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국제적으로 통일된 표준을 제시
- EU 전체적으로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정치적 관심이 상당히 높으며, ESG 공시를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로의 전환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매우 엄격한 유럽의 환경 규제와 지속가능성 목표가 ERS의 포괄성과 세부성에 반영
- 미국은 시장 중심적 접근을 선호하며, 경제 성장 및 시장 효율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SEC 기후공시는 주로 투자자 보호와 재무적 중요성에 초점을 맞추고, 연방 차원의 규제를 통해 기후변화가 기업의 재무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구
- 반면, 캘리포니아는 탄소 배출 감소와 지속 가능성을 강화를 위해 주 정부 차원에서 독자적인 환경 정책과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연방 정부보다 더 엄격한 규제를 시행
- 한국은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들의 경쟁력을 유지하

는 것을 목표로 국제 표준을 따르면서도 국내 기업의 현실을 반영한 기준을 마련

○ 경제 및 산업 구조

- 유럽은 전통적 산업에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반면, 재생 에너지·청정기술 산업 및 지속가능성과 환경 관련 기업들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강력한 ESG 공시를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 가능
- 미국은 산업 구조가 다양하며, 특히 화석 연료 산업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규제의 강도가 상대적으로 약한 반면, 캘리포니아는 첨단 기술 산업이 발달해 있으며, 환경 의식이 높아 강력한 기후 법안 추진이 가능
- 한국은 제조업 중심의 경제 구조로 인해 기후공시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

○ 이해관계자 및 사회적 요구사항

- 유럽의 투자자와 금융기관은 ESG 요소에 대한 통합적 접근을 중시하며, 기후뿐만 아니라 사회 및 거버넌스 요소도 중요하게 다루고 있으며, 시민사회는 기업에 친환경 경영 및 포괄적인 사회적 책임 이행을 요구하며, 소비자 및 일반 대중은 친환경 소비 패턴을 추구하기 때문에 기후변화 대응뿐만 아니라 자원 효율성, 생물 다양성, 오염 감소 등을 포함한 다양한 환경적 요구사항과 광범위한 사회적 및 경제적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한 엄격한 공시기준을 제시
- 미국의 경우, 투자자와 금융기관은 기후 관련 리스크 관리 및 재무적 영향을 중시하고, 투자 결정을 위한 구체적인 기후 정보를 요구하고 있으며, 일부 주에서는 강력한 환경 규제를 지지하지만, 다른 주에서는 규제 완화를 선호하는 등 주별로 사회적 요구가 다르기 때문에 SEC 기후공시는 투자자와 금융기관의 요구를 중심으로 기후 관련 정보의 재무적 측면을 강조
- 반면, 캘리포니아의 경우, 환경 보호 및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강한 사회적 요구가 주 정부의 정책에 반영되어 재생 가능 에너지 및 청정 기술 산업을 육성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촉진
- 한국은 글로벌 추세로 확산되는 기업의 ESG 공시 의무화에 발맞춰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고 정부의 정책 일관성 확보 및 국제적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초안을 마련

- ESG 공시 의무화는 글로벌 추세이며 유럽과 미국의 의무화로 인해 기업들은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기업은 체계적인 ESG 전략을 수립하고, 내부 인프라와 역량을 강화하며, 기업이 공시의무를 이행하면서 겪는 부담이나 비용을 줄이기 위한 정책 당국의 지원이 필요
- 특히 수출 기업의 경우 IFRS, ESRS, SEC 기후공시 등 복합적인 공시기준에 맞게 대응해야 하며, 의무화 시기가 당장 도래한 만큼 그에 따른 어려움이 예상됨
 - 다국적 기업의 경우, 각국의 공시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므로 복잡성과 관리 부담이 증가하며 공시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외부 검증 및 감사 비용이 추가로 발생
 - 각국은 일반적으로 공시기준 확정 이후 1.5~2년 후 공시의무를 요구하고 있으며 기업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있음
 - 대부분의 국가가 2026~2027년 도입을 앞두고 있어 한국도 이와 같은 타임라인을 설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예상됨
 - 다만 국내의 경우 타 국가에 비해 중속기업이 상대적으로 많아 도입시기를 조율할 필요가 있으며, 공시의무 기업들의 혼선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라도 로드맵을 조속히 확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가장 포괄적이고 세부적인 표준인 ESRS 기준 충족 시 다른 공시 표준에 대한 대응이 가능하나, ESRS가 요구하는 수준의 정보를 수집, 관리, 보고하는 프로세스를 마련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Scope 3를 요구하고 있으며, 한국의 경우 자산 2조원 이상의 상장기업의 48%가 관련 정보에 대해 공개 중임
 - 선진국(미국 제외)의 경우 Scope 1, 2에 대해 73%, Scope 3에 대해 54% 기업이 공개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Scope 1, 2에 대해 45%, Scope 3에 대해 29% 기업이 공개한 것으로 확인됨³⁴⁾
 - Scope 3에 대한 요구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국내에서도 의무화 될 필요가 있으나, 그에 따른 정확한 정보 공개 내용과 시기에 대해 조율할 필요가 있음
- 기업들은 ESG 정보 공시 의무화에 맞는 정보의 체계적 관리가 요구되며, ESG 정보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대응할 수 있는 데이터 관리 시스템 구축, 데이터 분석 도구

34) The MSCI Net-Zero Tracker, 2024

도입, 데이터 정확성 확보를 위한 검증 절차 등에 대한 투자가 필요

- 현재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의 77% 수준(243개 중 187개 사)에서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발행하고 있으나, 5천억 미만 기업의 경우 5% 수준(314개 중 15개 사)에서 보고서를 발행하는 것으로 확인됨³⁵⁾
 - 코스닥의 경우 지속가능성 보고서 발행 비율은 3% 수준(1,690개 중 43개 사)으로 확인되고 있음
 - 이는 상장기업들 중에서도 자산 규모가 작은 기업들의 경우 ESG 공시 의무화에 대한 준비가 미흡한 것을 의미하며, 기업들은 현재 보다 높은 수준의 ESG 정보 공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이에, 정책 당국의 명확하고 일관된 지침 및 우수 사례 제공, 기술적 지원과 인프라 구축, 재정적 지원 및 인센티브 제공, 검증 및 인증 프로세스 지원 등이 필요함
- 한국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이 글로벌 공시기준의 수준에 맞는 적합성을 갖출 필요가 있으며, 기업들의 혼란을 해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기업은 환경정보공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등 중복공시 등에 대한 비용과 업무 부담이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부담 해소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35) 국내외 ESG 보고와 인증현황, 한국공인회계사회, 2024

참고 문헌

I 국문

- 삼성증권 ESG 연구소, 2024. 3. 14, 미국 증권위원회의 기후공시 의무화 규정에 따른 영향, https://www.samsungpop.com/common.do?cmd=down&contentType=application/pdf&inlineYn=Y&saveKey=research.pdf&fileName=2020/2024031317050026K_02_04.pdf
- 삼일PwC ESG Platform, 2024. 3, 미국 SEC 기후공시 규칙 최종안, https://www.pwc.com/kr/ko/insights/issue-brief/samilpwc_sec-climate-disclosure.pdf
- 삼일PwC ESG Platform, 2023. 9, EU CSRD·ESRS 이해 및 대응방안, https://www.pwc.com/kr/ko/insights/insight-flash/pwckorea_eu-csr-d-esrs.pdf
- 삼정KPMG 경제연구원, 2023, ESG 정보공시 의무화 시대, 기업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https://kpmg.com/kr/ko/home/insights/2023/07/insight_86.html
- 심유영·백용준·이희섭·정용운, ESG 공시기준 표준화 주요 내용과 기후기술 R&D 투자 및 국제협력 전망, NIGT Brief, 2023년 Vol.1 No.9, 국가녹색기술연구소
- 자본시장연구원, 2021, IFRS의 지속가능공시기준 내용과 시사점, 2021-23호, https://www.kcmi.re.kr/publications/pub_detail_view?year=2021&zcd=002001016&zno=1629&cno=5810
- 한국회계기준원, 2023, IFRS S1 및 S2 국문 번역본 최종안, https://www.kasb.or.kr/fe/bbs/NR_view.do?bbsCd=1108&bbsSeq=40372¤tPage=1&rowPerPage=10&ctgCd=&sortCds=&startDt=&endDt=&searchKey=1000&searchVal=
- 한국회계기준원, 2024, 한국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초안, https://www.kasb.or.kr/fe/bbs/NR_view.do?bbsCd=1113&bbsSeq=41533¤tPage=1&rowPerPage=10&ctgCd=30&sortCds=&startDt=&endDt=&searchKey=1000&searchVal=

I 영문

- European Commission, 2023, Commission Delegated Regulation (EU) 2023/2772 : Annex I European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 (ESRS), Official Journal of the EU,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OJ:L_202302772
- IFRS S1 General Requirements for Disclosure of Sustainability-related Financial Information, <https://www.ifrs.org/issued-standards/ifrs-sustainability-standards-navigator/ifrs-s1-general-requirements/>
- IFRS S2 Climate-related Disclosures, <https://www.ifrs.org/issued-standards/ifrs-sustainability-standards-navigator/ifrs-s2-climate-related-disclosures/>
- Legislative Counsel of California, 2023, Senate Bill No. 253, Wiener. Climate Corporate Data Accountability Act, https://leginfo.ca.gov/faces/billTextClient.xhtml?bill_id=202320240SB253
- Legislative Counsel of California, 2023, Senate Bill No. 261, Stern. Greenhouse gases: climate-related financial risk, https://leginfo.ca.gov/faces/billTextClient.xhtml?bill_id=202320240SB261
- MSCI Sustainability Institute, 2024, The MSCI Net-Zero Tracker, <https://www.msci-institute.com/wp-content/uploads/2024/04/NetZero-Tracker-April-cbr-en.pdf>
- 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 2024, The Enhancement and Standardization of Climate-Related Disclosures for Investors (Final Rules), Release Nos. 33-11275; 34-99678; File No. S7-10-22, <https://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24/03/28/2024-05137/the-enhancement-and-standardization-of-climate-related-disclosures-for-investors>